

제429회 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제 6 호

(임시회의록)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9월24일(수)

장 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 2025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요구의 건
-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장 제출)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85)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70)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71)
-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27)
-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77)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9090)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40)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51)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94)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09)

23.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23)
2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회 제출)
25.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회 제출)
26.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회 제출)
27.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회 제출)
2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회 제출)
2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회 제출)
30.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회 제출)
31.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회 제출)
3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회 제출)
3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회 제출)
3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회 제출)
3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회 제출)
36.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회 제출)
37.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회 제출)
38.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회 제출)
3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위기특별 위원장 제출)
40.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위기특별위원장 제출)
4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60)
4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68)
4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74)
4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06)
4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15)
4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42)
4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박준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7872)
50. 일제 식민지배 찬양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88)
5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89)
52.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59)
5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31)

5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16)
5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차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43)
5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29)
5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61)
5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11)
59.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34)
60.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89)
61.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13)
6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27)
63.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85)
6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82)
6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41)
6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45)
6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39)
68.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08)
6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15)
70. 법령 제명 약칭법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60)
7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05)
7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25)
7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31)
7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23)
75.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77)
76.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59)
77. 국회기록원법안(국회운영위원회 제출)(추가)
78.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추가)
7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추가)
80. 국회에서의 중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회 제출)(추가)
81.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추가)
82.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개입 의혹 관련 긴급현안 청문회 증인 추가 출석요구의 건(추가)
83. 서영교·부승찬 등의 조작녹취 거짓선동에 의한 이재명 대통령 재판뒤집기·사법파괴 진상규명 긴급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추가)
84. 서영교·부승찬 등의 조작녹취 거짓선동에 의한 이재명 대통령 재판뒤집기·사법파괴 진상규명

긴급청문회 증인 출석요구의 건(추가)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7
2. 2025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요구의 건	25
3.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26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26
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26
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26
6.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장 제출)	49
7.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50
8.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85)	54
9.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70)	54
10.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71)	54
11.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27)	54
12.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77)	54
1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54
14.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54
1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54
16.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54
1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54
18.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9090)	54
1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40)	61
20.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51)	61
2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94)	61
2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09)	61
23.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23)	61
2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61
25.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61
26.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61

27.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회 제출)	61
2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회 제출)	61
2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회 제출)	61
30.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회 제출)	61
31.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회 제출)	61
3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회 제출)	61
3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회 제출)	61
3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회 제출)	61
3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회 제출)	61
36.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회 제출)	61
37.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회 제출)	61
38.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회 제출)	61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67
3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위기특별위원장 제출)	67
40.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위기특별위원장 제출)	67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추미애 위원 외 1인 서면동의)	72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72
77. 국회기록원법안(국회운영위원회 제출)	73
78.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회 제출)	73
7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회 제출)	73
80. 국회에서의 중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회 제출)	73
81.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국회운영위원회 제출)	73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추미애 위원 외 1인 서면동의)	81
82.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개입 의혹 관련 긴급현안 청문회 증인 추가 출석요구의 건	82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나경원 위원 외 6인 서면동의)	84
83. 서영교·부승찬 등의 조작녹취 거짓선동에 의한 이재명 대통령 재판뒤집기·사법파괴 진상규명 긴급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86
84. 서영교·부승찬 등의 조작녹취 거짓선동에 의한 이재명 대통령 재판뒤집기·사법파괴 진상규명 긴급청문회 증인 출석요구의 건	87
4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60)	95
4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68)	95
4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74)	95
4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5

4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06)	95
4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15)	95
4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5
4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942)	109
4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박준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7872)	109
50. 일제 식민지배 찬양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88)	109
5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89)	109
52.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59)	109
5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31)	109
5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16)	109
5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차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43)	109
5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29)	109
5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61)	109
5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11)	109
59.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34)	109
60.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89)	109
61.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13)	109
6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27)	109
63.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85)	109
6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82)	109
6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41)	109
6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45)	109
6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39)	109
68.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08)	110
6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15)	110
70. 법령 제명 약칭법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60)	110
7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05)	110

7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25)	110
7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31)	110
7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23)	110
75.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77)	110
76.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59)	110

(14시50분 개의)

○위원장 추미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2025년도 국정감사와 관련된 안건들을 의결하고 타 상임위 법안을 심사한 후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의결한 법안을 심사하고 마지막으로 고유법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에 의사일정 추가 상정을 위한 서면동의가 3건 제출되었습니다. 이를 서면동의는 오늘 의사일정 중 하위법 심사를 마친 후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4시51분)

○위원장 추미애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국정감사 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10월 13일부터 31일까지 19일간 법무부 등 79개 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되 10월 30일에는 전체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관별 감사 일시와 장소 등 세부 일정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나경원 위원님.

○나경원 위원 제가 이 법사위에 대해서, 국정감사계획서도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받았습니다. 이 국정감사 계획에 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여야가 먼저 협의하고 합의해야 되는데 법사위가 정상화되지 못해서 이러한 것도 전혀 없이 이렇게 제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심심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정감사계획서에 대해서 어떠한 협의 없이 이렇게 통과시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의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간사 선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정상화시켜 주시고 발언권을 박탈하는 일은 앞으로는 좀 지양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국회법상 규정만 있었지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런 발언권을 박탈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3명을 퇴장시키는 이런 일을 하셨는데 이것은 정말 위원장의 직권을 남용하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발언권 박탈을 하거나 질서유지권을 빙자해서 사실상 회의장에 국회 경위까지 출동하는 일은, 국회 경위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힘들 겁니다. 이런 부분은 지양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요.

그래서 이렇게 국정감사계획서가, 사실상 이렇게 되면 날치기 통과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날짜라든지 또는 기관을 조금 분리해서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지금 일방적으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심심한 유감을 표시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추미애 말씀을 다 마치셨습니까?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 국정감사가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잘못되었던 것, 나라 국가의 권력기관, 법무부 검찰 법원 감사원 등의 잘못된 것들 지적하고 더 정의로운 공정한 세상 만들기 위해서 하는 국정감사입니다.

우선 계획서는 특별하게 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계획서는 자연스럽게 통과시키면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는 좀 자연스럽게 진행돼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상임위원장 해 봤고요, 3선 이상의 위원들께서는 상임위원장 해 보셨을 텐데요. 위원장이 왜 중요한가요? 위원장님의 진행에 따르는 게 저는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원장님이 진행할 때 계속 생목소리를 내지 맙시다. 내지 말고 자연스럽게 진행 절차에 따라서 갑시다. 그래야지 국감기관 기관증인들 나와 있고 많은 국민이 보는 앞에서 서로 질의하는 순서에 맞춰서 질의해 나가고 그리고 위원장께서 하는 그 절차 그대로 따라 줘야 의사진행, 회의진행에 무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최혁진 위원님.

○최혁진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저도 오늘은 차분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법사위에 와서 몇 차례 분명하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국민의힘에도 요청을 드렸습니다. 나경원 위원은 간사가 아니라 법사위원 자격이 없다라고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고, 이 자리에 출석하시면 안 된다라고. 일차적으로 공직 이해충돌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남편분이 현직 춘천지법 법원장이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위원으로 활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조차도, 이런 기본적인 원칙조차도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온 국민이 지금 우리 법사위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 법사위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어떻게 국민들이 신뢰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갑자기 우리 위원장님의 의사진행 방식에 대해서 이의제기까지 하시고 날치기라고 하는 입에 담을 수도 없는 표현까지 쓰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심한 분노를 느낍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본인을 한번 보십시오. 윤석열 2차 체포영장 진행이 될 때 공수처에서 영장 집행을, 계엄을 저지르고 내란을 저지를 자를 체포하는데 그 앞에 관저를 틀어막고 앉아서, 발언 내용은 정말 참담합니다. 본인이 참담하다 그랬는데요. ‘대한민국의 국격이 떨어지고 말았다. 공수처장의 공명심인가 아니면 야당과 야합한 세력들의 폭거인가’ 이런 발언까지 서슴지 않은 분입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의 내란을 주도한 자를 정상적인 공권력이 체포

를 하는데 그 앞을 막아서고 앓아서 폭거라는 표현까지 쓰는 그런 사람이 지금 법사위에 와서 위원으로 앓아 있는 것 자체가, 사실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도 없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법사위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저희 법사위가 자꾸 과행적으로 운영되는 것도 나경원 위원 한 사람 때문이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엄중하게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

○신동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추미애 그만하시지요.

○신동욱 위원 아니요, 해야지요.

○위원장 추미애 진행하시지요.

○곽규택 위원 좋게 하자고 하는데 저렇게 달려드는데 토론을 안 주십니까?

○신동욱 위원 지금 이것을 그만하자고 말씀하시면 곤란한데요.

○위원장 추미애 우선 나경원 위원께서 위원장을 향하여 질서유지권의 직권을 남용한 발동 또 국회 경위를 출동시켰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국회 경위가 출동한 것은 바로 나경원 위원 등이 그날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위원장의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위원의 발언권을 침해했습니다. 그리고 회의도 시작 전에 불법 유인물을 노트북에 계첨을 해서 제가 원만하게 회의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철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세 차례 이상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난동·소동 행위로 인해서 입법청문회 때문에 나오신 수십 명의 증인과 참고인들의 증인 선서나 여러 가지가 제대로 들리지조차 않았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부터 하시는 것이 예의가 아닐까 합니다.

그냥 진행하십시오.

○곽규택 위원 토론 기회 주십시오.

○위원장 추미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규택 위원 혼자 그렇게 말씀만 하시고 토론 기회를 안 주십니까?

○박은정 위원 진행이잖아요.

○곽규택 위원 좋은 말로 합니다. 빨리 토론 기회 주십시오.

○최혁진 위원 아니, 국회가 좋은 게 좋은 거여야 합니까?

○박은정 위원 나쁜 말로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위원장 추미애 이 안건에 대해서……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 이 안건에 대해서 토론한다니까요.

○나경원 위원 그러면 제가 신상발언을 신청해야 되나요, 최혁진 위원이 인신공격한 것에 대해서? 신상발언 기회 주시겠습니까?

○김용민 위원 필요하면 의사진행발언으로 하시고 이건 좀……

○서영교 위원 오늘은 진행 좀 합시다.

○나경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신상발언 안 할 테니까 대신 우리 위원님 중에서 한 분 한테 주셔야지요.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왜 시작을 하세요, 자꾸? 어제처럼 그냥 가시지.

- 나경원 위원 아니, 인신공격을 하니까 그렇지요.
- 곽규택 위원 아니, 그런 시작을 하면 안 돼요? 뭘 말하면 안 됩니까, 국회의원이?
- 서영교 위원 아니, 날치기 뭐 이런 운운하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 신동욱 위원 그러면 날치기가 아니에요, 이게?
- 박은정 위원 계획서가 왜 날치기예요?
- 최혁진 위원 뭐가 날치기예요, 뭐가?
- 곽규택 위원 국회 일정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다 안을 만들어 오는데 이게 날치기지, 그러면.
- 신동욱 위원 아무 협의 없이 감사계획안 가져오는 게 날치기 아니에요?
- 서영교 위원 국정감사계획서 기본 아니에요, 기본?
-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
- 신동욱 위원 기본이나마나 왜 우리한테는 안 알려 줘요, 그러면?
- 서영교 위원 봐요, 그 기본. 기본 아니에요, 기본?
- 신동욱 위원 왜 우리한테는 안 알려 주고 날치기하냐고요, 그러면.
- 박은정 위원 저도 오늘 아침에 봤어요, 저도.
- 최혁진 위원 저도 방금 받았습니다.
-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 토론 기회 주십시오.
- 서영교 위원 오늘 계획서가 있으면 계획서 달라고 했으면 될 것 아니에요?
- 신동욱 위원 법사위가 지금 이렇다고요. 그러니까 법사위가 여러분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 곽규택 위원 토론 기회를 안 주니까 이렇게 또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 신동욱 위원 날치기가 정상이냐고요.
- 이성윤 위원 이건 시비 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5선 의원이 이것 처음 봤습니까?
- 조배숙 위원 아니, 정상이 아니잖아요.
- 서영교 위원 아니, 국정감사 기본계획서도……
- 신동욱 위원 아니, 날치기예요, 그런데.
- 곽규택 위원 국정감사 기본계획서가 너무 이상해요, 너무 이상해.
- 이성윤 위원 이게 날치기예요?
- 신동욱 위원 날치기예요, 그것은.
- 서영교 위원 국정감사 처음 해 보시나? 아니잖아.
- 신동욱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한테 보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 서영교 위원 국정감사 처음 해 보시나?
- 신동욱 위원 국정감사 처음 해 봐요, 4선 할 동안?
- 서영교 위원 아니잖아. 기본 아니에요, 기본?
- 신동욱 위원 야당 이렇게 무시하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 이성윤 위원 5선 의원이 18년 동안 한 거예요.
- 조배숙 위원 의사진행발언 주시고 정리하시지요.
- 장경태 위원 최고의 날치기는 대선후보 교체 날치기지요.
- 곽규택 위원 안전에 대한 토론 한다니까요.

- 장경태 위원 국민의힘의 대선후보 날치기가 최고봉이었지, 최고봉.
- 박은정 위원 맞지요.
- 장경태 위원 새벽 3시, 4시에 후보 등록한 정당이 어디 있어, 새벽에?
- 박은정 위원 그것도 징계도 안 했어요. 아무렇지도 않대요.
- 곽규택 위원 안건에 대한 토론 하겠습니다.
- 신동욱 위원 의사진 행발언을 주세요, 그러니까.
- 장경태 위원 아니, 뭘 말도 안 되는……
- 신동욱 위원 장경태 위원님 말 조심하세요. 눈치 보지 말고, 사람. 똑바로 하든지!
- 곽규택 위원 안건에 대한 토론 한다니까요, 위원장님.
- 위원장 추미애 안건에 대해서……
- 장경태 위원 아니, 날치기하셨잖아요.
- 위원장 추미애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분……
- 장경태 위원 국민의힘이 그게 정당이에요? 내란정당이지!
- 신동욱 위원 아니, 그게 왜! 그게 왜!
- 장경태 위원 거기 앉아 있을 자격조차 없어요!
- 위원장 추미애 곽규택 위원님.
- 장경태 위원 어디 감히 말씀을 함부로 하세요?
- 신동욱 위원 ‘어디 감히’라니?
- 장경태 위원 ‘감히’지요. 그러면 뭐니까? 뭐 어느 안전이라고 합니까?
- 곽규택 위원 장경태 위원님, 이야기 좀 할게요.

아니, 지금 우리가 정당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이 국정감사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합시다’ 했는데 간사 선임이 안 돼 있으니까 사전에 국정감사계획안에 대해 가지고 여야 간에 검토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을 봤는데 이 안에 대해 가지고 사전에 조금 논의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당연한 문제 제기 아니겠습니까? 해마다 하던 국정감사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안을 갖다가 짜 가지고 그냥 오늘 와서 보고 오늘 와서 표결해라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의 간사 선임이 지금 안 되어 있으니까 그 문제 제기를 한 것인데 느닷없이 또 인신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충돌요? 제가 법사위 들어왔을 때 1년 3개월 전에 이해충돌 이야기 제일 먼저 했습니다. 지금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도 법사위원으로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국정감사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했던 분도 재판하고 있는 곳 가지고 지금 국정감사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이해충돌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그런데 그런 문제는 지적을 못 하면서 다른 위원의 남편 되시는 분이 뭘 한다 해 가지고 그 문제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본인이 피고인이거나 본인이 변호인인 사건이 있으면 법원이나 검찰 가 가지고 국정감사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를 이야기하셔야지 엉뚱한 이해충돌을 이야기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보십시오. 국정감사를 하는데 이때까지 국회에서 이렇게 많은 기관들, 지방에 있는 기관들 할 때는 국회가 가지고 국정감사를 했었어요, 계속. 그런데 유독 추미애 위원장께서 오신 이후에 지금 이 많은 기관들을 압축적으로 몰아 가지고 전부 국회로 오

라는 거예요, 지방에 있는 기관들도, 검찰청·법원. 특이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안 했잖아요. 그런데 법사위원장 오셔 가지고, 법사위원장이 무슨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다 국회로 불러 가지고 국회에서만 하겠다. 다른 상임위하고도 안 맞고요, 이때까지 국정감사를 해 왔던 법사위의 그동안의 관행과도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 제기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법사위에 들어와 가지고 야당 위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앉아 있다가 손 들거나 이렇게 하고 나가라 이겁니까? 들어왔을 때 이런 문제가 있으면 지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2시에 회의 소집해 놓고, 저희 지금 2시 이전부터 앉아 있었어요. 회의 진행을 안 해요, 회의 진행을. 지금 몇 시입니까? 그렇게 왔으면 사과부터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회의장 상황 어땠습니까? 4명 국민의힘 위원 앉아 있는데 국회 경위 13명 불러 가지고 앞에 2명씩 세워 놨더만요. 예전에 독재시절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행정실장! 지금 토론 중인데……

○김용민 위원 위원장님 보고 토론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보고 토론해야지요.

○박균택 위원 반말은 삼갑시다.

○곽규택 위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국회 직원분들이, 국회 경위들이 국회의원들을 다 우습게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국회의원이 법사위 회의장 안에서 발언을 하려고 하는데 앞에 2명씩 세워 놓고 회의 진행을 하겠다? 추미애 위원장님, 그렇게 회의 진행하고도 사과 한마디 안 하시고 우리보고 사과를 하라고요? 질서유지권을 위반했다고요? 그보다 더 질서 혼란시킨 사람이 누구입니까? 추미애 위원장 본인 아닙니까?

○서영교 위원 곽규택 위원!

○곽규택 위원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서영교 위원 곽규택 위원!

○곽규택 위원 서영교 위원.

○서영교 위원 말을 조심해서 해요!

○곽규택 위원 서영교 위원 말 조심해서 하세요.

○서영교 위원 예의를 지켜 가면서 해요.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서영교 위원 곽규택 위원, 예의를 지켜 가면서 해요.

○곽규택 위원 예의를 안 지킨 게 뭐가 있어요?

○서영교 위원 아주 무례하기 짹이 없구먼.

○곽규택 위원 이 국정감사계획에 대해서 우리는 찬성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기관들, 지방에 있는 기관들 다 불러 모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국정감사, 통보하듯이 하는 국정감사, 그렇게 하시면서 토론 기회도 안 주고. 위원장님 스스로 좀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위원 위원장님, 저도 토론하겠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김용민 위원님.

○김용민 위원 몇 가지 더 얘기 좀 해 봐야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나경원 의원실에 다 보냈다는데.

○신동욱 위원 우리 방에 왜 안 보내, 그러면?

○이성윤 위원 보냈어요.

○신동욱 위원 안 왔어요.

○김용민 위원 이 국정감사계획에 대한 일정 같은 것들은 행정실을 통해서 나경원 의원실로 보낸 것으로 저도 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경원 위원님이 공유를 안 하셨겠지요. 왜 공유를 안 하셨습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명절이 껴 있어서 아마, 일반적인 국정감사가 10월 초에 시작되는데 명절 연휴 때문에 10월 10일 이후에 진행되는 겁니다. 그런 특수한 상황이 있다는 것 하나 말씀드리고요.

또 지금 왜 국회로 피감기관들을 부르느냐, 예전과 다르다라고 하셨는데요. 법사위에서 피감기관을 대부분 불러 왔습니다. 법사위가 현장국감 가는 일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드물었어요.

작년에 특이하게 대전고검·대전고법 그리고 대구, 이렇게 반을 좀 나눠서 가기는 했지요. 그런데 그 전에 법사위에서는 이렇게 많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보통 국회에서 해요.

왜냐하면 국회에서 진행을 해야 국회방송도 방송이 되고 여러 가지 국민들께서도 이 법사위의 국정감사를 온전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국회에서 진행을 했던 것이고 이번 역시 그런 이유 때문에 가능한 국회에서 진행을 한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론을 왜 안 합니까? 지금 열심히 토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국정감사계획서(안)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하시고 오늘 채택하면 됩니다. 설마 국정감사 자체를 보이콧하지는 않으실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의사진행발언과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좀 구별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안건에 대한 토론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을 향해서 문제 제기하는 방식의 토론이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또 지적하셨으니 말씀드리면 회의 시간에 왜 늦게 들어왔느냐라고 하는데 그것은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오늘 증인과 참고인들에 대해서 각 의원실별로 취합해서 그 부분을 내부 토론하고 상의하는 시간들이 상당히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세 번째 안건이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 각 당이 충분히 소통하고 논의해서 결정된 안들을 만들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 결정된 안, 취합된 안을 가지고 여야 상호간에 협의도 해야겠지요. 그러면 적어도 각 당이 어느 정도 안은, 각 당의 안은 만들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논의가 됐고, 그것은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특수한 사정으로 회의가 좀 늦어졌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은 마침 피감기관 출석하는 것도 없는 안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토론 마치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안건 토론 있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예, 신동욱 위원님.

○신동욱 위원 먼저 김용민 간사님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지요.

증인 회의 하는데, 본인들 회의하는데 회의시간을 왜 어립니까? 그게 뭐가 당당하게.....

○김용민 위원 아니, 국힘도 회의하셨잖아요.

○신동욱 위원 본인들이 회의를 하려면 2시 이전에 회의해 가지고 끝내고 들어오면 되는 거지요. 왜 1시간씩 기다리게 합니까? 그런 억지 쓰지 마시고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한민국 법사위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1948년 국회 이후에 이런 식으로 법사위가 운영된 적이 없습니다.

○전현희 위원 이미 난장판이 됐잖아요.

○신동욱 위원 조용하세요.

○김용민 위원 21대 때 더했어요.

○신동욱 위원 조용하세요. 시간 멈춰 주세요.

○전현희 위원 발언할 때 끼어드는 사람이 항상 신동욱 위원이잖아요.

○신동욱 위원 시간 멈춰 주세요.

○서영교 위원 위원장이에요?

○신동욱 위원 조용하세요.

그런데 민주당이 왜 이렇게 집요하게 그동안 관행적으로 야당에 주었던 법사위원회장을 고집했는지 이제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정청래 위원장이 참 대단하셨지요? 온 국민이 바라보는 데서 법사위를 마음대로 전횡하더니 마침내 민주당 개딸들의 지지를 받아서 당대표가 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그게 바로 법사위에서 법사위 마음대로 휘저어서 얻은 당대표 타이틀 아닙니까? 그러더니.....

○김용민 위원 그러면 거기는 통일교, 신천지 지지받아서 당대표 되고 최고위원 됐습니까? 창피해요, 창피해.

○서영교 위원 전한길과 신천지가 도와줘서 수석 됐어요?

○신동욱 위원 조용하세요.

그다음에 온.....

○김용민 위원 극우의 전폭적인 지지받아서 최고위원 됐네.

○서영교 위원 신동욱 위원은 전한길하고 신천지가 도와서 최고위원이 됐나?

○신동욱 위원 끼어들지 마시고, 시간 중단해 주세요.

그다음에 온 이춘석 위원장이 조금 양반스럽게 진행을 하시려고 하다가 개딸들의 집중포화를 맞더니 갑자기 진행방식이 바뀌었어요. 그러더니 이분이 뭔가 좀 재미가 없어지셨는지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투자를 하셨어요. 주식투자를 하시고, 그것도 보좌관 이름으로 주식투자를 하셨어요. 그 정도가 돼 가지고 법사위원회장을 그만두셨으면 염치가 있는 정당이면 이번에는 법사위원회장을 야당에게 물려주셨어야지요.

○김기표 위원 신 위원님, 안건 토론 부탁드립니다.

○신동욱 위원 그러더니 정청래·이춘석 위원장……

○서영교 위원 염치가 있으면 그만해요.

○이성윤 위원 거기서 개딸 얘기가 왜 나와요!

○신동욱 위원 맞잖아요. 제 말이 뭐 틀립니까?

○이성윤 위원 틀려요!

○신동욱 위원 그러더니 이번에는 6선의 추미애 위원장이 오셨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옆에서 무슨 사이비종교 이런 앞뒤 얼토당토않은 말씀 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고요. 민주당이 그런 정당……

○서영교 위원 그러면 통일교, 신천지 아니에요? 신동욱, 전한길·통일교·신천지 그 표 받은 것 아니에요?

○신동욱 위원 서영교 위원님, 가짜뉴스 그렇게 퍼뜨리고 여기 와서 그 사람들 불러서 청문회 하겠다는 서영교 위원이 법사위원의 자격이 있습니까?

○박은정 위원 있어요.

○신동욱 위원 있습니까?

○박은정 위원 있어요.

○신동욱 위원 박은정 위원님, 법사위원 자격 있어요?

○박은정 위원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통일교·신천지 표 받은 거 아니에요? 전한길한테 가서 표 받은 것 아니에요?

○신동욱 위원 그러더니 추미애 위원장이 와서 이 방이 개판이 됐어요. 이 법사위가 추미애 위원장 오시고 나서 더 개판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 법사위가 언제부터 이렇게 더 엉망진창이 됐습니까? 추미애 위원장 오시고 나서 단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었어요.

그런데 도리어 저희 당이 무슨 난동을 피웠다, 사과해라, 이게 말이 됩니까? 첫 단추가 안 끼워졌는데, 간사 선임도 안 해 줘, 발언권도 안 줘, 의사진행발언도 못 하게 해, 경위 세워.

○서영교 위원 사과를 해야지, 사과. 잘못한 것 사과해!

○신동욱 위원 그러니까 가짜뉴스를 퍼뜨리지 말라고요. 한덕수하고 조희대가 언제 만났냐고요, 언제 만났어요! 그런 이상한 매체 거기에서조차도, 그거 보도한 매체에서조차도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 그걸 당당하게 그렇게 하시고.

○서영교 위원 한덕수하고 조희대하고 국민의힘하고 무슨 교류가 있는지 봅시다. 한덕수랑 김문수는 왜 바꿔치기 하려고 그랬어요?

○신동욱 위원 전과 9법·10법 국회 청문회장에 불러서 국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든 게 바로 서영교 위원이에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변호하시는 분들 우르르 들어와서 그게 무슨 검찰개혁이고 사법개혁을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 국회 법사위원회가 민주당의 쇼비즈니스장이, 정치 비즈니스장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용민 간사님, 왜 국회로 다 불러서 청문회 하느냐, 무슨 생각입니까?

추미애 위원장님, 내년에 어디 나가신다고 그러는데 서울에서 국정감사 해야지 언론들이 많이 오고 관심 받겠지요. 아까 국회방송 말씀도 하시는데, 이 법사위원회가 민주당 정치인들의 정치 비즈니스장입니까? 정청래·이춘석·추미애 위원장 정치 비즈니스 해서 내년

에 뭘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우리 제발 좀 정상으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지금 전부 서울로 부른다는 거 아니에요? 제 말 틀렸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이 있다고 저희 당에 양해라도 구하든지 본인들끼리 다 만들어 가지고 와서 특던져 놓고, 그러면 이게 날치기가 아니고 뭐예요? 계획서는 여당 마음대로 하면 됩니까? 계획서는 여당 마음대로 하면 돼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무리 계획서라도 저희에게 동의를 구하셔야지요. 그래서 이 법사위가 민주당의 정치비즈니스의 장으로 변질됐다고 온 국민들이 대한민국 법사위를 조롱하는 겁니다.

○**서영교 위원** 국민 여러분, 이 계획서를 안을 가지고 와서 토론하자고 하는데 왜 자기한테 안줬냐고 저러면 되겠습니까? 여기에 '(안)'이라고 써 있잖아요. 계획서 이제 줬잖아요. 줬으니까 읽으라고, 읽어 보고 이야기하라고요.

그리고 행정실장이 보내 줬다는데, 나경원 위원에게 보내 줬다는데!

(장내 소란)

○**위원장 추미애** 좀 조용히 해 주세요. 조용히 해 주십시오.

○**나경원 위원** 나 간사로 안 뽑아줘서 전방에 다 보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나경원을 간사로 인정하는 겁니까?

○**위원장 추미애** 나경원 위원님 조용히 해 주세요.

○**서영교 위원** 간사 아니라도 주고받았어야지.

○**위원장 추미애** 서영교 위원님 조용히 해 주세요.

제가 확인한 결과 법사위원 전체 위원님들에게 행정실은 2025년 9월 19일 금요일 17시 25분 정각에 다 송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국정감사 일정을 송부해 드린 것을 위원님들이 참고를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나경원 위원** 일정 달력만 줬지 감사계획서는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간사간에 협의를 해야 되는 거고……

○**신동욱 위원** 일정만 줬다고, 일정만!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계획서(안)이잖아요.

○**나경원 위원** 아까 김용민 위원이 말한 것에 따르면, 그러니까 간사를 빨리 협의해 주시고 법사위 정상화시켜 주십시오.

○**위원장 추미애** 그리고 2시에 회의를 통보하고 회의 지체가 된 것은 아까 김용민 위원이 소상히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우선 많은 증인·참고인에 대해서 야당 측과 협의하기 위해서 민주당 안을 먼저 추려낼 필요가 있었고 그 추려낸 안에 따라서, 추려내자마자 그걸 들고 야당 위원님들이 계신 쪽으로 가서 상의를 하고 난 후에 곧장 이 회의장으로 온 것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여야 간 쌍방이 다 지켜보신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느닷없이 회의를 지체했다 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주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법사위는 아무리 의사진행발언이라 하더라도 막말로 고의적으로 자극적인 말을, 표현을 해서 이른바 어그로 끌기를 시도한다든지 유튜브가 즐길 만한 그런 말을

선정적으로 하신다든지 하는 것은 삼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염치가 있으면 야당에게 법사위를 물려줘라’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국민들은 생각하실 겁니다. 나경원 위원님 같은 경우는 법사위원 자격 자체가 있을 수 없다라는 많은 의견이 저에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곽규택 위원** 보세요. 또 시작하시네. 그런 식으로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본인부터 돌아보세요.

○**위원장 추미애** 윤석열 내란 수괴범을 체포영장을 들고 체포하려 갔을 때 국민의힘 당 48명의 의원들 앞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나경원 위원** 그 당시 체포영장은 불법이었기 때문에 한 겁니다. 공수처 영장, 불법이었기 때문에 한 겁니다.

○**위원장 추미애** 지금 저런 말이지요. 불법이라고 하면서 내란 극복을 위한 긴급한 사법체계 작동을 멈추기 위해서 선동과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던 분이 법사위에 오셨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거지요. 법을 우롱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곽규택 위원** 그거하고 법사위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추미애 위원장이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니까 회의 진행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추미애 위원장 스스로 반성 좀 하세요. 유권해석 하시고 그렇게 논리가 빙약합니까? 논리가 정말 떨려요, 보면. 논리가 안 되면 그 이야기를 해. 논리적으로 말씀하세요, 논리적으로. 논리가 안 돌아갑니까?

○**나경원 위원** 추미애 위원장님, 판사 출신 맞습니까? 듀 프로세스 오브 로우(due process of law)를 모르십니까?

○**위원장 추미애** 그리고 이해충돌은 나경원 위원 스스로가 자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곽규택 위원** 이해충돌은 위원장님이 스스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경원 위원** 박지원 위원은 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어요.

○**위원장 추미애** 이해충돌 때문에 나경원 위원 스스로가 이미 자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이따가 아마 드러날 것입니다. 이해충돌이 있으면 이 법사위원의 자격 자체가 없는 거예요.

○**곽규택 위원** 법무부장관 하실 때 아들 병역문제 가지고 검찰청에 연락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이해충돌인 거예요.

○**최혁진 위원** 곽규택! 좀 조용히 해!

○**곽규택 위원** 반말하지 마세요, 최혁진 위원.

○**최혁진 위원** 시끄러워 죽겠네, 안 들리잖아!

○**위원장 추미애** 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규택 위원** 추미애 위원장님이 가장 큰 이해충돌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법무부장관 할 때 아들 병역문제 가지고 검찰청에 전화한 분이 누구세요? 그러면 법사위원장 들어오시면 안 되는 겁니다. 국민들이 다 알아요, 국민들이 다 알아.

○**위원장 추미애** 허위사실을 유포하시면 처벌받습니다!

그것은 이 표결과 의제와 관련 없는 명예훼손적인 발언이고 사실무근 발언인데 책임지시겠어요?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말씀 아니에요?

○**서영교 위원** 신동욱 위원 일정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신동욱도 받고 나경원 위원도 받고 곽규택 위원도 받고 다 받았잖아요, 일정표. 누가 안 받았다고 그래?

○**나경원 위원** 달력과 계획서(안)은 다릅니다. 계획서(안) 받은 적 없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박군택 위원님.

○**박군택 위원** 제가 발언 좀 하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적반하장이네, 적반하장이야.

○**위원장 추미애** 나경원 위원님이 적반하장이에요. 그만 좀 하세요!

○**나경원 위원** 추미애 위원장님, 그런 식으로 하시면 경기도지사는커녕 국회의장도, 경기도지사도 다 날아가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장내 소란)

○**박군택 위원** 회의를 방해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면 조용히 하십시오.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 좀 드리겠습니다.

국힘 위원님들 우리 직원분들한테……

○**위원장 추미애** 잠깐만요, 박군택 위원님.

방금 여기는 뭐였어요? 여러분들은 뭡니까? 여러분들은 뭐예요?

(「계획서를 받은 적이 없어 가지고 그걸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것은 나중에 확인하세요, 전산자료에 남아 있으니까. 여기 다 포함해서 위원장석이에요. 그런데 회의 진행 중에 위원장을 보좌하는 행정실 직원에게 업무방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어느 의원실이에요?

(「신동욱 의원실입니다」 하는 이 있음)

○**곽규택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행정실장이 위원장 보좌관입니까?

○**서영교 위원** 행정실은 위원장을 보좌하는 행정실이에요.

○**곽규택 위원** 법사위 운영도 같이 보좌하는 거예요.

○**서영교 위원** 보좌관들이 거기서 하지 말라고요, 가요! 보좌관들은 나중에 이야기해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에……

○**신동욱 위원** 지난번에 그 방 보좌진들이 우리 얼굴에 카메라 들이대지 않았습니까?

○**나경원 위원** 진짜 적반하장이네.

○**박군택 위원** 보좌진들, 국힘 위원님들 보좌진들 좀 비켜나세요. 좀 비켜나요.

○**신동욱 위원** 행정실에서 보냈다고 해서 그것 확인하려 왔다잖아요. 뭘 비켜요.

○**나경원 위원** 아니, 저쪽 보좌진들 들이대고 사진 찍을 때는 언제고 우리 보좌진들한테 왜 그러십니까?

○**박군택 위원** 나중에 확인하라고 하십시오.

○**주진우 위원** 지금 논의가 되고 있잖아요.

○**나경원 위원** 우리 보좌진들한테 박군택 위원이 할 권한이 있습니까?

○**신동욱 위원** 민주당 보좌진들 하는 건 아무렇지도 않고 우리 보좌진들은 하면 안 돼요? 지난번에 민주당 보좌진들이 우리 앞에 대고 카메라를 찍었어요.

○**박군택 위원** 정말 여러분들은 지금 도대체가 의사 진행을 방해하려 온 겁니까, 의사 진행을 하러 온 겁니까? 입 좀 다무세요!

○조배숙 위원 아니요, 방해하러 온 거 아니에요.

○박균택 위원 정말 무례해요!

○조배숙 위원 아니, 그런데 그쪽에서 먼저 질렀잖아요.

○박균택 위원 도대체 배운 분들이 맞습니까?

○나경원 위원 박균택 위원님, 말씀 조심하세요.

○박균택 위원 나경원 위원님, 방해하러 온 것이 아니면 가만히 계십시오.

○위원장 추미애 잠깐만요, 박균택 위원님. 좀 이따 다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행정실 직원들은 위원님 여러분들을 시야로 확인을 하고 위원장이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지시를 하면 위원님들을 확인한 다음에 여기 시간 체크를 하고 업무를 실시간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건데 여기 시야를 가로막고서 우리 방에 보내는 거 맞는지 지금 항의하고 따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신동욱 위원 아니, 왜냐하면 받았다라고 계속 거짓 주장을 하니까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지요. 받은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그거 확인한 겁니다.

○위원장 추미애 그것은 이 회의를 마친 후에 얼마든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신동욱 위원 아니, 그사이에 계속 거짓말을 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면 거짓말을 못 하게 하셔야지요.

○위원장 추미애 회의 진행 중에 진행을 협조하는 업무를 방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 상식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 위원장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지요. 계속 거짓말을 하시잖아요. 받은 적이 없는데 자꾸 받았다고 하니까 그것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위원장 추미애 박균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다시 넣어 주세요.

○박균택 위원 국힘 위원님들, 우리 국회 직원분들한테 막말 반말을 함부로 들 하십니다. 며칠째 습관적으로 반말들을 하시더군요. 그건 조직문화입니까? 저는 작년 5월 30일 날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남녀노소 직급을 불문하고 유일하게 딱 한 번 반말을 해 봤습니다. 며칠 전에 과거 직장의 후배였던 광규택 위원님한테 화가 나서 한번 반말을 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반말들 윽박지르는 말들을 함부로 직원분들한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태도들은 좀 시정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보기 가 불편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봐 왔던 국힘 위원님들 너무 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왜 지방 고지검·고지법에 대한 국정감사를 국회에서 하느냐라고 지금 따지고 계십니다. 저는 위원장님의 조치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방 근무를 여러 번 했습니다. 한번 국정감사를 받으려면 국회의원들 모시기 위해서 총무과 직원들은 2주 이상을 고생합니다. 역전에 나가 가지고 모시고 점심식사 준비를 하고 구내식당도 갖추고 의전 챙기고 그러는 과정에서 하루 내내 그 직장의 업무가 마비가 되고 고생을 합니다. 저녁에 서울 가는 열차편 챙기는 데까지 다 챙길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국회로 오면 기관장하고 기획 담당 검사 두 명만 서울로 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두 명만 고생하면 될 것을 가지고 수많은 직원들을 2주씩 고생을 시킵니까?

지금 세종시의 많은 공무원들이 국회를 출입하면서 국회 질의에 답하고 자료를 제출하고 협안을 설명하는데 왜 법원과 검찰청의 장들은 국회 오면 안 되는 겁니까? 1년에 한번 오는 그 일이 뭐가 그리 대단해서 총무과 직원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을 고생시키겠다는 겁니까? 제발 약자들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존중의 태도를 좀 가져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 위원 국민의힘에서는 이 법사위 회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을 자꾸만 여당의 책임으로 몰고 계시는데요.

신동욱 위원님께 말씀드릴게요. 내란의 밤에 본회의장에서 전화로 누구한테 보고를 하셨는지 그리고 원내대표실에서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2시간 동안 그 안에서……

○나경원 위원 또 내란이고 또 인신공격입니까? 언제까지 내란이고 언제까지 인신공격입니까? 이게 의사진행발언이 맞습니까?

○신동욱 위원 위원 상호 간에 토론해도 돼요?

○박은정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신동욱 위원 질문이잖아요. 답변하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내란의 밤에 추경호 원내대표실에서 2시간 동안 표결도 안 하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 지금 내란에 대해서 고발돼서 피의자 신분이시지요. 내란특검에 소환됐습니까? 가서 조사나 받으세요.

본인은 그렇게 하시고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 되셨지요. 본인이 그런 대가로 최고위원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부정선거 주장하는 전한길 얘기도 많은 것이 맞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 법사위에 와 있는 자격이 있을지 저는 모르겠고요.

윤석열 면회는 정말 가실 겁니까?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과 단절을 하십시오.

○나경원 위원 안건과 관련된 토론을 하거나 의사진행발언 안 하는데 토론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경고해 주십시오.

○박은정 위원 지금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법사위에 와 계시는 자격이 없다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단순히 간사를 누구를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윤석열 독재 정권, 내란 일으킨 윤석열과의 단절을 하지 않으시고 그 내란이 맞다고 옹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당한 대화의 상대로 맞는가 저희가 그런 의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경원 위원 위원장님, 경고해 주십시오.

○박은정 위원 독재를 청산하려고 하는 이 모든 국회의 노력이 어떻게 독재가 될 수 있습니까? 국민의힘이 국회의 폭거다, 여당의 독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 정말 기가 막힙니다. 독재를 청산하려고 하는 이 피눈물 나는 노력이 어떻게 또 독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국민의힘 위원님 제발 정상으로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이……

○신동욱 위원 본인 여당이에요, 현재? 본인 여당이냐고요.

○박은정 위원 저는 선명한 야당입니다.

그런데 검찰에 대해서 법무부에 대해서 국회에 불러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이유가 있

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절대권력으로 국민 위에 군림했고 심지어 국회조차도 나오지 않고 검찰청에 국회의원들 불러다가 국정감사를 받는 오만한 검찰이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리하고 있고 누구든 국회에 와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물음에 답을 해야 됩니다. 국정감사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런 국정감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서에 대해서 이 내용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딴지를 거시고 계속 회의를 방해하시는 것은 국민의힘이 법사위원 자격이 없다는 방증입니다. 저는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위원장님께서도 국민의힘 위원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욱 위원 위원장님, 위원 상호 간 토론 허용하십니까? 위원 상호 간 토론 허용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추미애 (자료를 들어 보이며)

25년 9월 19일 금요일 17시 25분에 각 의원실로 송부된 국정감사 일정은 이와 같은 겁니다. 그리고 나경원 위원이 얘기하는 국정감사계획서(안)은 지금 토론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료를 보시고.

○나경원 위원 이것은 간사 간 협의를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간사 간 협의를. 그러니까 간사 협의를 시켜 달라는 거예요.

○위원장 추미애 그러니까 간사 자격 있는 분으로 추천을 해 오세요, 당에 가서 상의를 하셔서. 스스로 이해충돌된다고 하셨으니……

○곽규택 위원 간사 자격이 뭐니까? 법사위원장 자격은 있어요?

○나경원 위원 자격 여부를 판단할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최혁진 위원 누가 자격을 운운해요?

○곽규택 위원 법사위원 자격 따지니까 물어본 겁니다. 왜요?

○서영교 위원 내가 지금 나가서 다 확인하고 왔는데 그 의원실로 다 갔구먼요, 신동욱 의원실 확인했는데.

○신동욱 위원 안 보냈다니까요, 이것을. 왜 자꾸 같은 거짓말……

○서영교 위원 이 사람이 금방 말을 바꾸네. 일정 보냈다 했잖아요, 일정.

○신동욱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안 보냈다니까 이거.

○나경원 위원 보낸 것으로 협의가 되냐고요.

○서영교 위원 일정 다 보냈다고 했잖아요.

○신동욱 위원 우린 이걸 안 보냈다고 문제 삼는 거예요.

○서영교 위원 말 바꾸지 말고.

○신동욱 위원 거짓말이 입에 붙었어, 아주. 서영교.

○서영교 위원 말 바꾸지 말고 거짓말쟁이 신동욱.

○나경원 위원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협의를.

○서영교 위원 지금 내가 나가서 다 확인했어요. 확인하고 메일로 보낸 것도 다 확인하고.

○신동욱 위원 A4 한 장짜리 왔다고요.

- 나경원 위원 보내면 됩니까, 협의를 해야지.
- 서영교 위원 일정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일정 다 보내고 이건 '(안)'이라고.
- 김용민 위원 이거 내용 봐 봐. 여기 뭐가 있는지 봐 봐요. 감사반 편성하고 직원 누가 할지 이런 것들인데. 토론하세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 김기표 위원 중요한 골자는 이미 보냈고 여기서 그것에 대해 토론…… 왜, 감사반 빼지려고요?
- 서영교 위원 사과하세요, 지금. 신동욱 의원실 내가 딱 보고 왔어.
- 곽규택 위원 법사위원장이 도대체 몇 명이에요, 지금 법사위 안에는. 법사위원장이 왜 이렇게 많아요.
- 서영교 위원 나경원 위원, 신동욱 위원, 내가 다 확인하고 왔어, 지금. 제가 나가서 다 확인하고 그 이메일 보낸 것도 다 확인했어요.
- 곽규택 위원 서영교 법사위원장님 됐어요?
- 나경원 위원 협의가 일방적으로 보내면 협의입니까?
- 위원장 추미애 조용히 해 주세요.
- 서영교 위원 우리도 이메일로 받은 거예요, 공용 이메일로.
- 조배숙 위원 진짜 위원장님 진행 잘못하시네.
- 나경원 위원 진짜 아무 말이나 하지 말고 지적했으면 그냥 진행하면 되잖아요. 왜 인신공격들을 합니까?
-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 다른……
- 서영교 위원 거기 누구예요? 위원장님, 저 사람 누굽니까?
- 위원장 추미애 어디……
- 서영교 위원 지금 나를 빤히 찍고 있는 저 사람 누구야?
- 곽규택 위원 왜요? 상대방 국회의원 다 찍고 있잖아요.
- 신동욱 위원 본인도 다 찍었잖아요. 그거 왜 물어요. 누군지 모르는데 왜 물어요.
- 서영교 위원 누구예요, 그 사람?
- 신동욱 위원 누군지 모르는데 왜 물어요. 왜 묻냐고요.
- 나경원 위원 엊그저께 추미애 위원장 비서관이 찍었잖아요, 우리.
- 곽규택 위원 공개된 회의라면서 더 찍으세요, 더 찍으세요.
- 서영교 위원 내가 진행하는데 방해한 그 사람 누구예요?
- 곽규택 위원 더 찍으세요. 무슨 말씀 하시는 거야?
- 서영교 위원 조치 취해 주세요. 누구예요?
- 신동욱 위원 지난번에 찍었잖아요.
-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 허락하에 상호 다 촬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법사위원장님이 허락하신 것 아닙니까.
- 서영교 위원 누구 보좌진이야? 신동욱 위원 보좌진인가?
- 곽규택 위원 보좌진한테 시켜 가지고 상대 당 국회의원 사진 찍어라, 영상 찍어라, 다 허락하신 것 아닙니까.
- 서영교 위원 신동욱 위원 보좌진인가? 누구예요?
- 곽규택 위원 공개된 회의니까 보좌관, 비서관 보고 상대 당 국회의원 찍으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서영교 위원 누구예요, 그 사람?

○곽규택 위원 아까 다 찍고 계시더만.

○김용민 위원 정도를 지킵시다, 이제는.

○서영교 위원 저 사람 찍어 주세요.

○곽규택 위원 먼저 중단하셔야지요, 그러면.

○신동욱 위원 항상 먼저 시작하고 정도를 지키자 그래요.

김용민 위원님, 항상 먼저 시작하고 정도 지키라는 얘기 좀 하지 말라고요.

○김용민 위원 누가 시작했는데……

○신동욱 위원 지난번에 먼저 시작했잖아요.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편파적으로 운영을 하시니까 이렇게 무질서해지는 겁니다, 회의가.

○신동욱 위원 그리고 말이야 영상 다 돌리고 유치하게.

○나경원 위원 인신공격들 하고.

○곽규택 위원 또 정회하시려고요? 왜 정회해요, 지금?

○김용민 위원 그러면 보좌진들 상대 당 위원님 찍는 건 자제합시다.

○위원장 추미애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추미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 중에 위원님들로부터 법제사법위원회의 2025년도 국정감사 일정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으로서 확인한 결과, 이렇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실 측에서는 각 위원님들의 보좌진 이메일로 일일이 다 송달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송달 일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9월 19일 15시 25분이고 또 그 발송된 메일이 수신 ‘읽음’으로도 표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필요하시다면 이것을 직접 나오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위원 계획서(안)하고 다르다는 거고요. 그리고 통보와 협의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획서(안)이 아니고 또 통보와 협의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곽규택 위원 무엇을 보냈는지를 말씀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무엇을. 목적어를 말씀하셔야지요, 목적어를.

○서영교 위원 일정표 보냈다고요, 일정표.

○곽규택 위원 계획서는 못 보냈다 말씀하셔야지요.

○서영교 위원 계획서는 (안)으로 여기 올라와 있잖아요.

○조배숙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도록……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조배숙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조배숙 위원 제가 위원장님께 우리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회라는 데가 여와 야가 갈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당히 침예하게

이렇게 갈등을 하고 있는데 저는 위원장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이 6선이나 되시고 그러면 그 경험에 의해서 여와 야의 이런 갈등을 원만하게 타결을 해 주시고 또 넉넉함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불만입니다. 다들, 여는 여대로 자기가 옳고 야는 야대로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맞고…… 이게 점점이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그런 운영의 묘를 발휘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물론 민주당 소속인 건 알겠지만 너무 일방적으로 그쪽에 편향되시니까 이렇게 자꾸 과행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 부분도 사실 절차적인 문제입니다. 국정감사 계획에 있어서 저희로서는 일정을 보냈고 그리고 이 구체적인 감사계획서를 저희들이 받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일정 보낸 거하고 일방적인 통보고 여기에 대해서는 합의를 미리 해야 되는데 간사가 없는 상황이어 가지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서로 논의를 하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그 일정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가지는 것은 현장 법원의 방문입니다. 과거에 저도 법사위에서 활동했던 경험이 있고 그때도 국정감사 때는 1년에 한 번 지역을 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갔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물론 국회에서 지역을 감사할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분들이 준비한다 그리고 직원들이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의외로 가 보면 저희들을 기다리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역의 민원도 얘기하고 지역에 있는 그 법원의 사정도 하소연을 하면서, 그리고 저희들이 언제 또 지역에 있는 법원에 가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꾸 서울로 집중이 돼 있는데, 국회로 돼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도 작년의 예에 비추어서 지역도 같이 직접 현장감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가 느끼는 건데 정말 의안에 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안뿐만 아니라 자꾸 어떤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또 지금 현재 같이 있는 위원에 대해서 자꾸 인신 공격을 하는 발언들이 있습니다. 그건 저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느끼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가 회복됐다는 것을 선언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국회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주의가 회복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국회의 모습을 보면 알 것입니다.

계엄이라는 사태에 대해서 저희들도 계엄을 찬성하는 것이 아닌데 결핏하면 현재 재판 중이고 법적으로도 법원에서 결론이 나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계속 논리의 비약으로 이렇게 저희들을 자꾸, 내란 타령을 하면서 사사건건 얘기를 하는 거 그 자체가 저는 폭압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민주적인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법사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제대로 우리가 절차를 거치고 있고 그리고 이론적으로도 학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재판 중이고 그리고 법원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위원님들께서 국정감사계획서(안)에 대해서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경태 위원 국감 안 하면 여당은 좋은데 안 하나요?

○신동욱 위원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답을 해 주셔야지요.

○조배숙 위원 하는 거는 반대하지 않는데 일시, 장소를 얘기하는 거지.

○위원장 추미애 이 안건에 대해서는 조배숙·신동욱 위원님으로부터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표결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장내 소란)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6인 중 찬성 11인, 반대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요구의 건

(16시24분)

○위원장 추미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및 서류제출요구는 피감기관의 해당 감사일에 업무 전반에 대해 보고하고 위원의 국정감사 준비에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위원회의 의결로서 요구하려는 겁니다.

국정감사와 관련된 서류제출요구는 국회법 제128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서류제출요구서는 제출요구일 7일 전에 해당 기관에 송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서류제출 요구는 오늘 의결하기로 하고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해당 기관의 감사실시일 7일 전까지 행정실에 제출해 주시면 위원장이 해당 기관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류제출 요구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이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요구의 건을 배부해 드린 자료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16시27분)

○위원장 추미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2025년도 국정감사를 위해 79개 피감기관의 기관장, 부서장 등 기관증인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고 일반증인 및 참고인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추가 협의를 위해서 오늘은 토론과 의결을 하지 않고 추후 다시 의사일정을 잡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위원장 추미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의 법률안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이 법률안들은 국회법 제59조에 따른 숙려기간 5일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5인 중 찬성 11인, 반대 4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16시30분)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행안위 소관 의사일정 제4항 및 5항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병섭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섭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 이상 2건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률안에 대한 수정의견은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하여 제시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경제정책, 인공지능 및 과학기술정책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부총리로 하고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며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안 부칙 제7조 중 원자력 진흥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청년기본법 등 일부 법률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또는 소관을 조정하는 것을 넘어 해당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 정수를 개정하는 것은 소관 상임위 심사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책임운영기관의 특별회계 등 운영은 현행 기획재정부 예산실 소관임에도 안 부칙 제7조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전단에서는 기획예산처장관뿐만 아니라 재정경제부장관까지 함께 규정되어 있고 국민주택채권 등 국채의 발행은 현행 기획재정부 국고국 소관임에도 주택도시기금법 제7조제2항에서는 기획예산처장관 소관으로 규정되어 있어 정부조직 개편 내용과 부합하게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소관을 일부 조정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으며 타법 개정 내용 중 일부 법률 또는 공포 후 시행 전 법률이 누락되었거나 이미 실효된 법률이 개정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긴급한 재정수요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박은정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박은정 위원 행안부장관님, 정부조직법 37조 9항·10항에 중대범죄수사청을 관장하기 위해서 행안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둔다라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이 행안부장관 소속으로 들어감으로써 행안부에는 국가수사본부와 중대범죄수사

청, 2개의 수사기구가 있게 되는데요. 지금 국민들께서 일부 행안부 내에 수사기관이 2개가 있음으로 해서 행안부 권한의 비대화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것은 잘못된 우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행안부장관은 2개의 수사기관에 대해서 수사 지휘 및 통제를 하실 수는 없지만 이 수사기관들은 법무부 내에 앞으로 설치될 공소청에 있는 검사들 그리고 사법부에 의해서 영장을 통제받습니다. 수사 통제는 법무부와 법원에서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지난 내란, 윤석열 정권 당시에 김성훈, 이광우 등등 경호처 고위 간부들에 대한 영장을 검찰에서 세 차례, 네 차례나 기각함으로써 국가수사본부의 내란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행안부 내에 이 2개의 수사 조직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수사권이 비대화된다 라든가 통제받지 않는다라는 이런 우려는 행안부 내에 중수청을 두지 않으려는 일부 정치검찰들이 법무부 내에 중수청을 둬야 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하는 잘못된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안부장관님께서 앞으로 중수청을 행안부 내에 두게 될 텐데 이에 대한 생각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존경하는 박은정 위원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검찰에 의한 사법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행안부가 권력이 강화될 이유는 크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검찰, 검사에 의한 과도한 사법 통제로 수사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더 걱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박은정 위원** 검사들은 그동안 경찰의 수사를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서 방해하기도 하고 수사를 제대로 못하게 하기도 하고 또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성과가 있는, 공과가 있는 사건들을 경찰로부터 뺏기도 하고 그런 수사권 전횡을 행사해 왔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행안부 내의 중대범죄수사청과 국가수사본부가 수사권만을 가지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서 제대로 그것을 감독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사권은 국가가 인정하는 폭력이기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는 그것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행안부에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안부에서 진행되는 2개의 수사 조직, 국가수사본부와 중수청의 수사에 수사 인력들이 제대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권력을 남용할 거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은 기우에 불과하다. 수사권과 기소권, 영장청구권, 공소취소권, 수사종결권을 모두 가진 검찰이 모든 권한을 행사했을 때 그것이 남용되고 왜곡되고 해서 심지어 윤석열 정권에서 윤석열이라는 정치검찰, 괴물 정권이 발생했던 것이고요. 그러나 수사청이나 국가수사본부가 행안부에서 제대로 된 수사권을 행사한다면 저는 그것이 국민을 위한 수사권의 행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된 초동수사 단계에서의 민생 범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들은 경찰이 훨씬 더 수사를 잘합니다. 아마 중수청으로 가게 된 수사 인력들도 전문성을 가지고 훨씬 더 잘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사권을 가지고, 기소권을 가지고 거래를

하거나 약속을 해 주는 이런 그동안의 잘못된 행태를 반성하고 제대로 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제대로 된 수사기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까 조배숙 위원님, 나경원 위원님, 곽규택 위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토론을.

조배숙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조배숙 위원 아니요, 순서를 먼저 곽규택 위원님한테 양보하겠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거수하신 순서대로 합니다.

○조배숙 위원 그래요?

○위원장 추미애 예.

○조배숙 위원 윤호중 의원님, 장관이 되셨는데……

보니까요 정부조직법이 지금 엄청나게 우리 사회를, 구도를 막 혼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처가 서로 이렇게 통합도 되고 또 분리도 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일인데요. 그렇지요? 그런데 행안부에서조차, 행안위원회에서조차 이게 충분한 검토가 안 됐어요. 그리고 행안위원회도, 제가 상임위 하는 것을 동영상으로 좀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도 어떻게 보면 날치기 해서 올라온 건데 여기도 보니까 숙려기간이 안 됐는데, 지금 5일이 안 넘었어요. 그런데 내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이렇게 서둘러서 하는 것 같은데요.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으세요, 이렇게 가면?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지금까지 조배숙 위원님도 선배 의원님이시고 오랫동안 의정 생활하시면서 보셨겠지만 새 정부가 출범할 때 정상적으로 출범한, 그러니까 인수위가 있는 정권 출범의 경우에도 정부조직법 개편을 하는데 심사기간을 그렇게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래요? 그런데……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지금은 더군다나……

○조배숙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 얘기는 그래도 제대로 된 토론이라도…… 우리가 꼭 잡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쪽은 윤석열 정부 출범할 때 6개월이나 붙잡았어요. 붙잡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제대로 된 토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특히 검찰 폐지에 관련된 부분도 논의를 하고 싶지만 제가 오늘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을 했어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조배숙 위원 장관님,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뭐니까? 양성평등은 쉽게 들어오는데 지금 성평등이라고 해요. 성평등의 개념이 뭐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성별에 따라서 차별하지 않는 것이 성평등입니다.

○**조배숙 위원** 그러면 그 성평등이 양성평등입니까, 아니면 그 이외의 성을 포함하는 성평등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헌법 제11조에 차별금지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조배숙 위원** 차별금지인데,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상 인정되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성별에 따라서 차별하지 않는다고 하는 정신을 담았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러면 그 성이 뭐니까?

여성입니까, 남성입니까? 또 다른 성이 있나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저는 다른 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지금 여기 성평등 해 가지고 어떤 분들은 양성평등의 줄임말로 알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성평등이라고 하면 젠더라고 해 가지고 성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뉴욕시 인권위원회에 등록된 성만 서른한 가지입니다.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면)

지금 메타라고 그러지요, 미국 페이스북에 등록할 수 있는 성이 몇 개냐면 58개, 영국은 7개예요.

그다음 띄워 주세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작용이 나타났어요. 지금 트랜스젠더 해 가지고 수영선수해 갖고 여성 대회에 참석해 메달을 석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치소, 교도소에 자기가 여성이라고 해 가지고 들어갔는데 성폭행하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역설적으로 하도 이 부분에 반대운동을 하다가 자기가 그냥 ‘그러면 나 여성이다’ 하고 들어간 건데요.

외국에서는 이렇게 여기에 대한 부작용이 심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고 있어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우리는 아직 그런 등록제도를 가지고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조배숙 위원** 그런데 이 용어가 위험하다는 것인지요. 이 용어의 의미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헌법재판소에서도 성평등이라는 단어는 헌법에 배치되지 않는다는 판결도 있었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런데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용어가. 용어가 굉장히 교묘하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성평등이라는 얘기가 사회적인 합의가 되지 않은 말이에요.

또 보여 주세요.

그래서 지금 그래 가지고…… 다 알고 계시는 얘기고요.

그래서 결국 트럼프는 이 세상에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 있다. 그다음에 영국에서는 대법원에서 사람은 남성과 여성…… 이런 판결까지 내렸습니다. 지금 서구에서는 이런 부작용 때문에 이렇게 남성, 여성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 문제의 소지가 있는 용어를 해서 이렇게 만들지요? 여기에 대해서 학부모단체나 종교단체에서 엄청나게 저항하는 것 알고 계신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성평등이라는 표현은 중립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은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다른 법률로 정해 주실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배숙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혼동이 일어나서 이런 혼선이 빚어지게 되거든요. 저는 이런 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추미애** 김용민 위원님.

○**김용민 위원** 장관님, 저는 아무래도 수사·기소 관련된 부분, 중수청 설치 부분을 질의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영국에서도 1985년에 왕립기소청을 만들면서, 영국은 사실 경찰이 수사·기소를 다 했었는데 기소 권한을 별도로 떼 내 왕립기소청을 만들면서 그때 영국 의회에서도 격론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당시에 여러 가지 우려들이 막 제기가 됩니다, 이것 분리하면 안 된다. 그러나 그 뒤에 실제 분리해서 제대로 운영하고 나니 훨씬 효과적이다, 기소율도 높아졌고 그다음에 잘못된 기소는 대폭 줄었고 경미한 사건은 신속하게 끝냈고 중범죄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더 대응을 잘하게 됐다 이런 통계가 나오면서 칭찬으로, 잘 만들었다라는 평가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행안부도 결국에 최종적으로 설계된 제도가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한편 이번에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했습니다. 관봉권 떠지 분실 사건 관련된 청문회를 했는데,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현장에 증인으로 나왔던 검사들은 떠지 분실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제대로 갖고 있지 않기도 했지만 아주 중요한 충격적인 얘기를 하더군요. 지문 채취하는 것들은 검사들은 잘 모른다, 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수사, 초동수사의 기본이 되는 이런 것들을 검찰은 하지 않는다, 모른다라고 하더라고요. 결국에 검찰이 그동안 수사를 잘한다라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신화를 만들어 왔던 것이 그날 바로 무너졌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는 수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 제일 잘한다라는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보여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해외 사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예를 들면 우리가 독일이나 미국 많이 비교하는데 수사는 수사기관이 전적으로 하고 검사들은 기소만 담당합니다. 물론 그 수사 과정에서 복잡한 법리 문제, 법률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조언하는 역할들을 하기는 하는데 그것이 가능이 명확하게 구분돼 있고 조직이 명확하게 구분돼 있으니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들리는 것처럼 검사들이 권한을 남용하고 정치검사가 등장하고 하는 이런 일들은 그 나라에서는 들어 볼 수 없는 그런 뉴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제대로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수사권과 공소권이 기관으로 완벽하게 나뉘어져 있는 것

이 오히려 책임 소재가 분명해져서 보다 더 책임 있는 수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국민의 관점에서 놓고 보더라도 지금까지 보면 1차 경찰수사가 끝난 다음에 다시 2차 검찰수사를 또 받거든요. 다시 처음서부터 재수사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사를 받게 되는데 그런 절차가 오히려 더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할 뿐만 아니라 법률소비자인 국민들을 더욱더 힘들게 만드는 결과가 되고 사건 수사를 장기화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용민 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검찰청이 폐지가 됩니다. 지금 법안에도 주요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재가 돼 있어요, ‘수사·기소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안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한다’라고 분명하게 기재돼 있습니다.

1949년에 검찰청법이 제정돼서 검찰이 그때부터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76년, 77년째 이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잘못을 했고 역사 앞에서 그리고 국민 앞에서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서 더 이상 국민들께서 검찰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셔서 이번에 정부에서도 큰 결단 그리고 국회에서도 중대한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결단들이 퇴보되지 않도록 상황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정부조직법은 개정하지만 검찰청법은 동시에 살아 있는, 유예기간 내에는 공존해 있는 독특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신속하게 만들고 검찰청법을 신속하게 폐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준비 철저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곽규택 위원님.

○곽규택 위원 오늘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사실 가장 큰 핵심과 관심은 검찰청 폐지일 겁니다. 그런데 검찰청 폐지와 관련된 주제를 행안부장관님한테 질의한다는 것 자체가 참 굉장히 어색하네요.

지금 검찰총장이라는 그 직은 헌법에 나오는 직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 출범 한 지 거의 한 4개월이 다 돼 가는데 검찰총장 임명을 안 하고 있어요. 검찰총장을 공석으로 두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검찰청 폐지와 관련해 가지고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했었습니다. 헌법학자가 나오셔 가지고 ‘검찰총장이라는 그 이름이 헌법에 있는 한은 하위법으로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다’ 이렇게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정부조직법 개정을 해서 먼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명백한 헌법상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검찰총장이라는 이름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헌성이 아주 높은 법률 개정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과연 헌법체계와 이 법이 맞는지에 대해서, 이것은 법사위에서 당연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안부 소관 법률이라고 해 가지고 행안부장관님께서 결정하거나 답변하실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법사위에서 보

다 심도 있게 다뤄야 될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서 그동안 이 조직을 행안부에 두는 게 맞느냐, 법무부에 두는 게 맞느냐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느 것으로 한다 해도 장단점은 있겠지요.

그런데 지난 법사위에서 했던 청문회에 민주당 측에서 채택한 종인도 나오셔 가지고 중대범죄수사청까지 행안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것에 대해서 이건 분명히 권한 비대화의 우려가 있다, 경찰수사가 지금도 국가수사본부 산하의 경찰조직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행안부 산하에 또 중대범죄수사청을 두면 너무 권한이 비대화되는 것 아니냐…… 그분이 그렇게 말한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법사위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장관님, 지금 중대범죄수사청을 새로 만들려면 여기 개정안에도 나와 있지만 조직이나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대한 법안은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중수청법과 기소청법은 앞으로 만들어질 법안입니다. 그 기간을 두기 위해서 지금 검찰청 폐지를 비롯한 정부조직법상 관련 조항의 시행을 1년 유예하게 되는 것입니다.

○곽규택 위원 지금 그 법이 안 만들어져 있는 건 맞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렇습니다.

○곽규택 위원 저는 이것도 굉장히 국민들에 대한 눈가림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렇게 중요한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면서 그 설치와 조직, 직무범위, 권한 이런 것에 대한 어떠한 초안도 없이 정부조직법에 한 줄을 끼워 넣어 가지고 이것부터 통과시킨 다음에 나머지는 그 목적에 맞춰 가지고 또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법을 만들겠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바로 이 법사위원회에서 논의해 주실 법이 검찰청 폐지법과……

○곽규택 위원 저는 그게 굉장히 눈가림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조직법이 올라왔으면 그에 맞는 새로운 기관의 설치에 관한 법률은 당연히 같이 심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체계가 맞는지 우리가 심사를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법사위에서.

지금 이렇게 한 줄 들어간 것을 가지고, 우리나라 수사체계·형사사법체계를 완전히 바꾸겠다는 이 중요한 법을 이렇게 한 줄짜리를 먼저 넣어서 통과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설치법을 논의하자? 이것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그리고 국민들께 과연 중수청의 실체가 무엇인지 중수청이 들어왔을 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이런 것을 속이고 지나가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법사위에서 분명히 다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될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위원장님,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추미애 예.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우선 광규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에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헌법에 들어 있는 이유는 공소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장은 국민의 권리와 자유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신중하게 임명하라는 것이지 검찰총장이라는 그 직위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요. 그리고 또한 헌법에는 검사의 사무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검찰청이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수청뿐만 아니라 검찰청법 폐지 법안과 기소청 설치 법안에 대해서는 법사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저희가 기관 설립을 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안에 법안을 심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정부조직법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충분히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야 순으로 계속 넘어가고 있습니다.

최혁진 위원님.

○**최혁진 위원** 행안부장관님, 행안부가 어쨌든 공무원 인사조직을 총괄하고 계신데요. 지금 정부조직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내란·계엄에 동조한 것으로 추측이 되는 고위공직자들이 몰래 해외로 도피하거나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9월 10일에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무부장관께도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특검 수사를 위해서 ADB에 파견돼 있는 김동일 전 예산실장 즉각 송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최근에 신중범 전 경제금융비서관 싱가포르 AMRO 파견을 중단시켜 달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것은 기재부 쪽으로부터 제보를 받은 내용입니다.

신중범 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 말에 경제비서관을 했지요. 최상목의 최측근으로 지목되는 인사인데 오는 9월 27일부터 싱가포르 AMRO 행정 담당 부국장으로 임기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연봉이 무려 한 30만 달러 이상이 됩니다.

문제는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AMRO는 통상 기재부 과장급이 파견 나가던 자리인데요. 신중범은 국장, 실장급 고위직을 역임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기재부 과장급이 나가는, 국제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이 나가는 자리를 갑자기 나간다라고 하는 것도 이상하고요. 또 이번에 정부조직 개편을 명분으로 1급들 일괄 사퇴를 했는데 신중범을 끼워서 사퇴를 해서 서둘러 퇴직을 시켰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수사를 피해서 공무원연금 챙겨 주도록 길을 열어 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기재부 고위 인사 라인이 직접 개입했다는 제보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기재부 인사 라인이 아직도 윤석열 정부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최상목도 뒤에서 이 작업들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수사를 받고 증언을 하게 되면 본인의 국정농단 개입이나 내란 개입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이 드러날 우려가 있다 보니까……

ADB도 제가 왜 송환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 드리냐면 역대로 기재부가 ADB 파견자는 국제업무 담당하는 실장, 1급, 차관보가 가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례를 깨고 예

산실장 김동일을 보냈습니다. 더구나 ADB 전임자가 류상민인데 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임기도 끝나지 않은 사람들을 굳이 본국에 귀국을 시키고 김동일을 보냈습니다. 굉장히 이상한데요. 그 시점이 최상목이 직무대행을 맡던 시기에 이런 식의 일 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엄 예산 또 내란 관련 예산들에 대한 것들을 만지던 주체들인데 이 사람들을 긴급히 해외로 빼돌렸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재부에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의 제기를 하니 임기가 있기 때문에 못 데려온다고 그랬는데 류상민은 어떻게 임기가 남아 있는데 데려왔는지, 그리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기재부장관의 인사조치로 인해서 얼마든지 본국 송환이 가능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오늘 교육부도 우크라이나의 장학금 문제 같은 그런 국정농단에 개입한 뉴스 보도도 나왔는데요. 이번에 정부조직 개편을 활용해서, 고위직 인사 조치를 몰래 활용해서 본인들의 공무원연금을 지키고자 또는 본인들의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해외로 도피하거나 이런 사례들을 반드시 좀 막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자꾸 관심을 갖냐면 최상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상목은 박근혜 정권 때 국정농단의 중심에 있었던 아주 핵심인데 최상목 같은 경우에 당시에 국정농단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때 몰래 해외로 도피한 바가 있습니다. 필리핀에 있는 모 대학에 가서 겸임교수를 하면서 숨어 있다가 정국이 잠잠해지니까 또 몰래 귀국을 해 가지고 윤석열 정권 창출에 상당히 기여를 했고 그 이후로도 전혀 성찰이 없이 국정농단과 비상계엄의 핵심 인물이 됐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큰 문란이 생기거나 불법적 행위가 밝혀질 것 같으면 해외로 숨어 있거나 잠시 몸을 낫추고 있다가 다시 또 불법적인 세력과 정치적으로 결탁해서 자신들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행안부에서도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이런 부분까지 철저하게 보시고 이런 의심이 되는 자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 해당 부처에서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고 특검을 통해서 철저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해당 부처에 제대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경원 위원님.

○나경원 위원 먼저 이 정부조직법, 새 정부 출범에 저희가 협조할 것은 협조해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출속이다. 일단 숙려기간이 되지 않은 법안을 이렇게 올려서 급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새 정부 출범의 근간을 마련하는 것인데 이것은 정말 출속 중의 출속이라는 지적을 드리고요.

우리 법사위가 언제부터인가 2소위에는 회부를 안 합니다. 우리가 관행적으로 1소위 위원장은 여당 간사이인 김용민 위원님 그리고 2소위 위원장은 야당 간사가 맡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2소위를 완전히 형해화하고 2소위에 어떤 법안도 회부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 정부조직법이야말로 2소위로 회부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행안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안부장관께서 아까 이런 말씀 하셨어요. ‘검찰총장이 공소를 제기하기 때문에 중요해서 있지 헌법에 명시되었지만 헌법상 기구는 아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검찰청이 헌법상 기구는 아니다 이런……

○나경원 위원 헌법상 기구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나경원 위원 그러면 공소청을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을 대체하는 겁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제출된 일부 법에는……

○나경원 위원 그러니까 헌법 90조 16호에는 검찰총장이 명시돼 있잖아요. 지금 말씀들은 법률로 헌법을 바꾸겠다는 말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나경원 위원 아니, 그러면 헌법에 있는 검찰총장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공소청장은 국무회의 심의를 안 거쳐도 됩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공소청장은 헌법정신에 따르면 국무회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헌법정신에……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으로 검찰총장이 있는 거예요. 검찰총장 임명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논리라면 법률로 헌법을 바꾸는 거 아닙니까?

헌법에는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서 국무회의 심의를 받으라고 그랬는데 공소청장으로 정해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본다’ 이렇게 해서 바꾸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위현이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렇게 본다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나경원 위원 아니, 그게 민주당의 논리였고 그동안 그렇게 지적들을 했습니다. 안 그러면 이거 헌법 위반입니다. 공소청장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도 위반, 검찰총장이 날아가는 것도 헌법상 기구가 아니기……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헌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헌법정신을 존중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경원 위원 제가 질의하는 거니까 조금 이따 답변을 하세요, 답변 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래서 저희는 위현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헌법상 기구인 검찰총장을, 검찰청을 이렇게 법으로 바꾼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검찰청은 헌법기관이 아닙니다.

○나경원 위원 제가 질의할 때 답변하세요.

그다음 두 번째는요, 공수처는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수사·기소권 완전히 분리하자는 거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것은 별도의 법률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지금 논의되고 있는 사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나경원 위원 그러니까 민주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하명수사처인 공수처는 수사·기소

권 다 가져서 막강한 권한 가져도 되고 그리고 검찰청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공수처는 대통령으로부터도 독립되어 있는 독립 수사기관입니다. 어느 누구의 하명도 받지 않습니다.

○**나경원 위원** 제가 답변 기회 드릴 테니까 나중에 답변 좀 하세요.

공수처는 사실상 하명수사처라는 것이, 지금 연임 규정도 폐지해서 독립된 기관이라기 보다는 미니 검찰청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이 수사 완전히 종결했을 때 이의 누구한테 할 수 있습니까? 경찰 수사가 잘못됐다, 우리 국민들은 어디 가서 피해 호소하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경원 위원** 아니, 민원 제기로 됩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이의 제기 절차도……

○**나경원 위원** 예전에는 경찰수사가 잘못됐으면 검찰에 가서 구제받을 수도 있겠고 경찰이 수사 잘못 종결한 거 검찰이 이것을 풀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에 대한 이의 제기를……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경찰수사에 대한 말씀입니까, 아니면 중수청의 수사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나경원 위원** 경찰수사에 대해서, 지금 경찰에게 수사권을 완전히 맡기는데……

○**박은정 위원** 형소법에 다 되어 있어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것은 형사소송법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박은정 위원** 다 이의신청하도록 되어 있어요.

○**나경원 위원** 어떻게 하나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이의신청하고요.

○**곽규택 위원** 답변을 왜 박은정 위원님이 하고 있어요?

○**나경원 위원** 답변을 왜……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아닙니다. 제가 아까서부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민원,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나경원 위원** 민원, 이의신청에 심사를 누가 하지요? 위원회 구성하지요? 위원회 구성하고 있지요? 그 위원회는 비전문가 들어가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은 모두 다 그것을 검찰 수사가능하도록 한 바도 있습니다.

○**나경원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 이렇게 졸속으로 폐지해서는 국민들에게만 피해가 온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그 밖에 분명히……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국민의 피해는 바로 잘못된 제도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경원 위원** 장관, 답변하는 태도가 그게 뭡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아니, 왜 태도를 말씀하세요.

○**나경원 위원** 아니, 제가 말하면 끼어들어서 제 말이 안 들리게 하는 게 그게 장관의

태도입니까? 저의 질의시간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아니, 질문이 잘못된 개념에……

○**나경원 위원** 질의시간인데 그렇게 하라고 배우셨습니까?

○**위원장 추미애** 나경원 위원님 질의시간이 끝났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밖에 금융위 조직 개편 문제도 옥상옥의 기구 그리고 예산을 무작정 확장할 수 있는 확장 재정이 될 수 있는 부분, 특히 기후에너지환경부 설치는 사실은 기후에너지부하고 환경부하고 같이 붙임으로써 저는 탈원전 시즌2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AI 100조 넣으면 뭐 합니까? 값싸고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 안 됩니다. 이 부분 재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추미애**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위원** 1분 더 주세요. 자꾸 끼어들고 장관이 이렇게 하면 질의를 어떻게 합니까? 장관이 되셨으면 그래도 위원의 질의권을 존중해야지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곽규택 위원** 장관님이 피식피식 웃어도 됩니까?

○**위원장 추미애** 제가 볼 때는 나경원 위원님께서……

○**곽규택 위원** 피식피식 웃어도 됩니까?

○**위원장 추미애** 곽규택 위원님.

○**곽규택 위원** 왜요?

○**나경원 위원** 위원장님, 자꾸 재단하지 마세요.

○**최혁진 위원** 왜요?

○**위원장 추미애** 나경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에 장관은 그 해당 질의에 대한 답변을 즉각즉각 하느라고 애쓰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경원 위원**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답변하실 기회를 드리려고 하는데 자꾸 끼어드셨잖아요. 위원장님이 그런 것까지 말씀하시지 마세요.

○**위원장 추미애** 그것은 끼어든 것이 아니지요. 국무위원에 대해서 신속하게 답변을 드리는 것을 끼어든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나경원 위원** 위원장님, 적당히 하세요.

○**위원장 추미애** 나 위원도 시비를 위한 질문보다는……

○**나경원 위원** 위원장님, 적당히 하세요.

(「위원장님, 그냥 진행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추미애** 그러게요. 적당히 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위원** 적당히 하세요.

.....

○**위원장 추미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있어요」 하는 위원 있음)

○**주진우 위원** 위원장님, 저 좀 봐 주세요. 저 몇 번째 하는데 지금 계속……

○**위원장 추미애** 이성윤 위원님.

○**곽규택 위원** 지금 저 핸드폰 들고 있는 직원이 누구입니까? 김성용 비서관입니까?

○**이성윤 위원** 전주시을……

○**신동욱 위원** 이성윤 위원님, 잠깐만 중단 좀 해 주시지요.

- 이성윤 위원** 위원장님도 아닌데 왜 중단합니까?
- 박은정 위원** 위원장도 아닌데 왜 중단시켜요?
- 신동욱 위원** 아니요, 심각한 문제잖아요.
- 이성윤 위원** 아니, 위원장님도 아닌데 왜 중단시켜요?
- 전현희 위원** 저기도 찍고 있잖아요.
- 곽규택 위원** 무슨 중단을 시켜요?
- 위원장 추미애** 아니, 그냥 하세요. 진행하세요.
- 이성윤 위원** 존경하는 장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검찰을 분리해서 수사는 중수청이 그리고 기소는 공소청이 하는 것, 장관님도 적극 찬성하시지요?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이성윤 위원** 수사·기소 분리는 광복 후에 최초로 형사소송법이 설계될 때 논의된 내용입니다.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한시적으로 수사권을 줬습니다.

○**이성윤 위원** 다만 그 당시에 친일 경찰들이 하도 기세등등하니까 검찰에 직접수사권을 줘서 좀 막아 보자, 검찰로 하여금 경찰을 좀 견제해 보자 이런 취지로 직접수사권을 준 겁니다.

그런데 검찰은 자기들의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헌법상 영장교부권을 확보했고 그들은 군사정권과 유신정권에 협력하면서 끊임없이 우리 국민들을 괴롭혀 왔습니다. 1990년대 들어서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활용해서, 심지어 도로교통법 음주단속까지 검찰이 했습니다. 아시지요? 이렇게 직접수사권을 확대하면서 스스로 권력이 됐고 드디어 윤석열 정권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왜 갑자기 12·3 내란을 일으켰는지 아십니까? 윤석열이 헌법을 보니까 그런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런 비상 권한을 써도 뒤에 검찰이 있기 때문에 수사를 안 하리라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안이 나온 거고요, 또 국민들이 그렇게 원하는 겁니다.

장관님, 혹시 윤석열이 수감 중에 어떤 대화를 하셨는지 아십니까? 최근에 윤석열이 9월 19일 날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79일 동안 피의자 신문에 한 번도 안 나오던 사람이 갑자기 신문에 나오겠다는 겁니다.

윤석열이 건강합니까, 아픕니까?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건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윤석열이요 수감 중에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1월 24일 날에는 수행실장과 대화 중에 ‘강아지들은 잘 있나, 애들 위축 안 됐지’ 이런 말을 했고 ‘예, 대통령님이 쉬시던 소파에 올라가 있고’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2월 10일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면회 와서 대화 중에 뭐라고 했느냐면 ‘나야 술도 못 먹고 과식도 안 하니 건강은 좋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또 2월 13일 날 강의구 실장과 대화 중에 ‘술을 안 먹으니까, 수형된 지 한 달 정도 되었으니까 건강도 좋아지고’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또 2월 21일 강의구 전 부속실장하고 휴대폰 반입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강의구 전 대통령실 간부가 구치소장의 허가 없이 휴대전화를 반입했지요. 윤석열이 뭐라고 그랬느냐

면 ‘관저에서 나간 강아지들 잘 지내냐’ 이런 것을 물었어요. 그때 불법 반입된 휴대전화로 반려견 사진을 보셨다고 그래요.

또 8월 2일 날 김건희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거부하면서 ‘변호사 접견이 예정돼 있고 당신들하고 할 얘기 없다’. 또 속옷 차림으로 ‘내 몸에 손대지 마라. 돌아가라. 당신들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 변호사를 만나서 얘기해라’ 이렇게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일련의 윤석열의 오만방자한 태도는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제가 그 심리 속을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만 아직도 내란이 끝나지 않았고 종국에는 내란이 성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성윤 위원** 맞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내란이 안 끝났고요. 그 뒤에는 검찰과 사법부가 있다고 믿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 특히 검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중수청으로 만드는 것, 공소청으로 만드는 것, 국민들 대다수가 찬성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국민들이 염려하는 바도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이성윤 위원** 많은 위원들이 지적했지만 이번에 행안부장관님께서 참 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70년간의 일제 식민 잔재로 남아 있는 형사사법체제를 바꿔서 이제 검찰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고 또 국민들이 자신이 짓지 않은 행위로 처벌받거나 또는 자기가 지은 죄 이상으로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꼭 제도를 잘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전현희 위원** 토론 종결해 주십시오.

○**위원장 추미애** 다음은 주진우 위원님.

○**주진우 위원** 원래 국가시스템을 만들면 방안을 다 구체적으로 내놓고 나서 법을 개정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 줄짜리 법을 개정한 다음에 제도를 1년 내에 다듬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하고요. 결과적으로 중수청 설치 관련된 법안을 논의하다가 뭔가 문제점이 생기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게 국민 세금이 엄청나게, 연간 수천억 원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헌법을 하고 나서 이번에 이 개편안이 헌정사상 가장 크게 많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제도에 대해서 굉장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수사기관이 너무 많이 늘어나요. 중수청 국가수사위원회가 일단 신설되는데 국가수사위원회는 또 안에 위원회들이 많아서……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아니요, 국가수사위원회는 신설되지 않습니다.

○**주진우 위원** 그러니까 수사위원회 안도 지금 구체적으로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전제조건으로 국가수사위원회 안까지 만들어진 것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것은 정부의 공식 의견이 아닙니다.

○주진우 위원 그러면 국가수사위원회는 안 만들 겁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주진우 위원 그것조차도 안 정해진 겁니까? 안 만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안 만들기로 결정된 것입니다.

○주진우 위원 그러면 중수청만 만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주진우 위원 그러면 중수청 그것만 하더라도…… 중수청 외에도 공수처, 경찰, 국가 수사본부 이런 것들이 다, 수사기관이 난립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는 기왕에 있는 조직입니다.

○주진우 위원 실제로…… 아니, 기왕에 있는 조직이지만 굳이 기왕에 있는 조직들에, 공수처도 오늘 법안 낸 것 보면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넓히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수사기관의 범위가 이렇게 중첩이 되고 여러 수사기관들이 만들어지면 반드시 권한 다툼이 생깁니다. 치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유지되는 데 있어서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안과 규모 이런 것들이 꼼꼼하게 설계가 된 다음에 그 이후에서나 사실은 법안을 통과해야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결론부터 내놓고 법안을 만들겠다라고 하니까 문제인 거고요. 두 번째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지금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 이렇게 지적은 해 주시고 계신데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른 반론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내란이 지속되어 온 과정에서 국가를 정상화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느끼실 훨씬 더 큰 혼란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진우 위원 아니, 그러면 그 특정 사건을 위해 가지고 빨리하자는 얘기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특정 사건이 아니라 국가 자체가 망할 뻔한 것 아닙니까.

○주진우 위원 국가 수사 시스템은요, 바꾸게 되면 민생과 직결되는 범죄들이 다 관여되는 거예요. 모든 국민들이 제도를 새로 익히고 새로 이용해야 되고요. 지금……

말씀 듣고 얘기하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말씀하십시오.

○주진우 위원 경찰하고 중수청, 처음에 공수처 만들어지고 경찰이랑 검찰의 수사권 조정이 있었을 때도 그때 민주당이 주장했던 것들이 전부 다 더 빨라지고 더 효율적으로 될 것이라고 했지만 국민들이 수사기관의 구제가 늦어졌다고 다 생각하고 있어요. 실제 사건 통계가 보여 주고 있습니다. 엄청 늦어졌어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사건 통계가, 늦어진 것은……

○주진우 위원 그런데 그 제도가 안착되기도 전에 이것을 다시 만들어서 또 새로운 제도에 국민들 보고 적응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법률비용은 100% 늘어나게 되고요. 또 제도가 복잡해지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용하기 어려워져요. 그래서 1년이나 되는 유예기간을 만들었는데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얼마나 복잡하면 미리 방안을 만들어서 내놓으면 될 일을 아직 1년이나 유예기간을 주고 방안조차 못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수사위원회, 안 만들더라도 중수청은 예산이 얼마나 될지 지금 대충이라도 추계가 나와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산이나 조직 또는 청사 이런 부분은.....

○**주진우 위원** 대략의 규모는, 국민 돈을 쓰는데 그 정도는 나와 있어야지요. 어떻게 제도를 바꾸는데 예산에 대한 사전적인 검토 없이 그냥 막 만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검찰이.....

○**주진우 위원** 식당으로 보면..... 아니, 본인 돈이면 그렇게 얘기 못 하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현재 검찰청이 사용하고 있는 예산이나.....

○**주진우 위원** 국민의 예산이잖아요, 개인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식당으로 따지면 메뉴, 레시피, 입지 이런 것 하나도 결정되지 않았는데 식당부터 오픈하는 꼴이에요. 그걸 문제 삼는 겁니다. 지금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그러면 적어도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지요. 그런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님들 나오시는 분들마다 설명 다 다르고 구체적인 절차는 이제 와서 만들겠다라고 하면, 그게 잘못 만들어지고 잘못 승계되면 거기에 대한 피해는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이게 예산이 연간 수천억 원이면 계속, 한 해 한 해..... 일회성 예산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1년 내에 다 설계하고 그 부작용을 다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 설계는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이 아닙니다.

○**주진우 위원** 그러면 미리 하셔야지요. 이게 오래 걸릴 일이 아닌데 왜 안 하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아니, 지금 정부가 준비기간 없이 이제 100일 지났습니다. 이제 100일 지났는데 그 안에 다 만들어 내지 않으면 이 모든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정부 조직법 개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진우 위원** 아니, 만들고 법안을 내면 되잖아요. 이것은 포함 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들고 법안 내면 되는 거지요.

○**장경태 위원** 장관님, 저희가 12월 3일 날 예산안 통과시켜 드리겠습니다.

○**최혁진 위원** 토론 종결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신동욱 위원** 토론 있습니다.

○**전현희 위원** 토론 종결.....

○**신동욱 위원** 아니, 그렇게 좋은 것을 하는데 뭘 자꾸 토론을 종결하려고 그래요. 좋은 얘기 계속해야지. 이상하잖아, 뭐 꿀리는 것 있습니까? 자꾸 종결하자고..... 토론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꿀리는 것은 그쪽이 있지.

○**신동욱 위원** 아니, 왜 토론을 못 하게 해요, 그러면?

○**위원장 추미애** 지금 행안부장관님 답변에 덧붙여서 제가 부칙 조항을 보니까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부칙 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에 만약에 1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는데 공소청과 중수청에 대해서 법무부와 행안부에 각각 설치하고 검찰청을 폐지하는 법률을 1년 안에 하지 않는다면 이게 무의로 돌아가게 돼 있는 거네

요. 그래서 주진우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은 우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당연히 의무 규정으로 했네요.

○**주진우 위원** 국가수사위원회는 확실히 안 만드는 거예요?

○**장경태 위원** 예, 안 만듭니다.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신동욱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 발언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본안 질문 전에 짧게 한마디만 양해 부탁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법사위원회 때 그쪽 여당 위원석에서 저희 당 위원을 향해서 카메라를 얼굴에 대놓고 찍는 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고 그 당시에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강하게 일단 내려놔라고 얘기했는데 저쪽 비서진에서 끝까지 말을 듣지 않고 카메라를 찍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 비서진들이, 보좌진들이 찍으니까 역시 민주당도 기분 안 좋으셨잖아요. 발끈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적어도 우리가 보좌진들까지, 우리 여야 위원들끼리 싸우는 것은 좋지만 보좌진들까지 큰소리를 듣게 만들고 하는 것은 저는 국회의원들의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서영교 위원님 얼마나 못났으면 나가서 저희 비서 이름까지 기자들한테 큰소리로 ‘XXX가 누구였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적절치 않고요, 앞으로도…… 그 논쟁이 있었는데, 조금 전에 저쪽 분이 또 찍으셨는데 이것은 좀 주의시켜 주십시오. 이것 찍어서 뭐 합니까? 다 공개되어 있는 회의고 개인적으로 모욕을 주기 위해서 찍는 것이라든지 또는 ‘내가 너 찍으니까 발언 조심해’라는 이런 느낌을 주는 것인지 않습니까? 그것 좀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그런데 아까 김용민 위원님이 그만하자 그러시는데, 먼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저희가 이 정도로 문제 제기를 하면, 정말 고생하는 우리 비서진들 상대방 위원들에게 큰소리 듣게 하는 그런 것은 좀 하지 맙시다. 그 제안 드리고요.

윤호중 장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적인 면에서 너무 많은 토론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은 더 이상 안 하겠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걱정인 것은 장관님 가서 고생하는데, 저는 장관님도 좀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단 큰 설계도, 일종의 집을 짓는다고 치면 설계도는 그려서 던졌는데 지금 장관님 답변하시는 것 보면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말하자면 집의 자재는 어디서 가져올 것인지, 이 자재는 공급이 가능한 것인지, 그러면 집을 지을 동안에 우리 식구들이 어디 이사 갈 집은 있는 것인지, 길바닥에 나서서 이 추운 겨울을 나야 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이 제가 보기엔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신동욱 위원** 그러니까 걱정을 안 할 수 있게…… 어쨌든 아까 존경하는 꽈규택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정부조직을 개편하면 같이 동시에 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검찰청을 없애면 그러면 중수청법은, 기본 중의 기본은 우리가 이사 갈 때는 이사 갈 집을 먼저 마련해 놓고 이사를,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것이지 나갈 데도 없는데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걱정을 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많은 국민들이 하시고……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국민들뿐만 아니라 그 기관의, 지금 일하고 계시는 분들의 걱정일 수 있습니다만……

○**신동욱 위원** 그렇지요. 지금 제가 듣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전혀 신분에 문제가 생길 일이 없고요. 그러니까 공익을 위해서 하시던 일을 계속하실 수 있고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는 모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신동욱 위원** 아니요, 원칙적인 말씀은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실 텐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검사가 한 이천사오백 명쯤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그리고 검사의 신분이 변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데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단순한 개인의 거취 문제를 떠나서 대한민국 검찰청이 가져왔던 어떤 수사력의 비중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다 그만두겠다고 그리고 검사를 그만뒀을 때 그러면 우리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지켜서 해 왔던 그 검찰력이라는 것이 그렇게 쑥 비었을 때 그러면 도대체 그 공백이 몇 년 만에 채워질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같이 법률도 모르고 검찰도 모르는 사람도 이런 걱정을 하는데 검찰에서 정말 두각을 나타내서 고위 검사까지 지낸 민주당 위원님들이 검찰 당장 없애도 아무 문제 없다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 같은 사람은 정말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검찰의 공소 기능은 남아 있고요.

○**신동욱 위원** 공소 기능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다음에 그걸 담당할 검사는 당연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동욱 위원** 아니, 공소 기능은 당연히 하는데……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 같은 사람도 검찰에 대한 일종의 적의가 있습니다. 검찰이 잘못한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저 개인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인권 보호 그리고 재산권 보호하기 위해서 그동안 일을 해 왔는데 저 같은 사람이 하는 걱정보다 어떻게 더 검찰에서 평생을 봉직해 오신 분들의 걱정이 저렇게 심플하고 단순할 수 있을까 그 걱정을 합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저희도 현재 검찰청에서 일하고 계신 여러 검사들 또 검찰수사관들의 여론과 의견을 잘 듣고 있고요. 오히려 수사 기능을 하지 않는, 수사권을 내려놓은 순수한 기소기관으로서 또 공소유지 기능을 하는 검사로서의 업무를 훨씬 더 보람있게 일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진 분들도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무부 소관이라 제가 대변할 내용은 아니겠습니다만 검찰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공직자들의 소양 또 양식을 믿어 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추미애**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 신동욱 위원 정말 못났어요. 어떻게 마이크에다 대고 그런 얘기를 해요? 말을 조심하세요. 아시겠어요?

○**신동욱 위원** 밖에 가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맞지요?

○서영교 위원 내가 뭘 밖에 나가…… 그거 허위사실인데? 내가 뭘 밖에 나가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어딜 밖에 나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신동욱 위원 비서관 이름을 계속 언급하신 것 맞지요?

○서영교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뭐예요? 여기에서 누가 받았는지 내가 보여줄게요.

○신동욱 위원 우리 비서관 이름을 계속 언급한 것 맞지요?

○서영교 위원 신동욱 위원 박민지 비서관. 그리고 신동욱 위원 또 어디 있어. 이게 모든 보좌진에게 갔다는 거예요.

○신동욱 위원 그런데 박민지가 누구냐고 계속 큰소리로 말씀하신 건 왜 하신 거예요. 알면서?

○서영교 위원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일정 받은 사람.

○신동욱 위원 신동욱 위원 박민지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 비서가 맞는데 왜 그 사람을 자꾸 찾아요.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위원들끼리 토론을 시키시면 어떻게 합니까?

○서영교 위원 그런데 아까 안 받았더라고요, 일정을.

○신동욱 위원 일정을 왜 안 받아요.

○서영교 위원 아니, 아까 일정을 안 받았다고 신동욱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곽규택 위원 신상발언을 하시든지.

○나경원 위원 계획안을 안 받았다고 그랬어요, 계획안.

○신동욱 위원 '(안)'을 안 받았다고요.

○서영교 위원 내가 나가서 전부 다 가지고 왔고, 일정을 모두 다 보냈잖아요.

○조배숙 위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나경원 위원 이게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서영교 위원, 적당히 하세요.

○서영교 위원 그래서 일정을 보냈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름 곽규택 위원, 조배숙 위원……

다 받은 거 아니에요. 공용메일로 다 보낸 거 아니에요, 공용메일로.

○신동욱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를 안 받았다고요, 이거를.

○곽규택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한 장짜리 일정만 보낸 거예요. 계획서는 하나도 안 보냈잖아요.

○서영교 위원 이거 보냈다고 했는데 안 받았다고 한 거 아니에요.

○신동욱 위원 이거예요, 이거.

○곽규택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일정표 한 장짜리 보낸 거 아니에요, 그게.

○서영교 위원 이보세요, 행정실에서 다 보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가서 보냈냐고 확인할 때 그거였잖아요.

○곽규택 위원 뭐 보냈는지 말씀도 안 하셨잖아요!

○조배숙 위원 뭘 보냈느냐가 중요하지요.

○서영교 위원 계획서는 나경원 위원에게 보냈다고 얘기했잖아요, 계획서는.

- 나경원 위원 계획서 받은 적 없어요!
- 곽규택 위원 언제 그랬어요?
- 신동욱 위원 발언하세요, 저한테 물어보지 말고.
- 서영교 위원 나경원 의원실, 계획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 곽규택 위원 안 받았어요!
- 나경원 위원 어디다 대고 이걸 받았냐 안 받았냐 확인합니까? 지금 이거 토론하는 시간인가요?
- 서영교 위원 나경원 의원실, 계획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 계획서는 나경원 의원실에게 보냈고 이 일정은 모두 다에게 보낸 거예요.
자, 정리!
- 나경원 위원 서영교 위원님, 마이크에 대고 예의 좀 갖추고 얘기해요.
- 서영교 위원 그런데 엉뚱한 말을 하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과해야 될 일을 마이크에다 대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 곽규택 위원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 나경원 위원 위원장님, 경고 좀 해 주세요.
- 서영교 위원 자, 정리하면 나경원 위원은 계획안을 받았어요.
- 나경원 위원 어디 받았다는 겁니까, 지금!
- 곽규택 위원 일정표를 보냈어요, 일정표!
- 서영교 위원 받았으면 어떡하실래요? 계획안 받았으면 어떡하실래요?
- 나경원 위원 그러면 간사로 인정해 주는 겁니까?
- 서영교 위원 계획안 갔으면 어떡하실래요?
- 나경원 위원 아니, 그러면 간사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말 바꾸지 말고 계획안 갔으면 어떡하실래요?
- 나경원 위원 아니, 그러면 간사로 인정해……
왜 지금 이게 토론의 주제가 되지요?
- 이성윤 위원 간사가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 나경원 위원 먼저 저 서영교 위원의 허위 조작에 대한 청문회 보고서나 채택합시다.
- 서영교 위원 계획안 갔으면 어떡하실래요?
- 계획안은 나경원 위원한테 갔고 이 일정은 모든 위원에게 공용으로 다 갔어요. 그런데 신동욱 의원실에서 행정관들에게, 행정실 직원들에게 가서 따지니까 내가 이야기한 거예요.
- 곽규택 위원 이게 지금 토론입니까?
- 나경원 위원 간사로 인정합니까, 그러면?
- 조배숙 위원 뭐 하자는 거지요? 두 분이서 할 얘기를 왜 여기서 해요.
-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이 보니까 서영교 위원님 엄청 좋아하시는구먼.
- 서영교 위원 신동욱 위원과 국민의힘은 아무리 해도 이번에 졌어요. 완패!
- 신동욱 위원 그걸 서영교 위원이 왜 따져요?
- 곽규택 위원 위원장 났네, 위원장 났어.
- 신동욱 위원 질의하세요, 빨리.

○서영교 위원 그다음.

○나경원 위원 정말 유치하다. 간사나 뽑고서 제대로 하지. 유치하게 하지 맙시다, 진짜!

○서영교 위원 유치한 나경원 위원, 조용히 해요.

○나경원 위원 누구한테 함부로 말하십니까!

서영교 위원, 마이크에 대고 그렇게 얘기하셔 가지고 내가 화내는 모습 보여주고 싶으세요?

○서영교 위원 유치한 나경원 위원, 조용히 해요.

행안부장관님, 제가 묻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언제지?

관봉권 돈다발이 있었습니다. 건진 집에서 관봉권 돈다발이 있었습니다. 비닐에 다 쌍져 있었습니다. 그 관봉권 돈다발은 22년 5월 13일 발행이라고 스티커가 있었습니다. 이 스티커도 관봉권 떠지도 그리고 그 비닐도 다 폐기해 버렸습니다, 검사들이 검찰에서.

그런데 그 스티커와 떠지는, 스티커는 제보로 들어왔습니다. 떠지는 어느 은행 건지 확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관봉권 돈다발은 비닐에 쌍여져 있었습니다.

그 돈다발 같은 거 혹시 본 적 있으십니까, 실물로? 없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관봉권 돈다발 말씀하십니까?

○서영교 위원 예.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저 본 적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런 돈다발을 본 적 있는 사람들은 손에 꼽습니다. 그러면 건진 집에서, 은신처에서 돈다발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돈다발에는 지문들이 묻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문들이 묻어 있어서 이게 윤석열에서 왔는지 아니면 김건희에게서 왔는지 아니면 어디에서 왔는지, 이 건진은 누구에게 받았는지가 확인됩니다.

그런데 검사들이 그걸 뜯어서 버려버렸어요. 이거는 누군가 고위직이 관여되어 있을까봐 이것을 은폐하고 조작한 겁니다. 검사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검사가 가장 훌륭한 줄 알았어요. 잘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은폐해 놓고 그게 있으면 추적할 수 있다는 걸 몰랐다는 식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검찰 조직은 수사에서 손을 빼고 기소만 하고 그리고 중수청을 통해서 수사를 최선을 다해서 잘하자 이런 취지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부조직법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맞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런 취지의 정부조직법인데 그렇게 했던 검사들을 수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수청이 가고 국수본이 행안부 산하의 검찰 조직으로 있으니 국수본에서 수사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검사에 대한 수사권은 공수처가 가지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검사에 대한 수사권은 공수처가 갖고 있는데 그것은 고위직이 잘못할 때고요 검사가 잘못한 것들은 경찰이 수사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검사의 위법사실이 발견된 순간 공수처로 이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공수처에서 이것을 수사해야 되겠군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래야 될 일이라고……

○**서영교 위원** 중수청과 국수본 모두 다가 이런 것을 수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수본·경찰·공수처, 지금 현재도 검사가 수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현희 위원** 수사관 할 수 있어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수사관에 대해서는 국수본이 수사할 수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면 다 수사할 수 있는 범위네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서영교 위원** 꼭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 줄 수 있게 행안부장관으로서 임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대체로 위원님들이 다 토론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곽규택 위원** 아니, 지금 4항, 5항만 설명 들은 거 아닙니까? 토론하는 거 아닙니까?

○**김용민 위원** 맞아요, 행안위법이니까.

○**위원장 추미애** 그렇습니다. 4항, 5항입니다.

○**곽규택 위원** 다른 거 다 한 다음에 전체를 다 표결하는 거 아니에요?

○**김용민 위원** 타위법들은 다 끊어서 가잖아요.

○**곽규택 위원** 한 항씩 한다고?

○**김용민 위원** 아니, 상임위별로 끊어서 가자고.

○**위원장 추미애** 4항, 5항입니다.

○**조배숙 위원** 지방재정법에 대해서는……

○**나경원 위원** 의사일정 몇 항이에요?

위원장님, 진행 좀 잘하세요.

○**김기표 위원** 아니, 아까 4항, 5항이라고 분명히……

○**나경원 위원** 5항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이미 다 끝났습니다.

○**나경원 위원** 뭐가 끝나요. 아까 4항 했잖아요.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배숙 위원님 등으로부터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으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위원 총 15인 중 찬성 11인, 반대 4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위원 총 16인 중 찬성 11인, 반대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산불피해지원 대책특별위원장 제출)

(17시37분)

○위원장 추미애 다음으로 산불피해지원대책 특위 소관의 의사일정 제6항의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병섭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섭 의사일정 제6항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법률안에 대한 수정의견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제시된 것임을 말씀드
립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대
안)은 2025년 3월 21일부터 3월 30일까지 경상북도, 경상남도, 울산광역시에서 발생한 초
대형산불로 인한 피해자와 피해지역에 대해 농업·임업·수산업 피해복구 지원, 관광단지
지정요건 완화,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지원에 관한 사

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안 제32조제1항제5호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관광진흥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관광단지 지정 권한을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위임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있는데, 관광진흥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관광단지 지정 권한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안 제32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고, 안 제46조제1항은 산림투자선도사업 시행자의 지정취소 근거와 그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지정취소는 사업시행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청문을 필요적 절차로 규정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김인호 산림청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호중 장관님, 김인호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7.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17시39분)

○위원장 추미애 다음으로 과방위 소관 의사일정 제7항의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혜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박혜진 의사일정 제7항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현행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여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 심의를 담당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며 소관 업무와 심의 의결 사항 등을 개편하려는 내용입니다.

제정안의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임명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공무원이 아닌 비상임위원에 대한 별칙 적용에 관해 공무원 의제 규정을 추가하며, 위원회 소관 사무에 관한 개편 내용을 고려하여 다른 법률의 개정에 관

한 부칙을 정비하는 등의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출석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대체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신동욱 위원님.

○신동욱 위원 위원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핵심적인 게 이진숙 위원장 한 분을 소위 내쫓기 위해서 정부 조직 기관 자체를 아예 없애 버리는 이런 것 아닙니까? 저는 사실 방통위가 오랫동안 누적된 문제도 없는 것은 아니고 또 미디어환경이 급속히 변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논의하더라도 충분한 시간과 국민적 공감대하에서 논의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위원장님 한 분을 내쫓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관을 없애는 조직개편을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최근에 제가 들은 이야기 중의 하나가, 질문을 받은 것 중의 하나가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가치에 공감하느냐 이런 질문 또 최근에 통과된 방송3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야기를 해서 우선 방송3법과 관련해서는 여야의 충분한 토론과 협의 과정이 없이 민주당·다수당 일방적으로 통과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했고, 그 내용을 보면 사실상 노동권력인 민노총에 방송사가 소속될, 통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마지막으로 질문한 것 중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동의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해서 특히 방송이나 언론은 어느 대통령의 소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의 소유물이 아니었던 것처럼 이재명 정부의 소유물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한다면 이것은 국민주권정부가 아니라 이재명주권정부, 대통령주권정부가 될 것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신동욱 위원 그러면 혹시 이진숙 위원장께서 순순히 물러나셨거나 또는 ‘저는 그래도 새 정부의 집권철학에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정도의 타협을 하셨으면 방통위는 그냥 있었을 수도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다른 케이스에서, 제가 다른 분을 굳이 사례로 들지는 않겠습니다만 만약에 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가치에 동의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면 다른 결과가 있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가정적인 상황이니까 제가 장담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방송·언론은 국민의 것이어야 되고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되지 어떤 특정 정부나 대통령의 가치에 부합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동욱 위원 법사위니까…… 제 질문 중에 조용 좀 하세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세종 관련 학술 토론회에 가서 ‘법이라는 것이 정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저는 언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송3법 통과 과정에서 지금 언론이 언론개혁이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언론의 독립성이 굉장히 퇴보한 법이 결국은 만들어졌는데 지금 새로 만들어지는 방송미디어통신

위원회라는 것은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사실상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직원이 30명 정도 늘어나는 것에 불과합니다. 같은 건물을 쓰고 같은 사무실을 쓰고 직원들도 그대로 승계됩니다. 하나 달라지는 것은 부처에서 정무직 공무원만 직에서 면한다, 이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얼굴에 점 하나 찍고 이건 전혀 다른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어떤 학교에 전학생이 30명 왔는데 그러니까 교장 바꿔라 또 학교 이름도 바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아주 똑같은 기관이고 99% 똑같은 기관이고, 다만 이진숙 하나만 축출되는 것입니다.

○**신동욱 위원** 그러니까 그 부처에 보면 팔호 치고 정무직 공무원만 예외로 한다, 그러니까 인원이고 다 그대로 가고 승계하는데 정무직 공무원만 예외로 한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진숙 위원장만 쫓아내겠다 이런 취지로 지금 받아들이신다는 거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그렇게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동욱 위원**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장경태 위원님.

○**장경태 위원** 정말 이진숙 방통위원장께서 자의식 과잉이 아닌가 싶고요. 윤석열 정권 탄생 이후에 한상혁 방통위원장 쫓아낼 때 혹시 기억은 하십니까? 온갖 수사와 감사원의 감사 그리고 재판까지 가면서 정말 무리하게 쫓아내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잘 운영했으면 모르겠어요. 저도 과방위원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김효재 방통위원 세 달도 정도 했습니다, 직무대행으로. 그러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오더니 또 세 달 정도 하고 도망갔어요. 또 이상인 직무대행이 와서 한 25일 하다가, 방송통신과 관련된 전문성 하나도 없는 김홍일 위원장은 도대체 왜 임명한 겁니까? 하다못해 방송국 수사해 본 적도 없는 검사였어요. 이분은 한 여섯 달 하다가 도망가셨어요. 그리고 이상인 직무대행이 25일 하다가, 또 조성은 직무대행이 한 사오일 하다가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1년여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김효재·이동관·이상인·김홍일, 이 많은 분들 나올 때마다 국힘 과방위원들이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가짜뉴스 때려잡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방송통신 정책과…… 방통위가 할 수 있는 게 언중위법을 관여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보통신망법으로 관여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에 대한 규제의 권한만 있지 가짜뉴스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던 말이에요. 방심위의 권한이었지요.

그리고 OTT나 여러 글로벌 CP사들이 하고 있는 유튜브 등을 비롯한 그런 여러 가지 미디어의 다변화에 대해서 대처를 못 하고 있다는 냉정한 평가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통위가 새롭게 미디어위원회로 통합 운영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은 국민의 힘 과방위원들도 하셨던 얘기예요.

가짜뉴스 때려잡겠다고 하셨던 분들 다 어디 갔습니까? 과방위 간사 하셨던 박성중 의원님 이런 분들, 간사 하셨지요? 그런 분들 지금 국회에 있지도 않으세요. 그래 놓고 지금 이제 와서 갑자기 이진숙 방통위원장 쫓아내기 위한 법이다? 그러면 그전에 국민의 힘 위원님들, 가짜뉴스 때려잡겠다 그리고 새로운 OTT 환경의 글로벌 CP사들과의 경쟁

에서 살아남아야 된다 이런 얘기 하셨던 분들 다 어디 가셨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새롭게 미디어정책을 총괄하는, 또 지금 가짜뉴스라고 제가 표현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불법정보에 대한 유통에 대해서 더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라는 평가들이 많았기 때문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기존에 여야 할 것 없이 국민의힘 과방위원님들도 다 주장하셨던 거기 때문에 저는 이진숙 위원장께서 좀 자중하시고, 본인을 쫓아내기 위해서 국가기관을 설립할 정도로 대한민국이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디 겸손한 태도와 자세 유지하시면서 그렇게 마무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박균택 위원 토론 종결해 주십시오, 더 들을 것 없을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나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토론 종결 건의드립니다.

○나경원 위원 이렇게 하지 말고 토론은 좀 하게 해 줘요. 아차피 마음대로 하는데 우리 토론이나 좀 합시다.

○곽규택 위원 오늘 이게 제일 핵심이잖아요.

○나경원 위원 오늘 이게 핵심인데 그래도 이런 것은 하게 해 주세요.

○위원장 추미애 박균택 위원님 등으로부터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해당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나경원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원장님의 욕 먹는 거예요!

○위원장 추미애 박지원 위원님 등 찬성하는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회법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장내 소란)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5인 중 찬성 11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 종결 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에 대해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위원 총 15인 중 찬성 11인, 반대 4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진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8.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85)

9.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70)

10.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71)

11.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27)

12.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77)

1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14.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1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16.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1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18.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9090)

(17시53분)

○위원장 추미애 다음으로 문체위 소관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8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은정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정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8항까지 11건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법률안에 대한 수정의견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과 협의하여 제시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제9항 김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유산청장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 국유문화유산의 보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관리단체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허가를 받은 관리단체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문화유산의 보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하며, 부칙에 다른 법률의 개정을 통해 자연유산

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도 해당 내용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따른 국유재산에 대한 무상 또는 장기 사용허가는 국유재산특례에 해당하는데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는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도록 하면서 별표의 내용은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도록 하여 국유재산의 특례의 신설을 염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유재산특례를 신설하기 위한 국유재산특례법 별표의 개정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된 국유재산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바 해당 법률안의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심사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제15항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스포츠 유산의 수집·보존·전시와 이의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국립스포츠박물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안 제34조의2에서는 범죄경력조회의 목적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바 범죄경력조회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한 정보로서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조회 및 이용될 필요가 있으므로 범죄경력조회는 체육회 등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범죄경력조회의 요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을 하위법령에 관련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위임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16항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 위원장 및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표준자료번호 부여 신청 주체에서 개인을 삭제하고 출판업체를 추가하며 광역대표도서관을 시도가 직접 운영하도록 명시하려는 내용으로 개정안은 이 법 시행 당시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위원장 및 위원에게도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규정하지 않아 법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칙에 이에 대한 적용례를 추가하고 현재도 개인이 아닌 출판업체가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는 것으로 제도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해당 조항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였습니다.

제17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 비디오물에 대한 광고·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에 대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제한상영가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청소년을 입장시킨 자에 대한 벌칙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이 법에서는 온라인 비디오의 광고·선전물이 제한관람가에 해당하는지 등급을 분류할 권한을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주고 있지 않으므로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해당 광고·선전물이 제한관람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는 표현보다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하는 것으로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11항 및 제13항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제8항, 제12항, 제14항 및 제18항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최희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허민 국가유산청장께서 출석하셨습니

다.

이 안건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경원 위원님.

○**나경원 위원** 문화부장관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부장관은 언론에 관한 정책도 총괄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언론의, 물론.....

아까 PPT 드렸는데 PPT 안 띄워 줍니까? 잠깐만 멈춰 주세요.

지금 대한민국 언론환경이 굉장히 나빠지면서 가짜뉴스가 범람합니다. 가짜뉴스가 횡행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 어디에 가장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가짜뉴스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언론중재법 또는 정통망 관련된 법으로 가짜뉴스임이 인정될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하는 어떤 처벌이나 손해배상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저희도 대응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위원** 신문에 관한 정책을 주로 주관하시지만 지금 저희는 방통위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가는 것은 사실은 위원장을 내쫓기 위한 법률안이라고, 기구를 새로 설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됐든 무엇이 되었든 앞으로 문화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새로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밀접하게 협력하셔서 저는 가짜뉴스를 정말 발본색원해야 된다. 그런데 그 가짜뉴스의 온상이 되는 것이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요새는.

(영상자료를 보면)

유튜브 여기에 이런 경고가 붙어 있다면, 이것 한번 읽어 보십시오. ‘말 그대로 썰 푸는 시간입니다. 즉 믿거나 말거나이지만 실제로 많은 관련자들의 얹히고설킨 풍문, 밝힐 수 없는 취재원과 제보자의 진술을 토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믿거나 말거나’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것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제가 특정 사안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나경원 위원** 아니, 이것 그대로 읽어 보시고 답변 좀 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나경원 위원** 신빙성이 굉장히 고도..... 신빙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지요, ‘믿거나 말거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이것이 아주 굉장히 신빙성이 높은 녹취록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까, 장관께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지금 말씀하신 이 이미지에 있는 글귀만 가지고 제가 그 이후에 나온 모든 내용들은 다 진실이 아닐 거라고 단정하는 것도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나경원 위원** 장관께서는 지금 장관의 답변이 어떤 정치적 영향이 있을까 하고 답변을 못 하시는데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믿거나 말거나’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것이 고도의 신빙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믿기는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국어로 해석을 한다면?

그런데 이것이 지금 대법원장 4인 회동의 근거로 튼 녹취록 앞에 있는 겁니다. 이것을 국회에서 틀고 이것을 갖고 대법원장을 내쫓아라, 탄핵해라, 대법원장 청문회를 하겠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심한 유감을 표시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것을 가만히 보면요 다 본

인들 면책하기 위해서 써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사실은 악의적으로 쓰는 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매우 신빙성이 높은 것처럼 틀어 놓고.

그래서 우리 당에서 이재명 대통령 유죄 뒤집기 위한 조작녹취에 의한 거짓선동 청문회를 오늘 제출하는데요. 저는 사실은 굉장히 고약하게 저런 말 하나 붙여 놓고 유튜브든지 신문기사든지 그냥 유통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체부에서도 좀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라. 왜냐? 대한민국의 명예훼손에 관한 처벌이 굉장히 빠져나갈 구석이 많습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가짜뉴스를 아무리 유포해도.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언론 관계에 대한 책임이 있는 문화부장관이 시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 앞에를 예로 들었지만 저희는 이것을 이유로 해서 긴급청문회 실시계획서도 제출했고 오늘 이따 논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부장관께서 이런 식의 경고, 이런 식의 단서 하나 붙이고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발본색원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위원장 추미애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혁진 위원님.

○최혁진 위원 간단하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경원 위원이 저 견으로 고소돼 있습니다. AI로 조작된 게 아니라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취재원이 있고 제보자가 있는 그런 부분이 방송 중에 분명히 나와 있고 제보자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또 오늘도 자리를 비우셨어요, 주진우 위원. AI로 가짜, 허위로 만들어졌다라고…… 당사자가 지금 AI 가짜, 허위 아니라고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들을 하면서 또다시 물먹이는 발언들을 하시는데요. 저 방송사가 왜 앞에 저런 표현 쓰겠습니까?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에 177건인가 고소를 당했어요. 언론탄압을 얼마나 해 대면 살아남기 위해서 저런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중에 무려 170건이 다 무죄판결이 났고 5건을 굳이 기소했는데 그 5건 중에서도 아마 제가 알기로 두세 건은 별씨 무죄판결 나왔습니다. 김건희 출리 건 정도가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한 건이 더 있네요, 윤석열 성상납사건 관련된 보도. 두 건이 지금 기소 중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0건이 넘는 게 무죄판결이 났어요. 그 정도로 언론을 탄압하니까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유튜브 채널들이 저런 단서조항 달아 놓고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니까 알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문체부장관님, 다시는 저런 언론 탄압하는 세력들이 이런 식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방해하는 그런 정책들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서영교 위원 계엄도 저기가……

○최혁진 위원 저 방송이 상당히 많이 맞혔습니다. 계엄이 곧 터진다, 맞혔습니다. 김건희가 주술과 무속에 빠져 있다, 다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김예성이 김건희의 집사로서 각종 금융농단에 개입돼 있다는 것 다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에 통일교가 배후다,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김충식이 국정농단의 중심에 있다, 하나하나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가짜뉴스예요?

말만 하면 가서 탈탈 털고 고소하고 검찰이 괴롭히고, 심지어 의정부지검에서 어떤 일까지 있었느냐 하면 불기소, 의정부경찰서에서 불송치 난 것을 고등법원이 갖다가 재기수사로 다시 벌금형을 때리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장관님이

마음 단디 먹고 해 주셔야 됩니다.

어디서 와서 지금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떠들면서 무슨 가짜뉴스니 허위니 자기방어를 하고 앉아 있습니까?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나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법사위에서 나가요. 고소당하니까 또 저런 것 PPT 틀어 놓고 자기변명이나 하고 앉아 있고.

부탁드립니다. 장관님, 다시는 저런 일 없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경태 위원 1분만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예, 장경태 위원님.

○장경태 위원 문체부장관님, 국중박은 문체부 산하기관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맞습니다.

○장경태 위원 저도 경주APEC특위 위원도 맡고 있는데요. 다음 달로 다가온 APEC에 대한 홍보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목소리들이 좀 있거든요.

APEC 홍보는 주무 부처는 문체부시지요, 관계부처 합동이긴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문체부와 외교부가 지금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장경태 위원 주로 지금 해외에서 많은 문의 들어오는 K-굿즈 관련된 사업은 어디서 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문체부가 하고 있습니다.

○장경태 위원 국중박에서 주로 하고, 문화재단도 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맞습니다.

○장경태 위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신속한 업무 처리에 대한 건의들이 많이 오고 있거든요.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특별한 대책과 신속한 진행이 요청되는 것 같습니다. 장관께서 다음 달에 있을 경주 APEC이 잘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요청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장경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김기표 위원님.

○김기표 위원 경기도 부천시을 김기표입니다.

손이 달을 가리키는데 손에 대해 말도 안 되는 흄을 잡아서 뭐라고 한다 하더라도 달이 없어지지는 않지요. 조희대 대법원이 선거의 한복판에 끼어들어서 심판을 벌하는 객관적인 그런 위치를 지키지 않고 플레이어로서 작동해서 가장 유력한 정당의 후보를 아예 날려 버리려고 했다는 사실은 없어지지 않고 그것이 혼자 했겠는가 하는 의심이 드는 데 저런 제보도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무슨 국회의원이 수사 다 해서 압수수색영장 받고 해 가지고 얘기를 합니까? 그게 그럴 가능성이 있으면 정치인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중요한 것은 달이 없어지지 않는다. 즉 조희대 대법원이 정치 한복판에 개입한 것이 없어지지 않는다, 이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부디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는 달을 보십시오, 달을.

그리고 제9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체계·자구 수정사항은 없는데 개정안은 국유재산에 대한 특례를 신

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심사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그리고 문체부장관님, '윤석열차'라는 말 들어 봤지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표 위원 지금 PPT에도 나오는데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게 2022년 7월에서 8월 사이에 제23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카툰 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한 것인데요. 그래서 2022년 9월 30일부터 10월 3일 사이에 이게 전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보면 딱 4일 동안 전시를 했거든요. 이게 제26회 부천 국제만화축제에 전시가 된 건데 4일 만에 내려졌어요.

이것도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때 당시 정부에서 압력이 가해져서 중단이 됐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어떤 짓을 벌이냐면 문체부는 2023년부터 만화진흥원 학생공모전에 후원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 버립니다.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다음에 문체부장관상 시상을 금지해 버려요.

저게 예고 학생들이 그린 만화입니다. 그때 당시에 얼마나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고 정치를 잘못하면…… 예고 학생들이 저렇게 비판하는 만화 그릴 수 있지요. 금상 수상을 했고 그것을 전시를 한다고 해서 23년부터는 후원 명칭 사용도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문체부장관상 시상도 금지해 버립니다.

더 가관인 것은 이게 2022년에 있었던 일이어서 2023년 예산은 거기에 반영이 안 돼 있는데, 2023년 예산이 116억 4000만 원이었는데 그다음 해에는 40% 가까운 70.5억이 줄어 가지고 70.5억이 돼요. 그다음에 2025년에는 이제 아예 2023년 대비 76%에 가까운 돈을 삭감해서 28.79억이 됩니다. 이런 보복이 어디 있습니까, 정부가?

장관님,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정부가 해야 될 일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예산편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만 만화 진흥이라는 것은 지금은 저희가 문화·예술 전반에 대해서 진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 예산은……

○김기표 위원 그렇지요. 지금 K-컬처라고 하면 뭡니까? K-팝, K-드라마, K-카툰 이렇게 않습니까? 그 3대 문화를 지금 진흥시켜도 모자랄 판에 저런 식으로 예산을 삭감해 버리고, 지자체에서는 100억씩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정부가 치졸하게 예고 학생이 그린 만화를 가지고 저렇게 보복 조치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도한 내란정부가 물러가고 국민주권정부가 이제 드디어 이 땅에 세워졌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라도 이 예산은 복원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예산 반영하는 과정에서 반영이 잘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장관님께서 이번 예산 과정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꼭 신경을 써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지금 저희 정부는 문화예술에 대해서는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그런 팔길이 원칙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저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축소됐는지 경위도 제가 살펴보고요 내년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잘 청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표 위원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박균택 위원 위원장님, 이제 토론을 좀 종결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 너무 지체되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토론 종결하시지요.

○박지원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추미애 잠깐만요.

법사위가 지금 타위법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토론을 다 거쳐서 넘어온 법안에 대해서는 법사위가 체계·자구 수정을 하는 것 외에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상정된 9항을 보시면, 법사위 전문위원실 검토보고 중에 유념해 주셔야 될 것은 체계·자구 수정사항은 없으나 국유재산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심사 결과를 보고 그 법과 같이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이것은 오늘은 빼고 계속 계류시켜 놓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도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토론 종결 동의를 어느 분이 하시던데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균택 위원님으로부터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국회법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위원 총 15인 중 찬성 11인, 반대 4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 종결 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제12항, 제14항, 제18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11항, 13항, 15항부터 제17항까지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의 법률안은 전체회의에서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휘영 장관님과 허민 청장님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40)
20.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51)
2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94)
2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09)
23.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23)
2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25.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26.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27.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2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2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30.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31.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3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3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3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3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36.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37.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38.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18시20분)

○위원장 추미애 다음으로 환노위 소관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38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은정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은정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38항까지 20건의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법률안에 대한 수정의견은 환경부, 기상청 및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제시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제21항, 조지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가 그 제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추가적인 기술적 조치를 하거나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등에는 유효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안 제10조제2항 단서에서는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바 주체를 환경부장관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고, 유효기간의 연장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연장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효기간 연장의 신청 기준 및 절차 등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근거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기준에 안전기준 확인을 받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인 경우에도 기술적 조치 등을 통해 유효기간 연장을 받을 수 있도록 부칙에 적용례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28항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저공해자동차 등 충전시설 설치·운영자에 대하여 충전시설 설치·이용정보의 등록과 제공 의무 및 관리기준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저공해자동차 등’이라는 약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현행법 제58조제11항에서는 제58조에서만 ‘저공해자동차 등’으로 약칭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 제58조의10 등에서 규정한 ‘저공해자동차 등’이 제58조의 ‘저공해자동차 등’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환경부와 협의하였습니다.

제30항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체불임금 지급의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근로기준법상의 직상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임금 대지급금 지급분을 회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변제금의 징수에 대하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직 또는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에 대한 대지급금 변제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안 부칙 제3조에서는 제8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대지급금에 대해서도 변제금 징수에 있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국세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변제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변제금 미납 사업주의 재산상 불이익에 관한 사항이 소급 적용될 여지가 있어 제25조에 따른 연체금 등의 징수는 이 법 시행 이후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대지급금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31항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연보호운동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자연보호운동의 범국민적 참여 및 실천을 촉진하며 자연보호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자연보호중앙연맹을 두도록 하는 내용으로, 신설되는 정의규정의 순서를 법체계에 맞게 정리하는 것으로 환경부와 협의하였습니다.

제33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소속 장애인의 근로 의욕 증진과 직업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회사 간 또는 손자회사 간 공동출자를 통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운영을 허용하되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주식소유 금지 등의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2조의2는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대해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및 제2조제9호에 따른다고 하면서 다른 조항 등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다른 조항 등에서 규정한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대해서도 각각 같은 법 제2조제8호 및 제2조제9호에 따른다는 점을 명확히 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제38항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부장관이 환경책임보험 사업을 관리하도록 하고 환경책임보험의 보험요율 산정 시 보험업법의 원칙을 적용하되 환경책임보험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안 제18조의3제4항에서는 충당하여야 하는 손실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해율에 따른 손실액을 초과하는 보험금에서 환경피해준비금을 제외한 금액을 끝으로 충당하여야 하는 보험금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20항, 제22항부터 제24항, 제27항, 제32항, 제34항, 제37항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제19항, 제25항, 제26항, 제29항, 제35항 및 제36항은 체계·자구에 별 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 김성환 환경부장관, 이미선 기상청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대체로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나경원 위원님.

○나경원 위원 고용노동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달 우리 청년고용률 얼마인지 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45% 수준입니다.

○나경원 위원 그러면 60세 이상의 고용률은 몇 %인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60세 이상이 청년고용률을 앞지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경원 위원 청년고용률을 앞질렀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예, 그렇습니다.

○나경원 위원 48%입니다. 청년고용률이 고령고용률보다 낮은 기현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저희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노란봉투법이 기업의 일자리를 더 늘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노란봉투법으로 원·하청 간의 상생의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위원 아니, 기업의 일자리를 늘릴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법이 기업의 일자리를 어떻게 늘리거나 줄이거나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나경원 위원 규제가 생기니까 그 효과를 물어보는데, 노란봉투법이 기업의 일자리를 더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거냐 아닐 거냐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노란봉투법은 우리나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영세 하청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향상시켜서,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로 바꿀 수 있도록 잘 지도하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지금 기업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답을 못 하시는군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노조법이 일자리와……

○나경원 위원 지금 노란봉투법뿐만 아니라 현재 관세정책으로 인한 미국의 투자 요구라든지 이런 것으로 봐서 사실 대한민국의 일자리가 생길 그게 없습니다. 안 그래도 대한민국 기업들이 지금 해외투자를 어떻게 보면 요구받고 있는 상황에 노란봉투법 등으로 GM대우도 철수할 수 있다 이런 우려들도 커지는 것 맞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노란봉투법과 GM대우 철수는 무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경원 위원 GM대우 입장에서도 하청업체가 1000여 개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 1000여 개를 전부 다 상대하고 지금 여러 가지 사실상 협상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같이 만들어 주셔야지 노란봉투법만 덜커덕 통과시키면……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사업장 점검 문제라든지 대체근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준비하시지 않고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잘 준비하겠습니다. 말씀하신 GM대우 현장방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GM대우는 2027년에 의무로 잔존해야 되는 기한이 끝납니다. 그래서 사실상 자동차는 미국의 지금 관세 25%가 만약에 유지되는 경우에는 미국 현지 생산으로 돌려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결국은 노란봉투법이 오히려 기업의 일자리를 한마디로 감소시킬 수 있고 청년 고용의 문을 완전히 닫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제는 예전의 지위가 아니십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의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감안하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환경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걱정하는 것 중의 하나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김성환 장관님께서는 예전부터 원전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AI 하려면, 지금 AI 강국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깊싸고 질 좋은 전기가 풍부하게 공급되어야 됩니다. 과연 원전에 대해서 이렇게 탈원전으로만 갔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환경부장관 김성환 어제 미국에서 대통령님하고 세계 최대의 투자회사 블랙록 간의 MOU가 있었습니다.

○나경원 위원 AI에 투자한다는 기사는 봤는데요.

○환경부장관 김성환 그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요 AI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한국에 투자하겠다고 하는 MOU를 맺었습니다.

○나경원 위원 아니, 그 투자를 하더라도, 지금 재생에너지가 사실은 출력제어가 계속 빈번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생에너지 비용이, 원전은 59원에 전기가 생산되는데

지금 재생에너지로 생산되는 것은 150원이 넘잖아요. 그러면 훨씬 비싼데, 당연한 얘기인데 이걸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저는 재생은 하지 말자 이런 주의는 아닙니다. 에너지는 믹스 정책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것을 균형을 맞추지 않고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갔을 때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쪽으로 에너지 정책이 될까 굉장히 우려를 표시하면서, 김성환 장관께서 개인 소신은 탈원전일지 몰라도 장관의 위치에 있다면 이런 부분 고려해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요청드립니다.

○환경부장관 김성환 짧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나경원 위원 답변하십시오.

○환경부장관 김성환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은 탈원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재생에너지는 석탄과 LNG 등 화석연료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 즉 풍력과 태양광의 발전단가가 석탄에너지 그러니까 석탄발전과 LNG발전보다 값이 싸진 지가 오래고요 대한민국도 이미 태양광은 석탄보다 값이 싸졌습니다. 육상풍력도 많이 싸졌고요 해상풍력이 다소 좀 비싸기는 합니다만 워낙 아직 발전량이 적어서 그런데 조금 늘어나면 해상풍력도 석탄발전보다 더 값이 싸질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재생에너지는 원전과 함께 일종의 에너지믹스를 해야 될 대상이고요.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것은 석탄에너지 그러니까 화석연료를 줄이자고 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것을 적절하게 믹스해서 대한민국이 탈탄소사회,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잘하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탈원전 2로는 가지 말아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위원장 추미애 박지원 위원님.

○박지원 위원 노동부장관님, 저 알아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잘 알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저를 만나는 분들이 노동부장관 칭찬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왜 노동부장관 칭찬 안 하느냐 하는데 오늘 칭찬합니다. 그분들에게 말씀 좀 전해 주세요, 박지원이 엄청나게 칭찬하더라. 아시겠어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예, 알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말을 좀 크게 해야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예, 잘 알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건 그렇고.

우리가 글로벌 스탠더드를 노동계도 지켜야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그렇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러면 노란봉투법은 ILO 규정을 지키는 겁니까, 일탈하는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ILO 규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박지원 위원 권고사항이고 지켜야 되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그렇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러면 우리도 이제 국제 글로벌 스탠더드를 다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노란봉투법은 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제 기준입니다.

○박지원 위원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원·하청 간의 교섭을 하는 것은 국제 기준이고 유럽 같은 경우는 산별교섭이 일반화돼 있기 때문에 그건 이미 정립된 국제규범입니다.

○박지원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을 설득할 때 이게 국제규범이다, 우리도 이제 지키지 않을 수 없다 하는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명심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김성환 장관, 우리가 에너지믹스를 주장하지 언제 원전을 폐쇄한다고 한 것은 아니지요?

○환경부장관 김성환 그렇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박지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과거 원전을 완전히 폐쇄한 것도 잘못이고 또 그런다고 윤석열 정부처럼 원전만 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하지 않는 것도 잘못 아니에요?

○환경부장관 김성환 그렇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래서 장관 개인 소신이 탈원전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지금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으로서 에너지믹스가 소신이다, 정책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게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렇게 하세요.

○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박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면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25항, 26항, 29항, 35항, 36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0항부터 24항까지, 27항, 28항, 30항부터 34항까지, 37항, 38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훈 장관님, 이미선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환경부장관 김성환 저는……

○위원장 추미애 김성환 장관님은 39항, 40항 심사가 남아 있어서 계속 남아 주십시오.

○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숙제가 남았네요.

○ 의사일정 상정의 건

(18시35분)

○위원장 추미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및 제40항의 법률안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이 법률안들은 국회법 제59조에 따른 숙려기간 5일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나경원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게 해 주세요, 의사진행발언 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추미애 이것하고 난 뒤에 의사진행발언하시지요.

○나경원 위원 아니, 이것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리려 그래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국회 법사위가. 제가 다른 게 아니라 의사진행발언……

○박지원 위원 오늘 나경원 위원이 발언을 너무 많이 한다.

○전현희 위원 좀 조용히 하세요.

○곽규택 위원 다른 분들이 너무 안 하시는 거지요.

○나경원 위원 여당은 원래 안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이의를 제기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하여서는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4인 중 찬성 9인, 반대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위기특별 위원장 제출)

40.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위기특별위원장 제출)

(18시36분)

○위원장 추미애 다음으로 기후위기특위 소관의 의사일정 제39항 및 40항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은정 전문위원 겸 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은정 의사일정 제39항 및 제40항, 2건의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의견은 환경부와 협의하여 제시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제40항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배출권 시세를

변동·고정시켜 부당이익을 얻는 행위를 금지하고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과산한 경우 등에 있어 투자자에게 예탁금을 우선 지급하는 절차와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개인신용정보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안 제22조의3제11항에서는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 및 개인신용정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자정보 암호화 등의 처리 방법 등에 따라 금융회사에 예탁금 지급에 이용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현행 이 법에서는 투자자에 대한 별다른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제22조제3항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자를 시장 참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용어를 대체하여 준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투자자 명칭을 시장 참여자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배숙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조배숙 위원 장관님 되시고 나서 제가 좀 늦게 뵙는 것 같습니다. 장관 되신 것 축하 드리고요.

○환경부장관 김성환 감사합니다.

○조배숙 위원 그런데 위낙 환경문제 전문가시고 성실하게 활동하셔서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 기후에너지부가 신설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환경부장관님이 기후에너지부장관님이 되시는 겁니까?

○환경부장관 김성환 통합해서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맡게 됩니다.

○조배숙 위원 그러면 환경부장관님이 그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이렇게 되시는 건가요?

○환경부장관 김성환 산업부 2차관실의 에너지 업무가 환경부와 통합돼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역할이 바뀝니다.

○조배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구가 커지는 거잖아요?

○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약간입니다.

○조배숙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장관 임명되셨는데 계속 연속적으로 가시는 것인가?

○환경부장관 김성환 정부조직 개편안이 확정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그렇게 됩니다.

○조배숙 위원 아, 그러면?

그런데 기후하고 에너지는…… 기후 이쪽은 규제 분야잖아요? 규제 분야고, 에너지부는 어떻게 보면 규제하고 반대인 어떤 조성을 하는 분야인데 이게 같은 부에서 서로, 규제면 규제, 진흥이면 진흥인데 규제와 진흥이 한꺼번에 속해 있다 말이지요. 과연 그게 제대로 작동이 될지 의문이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탈원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탈원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보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보면은요 신규 원전 2기 그다음에 소형 SMR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고리 2기에 대해서도 해체 결정이 내려지면 어떻게 되나 이런 우려가 있어요. 있는데, 저희들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그쪽 생태계가 완전히 붕괴됐거든요. 그래서 기술자들이 다 중국으로 가고. 그런데 한번 무너진 생태계를 다시 세우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힘든데, 지금 이거를 다시 제대로 복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나라가 원전을 수출해야 된다는 거지요. 굉장히 수출 주력산업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장관님께서 하셔야 될 일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것을 다시 진통해야 되는 그런 책무도 있으시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점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환경부장관 김성환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너무 심각해서 소위 탄소를 빨리 줄이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되는 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기후 업무하고 에너지 업무를 통합하는 나라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탄소를 저감하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비중이 빠른 속도로, 재생에너지가 늘어나고 탄소 감축을 하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규제 기능이다라고 보시는 것도 꼭 맞는 표현은 아닙니다만 세계적으로 이렇게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후 총괄 파트와 에너지 파트를 연계해서 하는 나라들이 많다 이렇게 봐 주시면 좋겠고요.

○조배숙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말씀하시지요.

○환경부장관 김성환 원전 문제는 저희가 11차 전기본에서 정해 놓은 규정이 있고요. 또 지금 이재명 정부도 소위 수명이 다한 원전은 안전이 보장되는 한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다만 신규 원전은 이게 새로 만들어지는 데 대략 한 10년에서 15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2030년에서 2035년 사이에…… 지난 해에 지구 온도가 이미 1.5°C 를 돌파했고 이대로 가면 2030년대 초반이면 지구 온도가 2°C 를 돌파할 것이라고 하는 IPCC의 경고가 있습니다. 이게 모두 다 이산화탄소의 대기 중 농도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빠른 속도로 석탄발전과 LNG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원전은 위험하기는 합니다만 탄소를 배출하는 에너지원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11차 전기본에 정해진 규정을 감안해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믹스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에너지믹스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원전 수출 지원에 대해서도 좀……

○환경부장관 김성환 원전 수출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맡지는 않고 이게 통상 문제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산업부가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국내 산업 진흥하고 수출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부와 잘 협력해서 원전 수출 분야도 저희가 꼼꼼하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신동욱 위원님, 손 드셨습니까?

○**신동욱 위원** 예.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관님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시기 때문에 제가 좀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지금 39항 보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이름을 바꾼다, 그리고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신동욱 위원** 그런데 저는요 굉장히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녹색성장이라는 것이 MB정권 때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만든 개념입니다. 그 녹색성장의 뜻은 기본법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성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구로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지향점이라는 것이 완벽하게 돼 있고요. 이 녹색성장이라는 것이 국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유엔에도 녹색성장 기금이 있고 또 국제기구도 그 이후에 하나 만들어졌거든요. 이런 지점에서,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만들어 낸 개념과 콘셉트가 이미 세계 국제사회에도 상당 부분 인정받고 있는 것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아시는 것처럼 정권이 바뀌면 아무리 좋은 것들도 이렇게 막 바뀌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거를 굳이……

사실 기후위기라는 게 좋은 표현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평범한 표현이잖아요. 기후위기에 대응한다는 것이 굉장히 평범한 표현이고 그런 것보다는 기왕에 우리가 이런 좋은 개념을 만들어서 국제사회에도 인정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아무리 지난 정부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굳이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이 개념을 소멸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

저보다 더 아쉽지 않을까요, 우리 장관님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부장관 김성환** 녹색전환이나 녹색성장은 보편적인 표현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 취지가 법명에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신동욱 위원** 어떤 데 살아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김성환** 법명에는 그대로 살아 있고요. 법이 법명 자체가 바뀐 게 아니고 그 법명 안에 있는 위원회의 기구……

○**신동욱 위원** 위원회의 명칭만 바뀐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김성환** 그렇습니다.

○**신동욱 위원** 법명에는 살아 있는데……

○**환경부장관 김성환** 그러니까 그 가치가 훼손된 건 아니고요.

○**신동욱 위원** 아니요, 그것을 굳이 이렇게 위원회의 이름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라는 명칭의 변경이라는 것이 특별한 이유가 저는 잘 느껴지지 않는데 이거를 왜 굳이……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게 정치적인 이유로 이러시는 겁니까?

○**환경부장관 김성환** 그렇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신동욱 위원** 그러면 어떤 취지로 분석하십니까?

○**환경부장관 김성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해에 사실상 기후위기의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1.5°C를 돌파했고요. 지금 매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3ppm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430ppm을 돌파했고요. 이대로 가면 450ppm, 즉 2°C가 올라가는 데 육칠 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절박한, 기후위기 대응이 굉장히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보편적 표현이 아니고요.

○**신동욱 위원** 아니요, 장관님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 에너지 부분을 거기에는 갖다 붙이는 것도 그런 취지로 우리가 느끼는 기후위기가 에너지 문제하고 매우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는데 이 이름을 보면 기후위기대응이라는 것은 그냥 평범한 기후위기 대응으로 느껴지는데 사실 녹색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기후위기와 에너지 부분이 이미 오래 전에 결합되어서 우리에게 만들어진 좋은 위원회고 좋은 기구거든요.

부처의 이름은, 부처의 역할에는 에너지를 갖다 붙여서 에너지와 융합된 형태로 대응을 하겠다는 취지, 저는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데 굳이, 이 녹색성장이라는 것은 이미 기후위기와 에너지 문제와 또 앞으로의 미래성장 동력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 있는 너무나 좋은 개념이고 국제적으로 보면 그런 그로스(green growth)라는 게 이미 다 한국이 주도적으로 만들어 낸 성장의 개념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굳이 이걸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것은 과거 정부 지우기라고밖에는 저는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환경부장관 김성환** 위원님 만약에 과거 정부 지우기라고 하면 법명도 바꿨겠지요. 그런데 그러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법에 그 가치,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치는 그대로 살아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위원회의 명칭과 관련해서는 이건 약간 부차적인 얘기이긴 합니다만 그걸 약칭으로 부르다 보니까 ‘탄독위’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국민들한테 ‘탄독위’ 하면 이게 잘 전달이 안 되는 측면도 아마 감안이 돼서 기후위기위원회,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이게 훨씬 더 국민들에게 소구력이 있게 다가설 수 있어서 아마 법명은 그대로 두되 위원회 명칭을 조금 더 국민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바뀌었다 그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발언 취지는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믿고 좋게 성장된 것은 계속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김성환** 그렇습니다. 그 법명에 그대로 살아 있으니까 그 점 저희가 잘 감안하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9항, 제40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환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부장관 김성환 감사합니다.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추미애 위원 외 1인 서면동의)

(18시53분)

○위원장 추미애 다음은 법안1소위에서 의결된 법안을 심사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회의를 시작하면서 미리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회의 시작 전에 제출된 의사일정 추가상정을 위한 서면동의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인 저 추미애가 운영위 소관의 국회기록원법안,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5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먼저 심사할 것을 요구하는 동의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서면동의서에 추미애 위원 외 한 분의 위원님의 찬성이 있으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의사일정 변경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한 국회법 제77조에 따르면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대해서는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위 소관의 국회기록원법안,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5건을 각각 의사일정 제77항부터 81항까지로 추가하여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에 대해서 국회법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변경에 찬성하는 위원님부터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에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5인 중 찬성 10인, 반대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상정의 건

(18시54분)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의사일정 제77항부터 제81항까지의 안건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들은 국회법 제59조에 따른 숙려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위원회 의결을 통해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5인 중 찬성 10인, 반대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7. 국회기록원법안(국회운영위원회 제출)

78.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회 제출)

7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회 제출)

80.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회 제출)

81.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국회운영위원회 제출)

(18시56분)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운영위 소관의 의사일정 제77항부터 제81항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정환철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7항부터 제81항까지 운영위원회 소관 규칙안과 4건의 법률안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법률안 수정의견은 국회사무처와 협의하여 제시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77항 국회기록원법안(위원회안)은 국회기록원을 국회의장 소속으로 두어 국회 소관 기록물의 생산·분류·정리 등의 사무를 수행하는 등의 법안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의사일정 제78항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은 국회기록물의 관리 업무를 독립기관인 국회기록원이 전담하도록 한 국회기록원법안에 비추어 국회도서관의 직무 중 기록물 관리 업무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체계·자구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의사일정 제79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의사일정 제81항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국회기록원 설립 근거 마련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명칭·기능 조정에 맞추어 정리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의사일정 제80항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위원회 활동기한이 종료되어 위증 등의 죄에 대하여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본회의가 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를 이 법 시행 전에 활동기한이 종료된 위원회에서 위증 등의 죄를 범한 사람에게도 적용하도록 규정한 부칙 2조와 관련해서는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형벌불소급 원칙과 관련하여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

고 보았고 그밖의 일부 체계·자구 정비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박태형 국회사무처 사무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대체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전현희 위원님.

○**전현희 위원** 제가 대표발의한 국회 증감법 개정안에 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최근에 특검 수사를 통해서 CCTV상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복 전 경제부총리 그리고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등이 국회에서 위증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외에도 김주현 민정수석, 조태용 국정원장 그리고 정진석 비서실장 등도 위증 의혹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세 사람, 한덕수·최상복·이상민 이들의 경우에는 국회의 내란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날 소집된 국무위원들의 간담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준 내란 문건을 받거나 본 적이 없다라고 부인을 했고 당시 비상계엄에 반대했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특검이 확보한 국회 CCTV에 의해서 명백하게 거짓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문건 내용을 직접 살펴보거나 다른 국무위원들과 논의하는 모습이 포착되는 등 그들의 위증 사실이 확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위증죄의 고발 주체인 국정조사특위가 기간만료로 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현행법상~~ 국회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관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돼서 위증 등의 죄에 대해 고발할 위원회가 존속하지 않거나 고발 주체가 불분명한 경우에 국회 본회의의 의결로도 고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 법안으로 국회의 감시 기능을 보완하고 청문회와 국정조사, 국정감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증감법 일부개정안의 주요 골자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두고 소급효로 위헌·위법이다 이런 주장을 일부 위원들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주장을 하는 분들은 국회에서 위증해도 된다는 겁니까?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의원이 질의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버젓이 자신의 기억과는 상반되는 그런 위증을 한 것은 매우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허위사실로 국민을 속이는 위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현법질서와 관련 법의 취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내란의 완전한 종식 그리고 국회에서 허위사실로 위증한 내란세력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급효 관련 위법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 드립니다. 개정안은 위증에 대한 고발 주체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위증죄의 처벌 절차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절차법이고 실체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급효와는 무관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국회 법제실에도 법리상 소급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 검토를 이미 완료한 법안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그리고 대법원 판결에서도 당사자의 법적 신뢰보호의 원칙에 우선하는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을 때는 소급입법이 정당화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위원장, 김용민 간사와 사회교대)

따라서 위증범죄가 사후에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 소관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처벌이 불가능하다면 국민의 알권리와 국회의 감시기능이 훼손되는 중대한 공익 침해가 발생하고 아울러 위증죄를 범한 사람은 행위 당시에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이미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기에 당사자의 신뢰가 침해되었다, 법적 신뢰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관련 관례와 해석에 의해서 소급효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민 조배숙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조배숙 위원 차장님 이십니까?

○국회사무처사무차장 박태형 예.

○조배숙 위원 제가 이것 보니까요 왜 갑자기 이게…… 국회도서관법, 국회기록원이 있네요. 저도 국회기록원에 대해서 별로 많이 들어 본 그런 기관은 아닌데 국회의 기록원을 갑자기 국회의장 소속으로 두고 이렇게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박태형 일단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현재의 국회의 기록물 관리는 도서관 산하의 기록보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의원님들, 헌법기관인 삼백 분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기록과 입법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정당 또는 교섭단체의 기록물까지 우리가 직접적으로 능동적으로 좀 모아서 입법부 전반적인 어떤 의정기록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조배숙 위원 아니, 좋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이게 지금 해당 상임위 운영위원회에서도 여야가 합의된 것은 아니지요? 여야 합의된 게 아니지요? 그리고 또 이게 보니까 여기 기록원장이 차관급이 되네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박태형 예, 그렇습니다.

○조배숙 위원 차관급이 되는데 지금 국회기록원 말고 국가기록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기록원은 직급이 어떻게 되지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박태형 실장급 정도입니다.

○조배숙 위원 그러면 여기 국회기록원 원장이 훨씬 더 직급이 높네요? 조금 불균형스럽지 않습니까?

○국회사무처사무차장 박태형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국회……

○조배숙 위원 잠깐만요, 시간이 좀 없으니까.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인원도 30에서 70명으로 늘고 그리고 예산도 지금 엄청나고, 제가 볼 때는 인원을 조금 더…… 만약에 한다고 하면 꼭 이렇게 소속을 바꾸고 또 원장을 직급을 높여서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 부분에 있어서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본회의가 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건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분명한 형별불소급 원칙에 어긋나는 것인데요. 지금 다른 의견을 내는 분도 있지만 형별불소급이 문제되는 경우는 다 마찬가

지입니다. 이게 나쁜 범죄인데 그때는 법이 없어 가지고 처벌을 못 해서 그래서 처벌하기로 한다. 하지만 그전에 했던, 사후에 규정된 그 범죄에 해당되는 것을 그 당시는 처벌하지 못 했지만, 사후에 만들었는데……

○전현희 위원 절차법이라서 소급효 상관없어요.

○조배숙 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전현희 위원 틀린 말을 하니까 그렇지요.

○조배숙 위원 아니,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곽규택 위원 아니, 그걸 어떻게 틀린 말이라고 단정을 하세요?

○전현희 위원 절차법이에요, 절차법.

○곽규택 위원 변호사 맞아요?

○전현희 위원 절차법이에요. 이거는 현재 판례도 있어요.

○곽규택 위원 절차법도 다 대상이 되는 거예요. 공부 좀 하세요, 공부 좀.

○전현희 위원 그러니까, 변호사 맞아요, 진짜?

○조배숙 위원 이게 형별…… 잠깐만요. 얘기 들어요. 절차법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이게 중요한 것은 뭔가 예상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는 이게 근본적으로 형별불소급 원칙과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전문위원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표시를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민 더 토론하실……

곽규택 위원님.

○곽규택 위원 이게 오늘 오전에 운영위를 일방적으로 통과했던 법들인데 사실은 국회기록원법 같은 경우는 전혀 급한 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충분히 논의를 한 다음에 해도 되는데 내용 중에 보시면 국회의원, 교섭단체, 정당 기록물을 국회기록원에서 수집·관리하겠다는 거예요. 정당 기록물을 수집·관리하겠다는 게 이게 의도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다 국회사무처에 소속된 정도의 기관이지 이렇게 차관급으로 국회기록원을 독립시켜 가지고 한 나라들이 없더라고요, 국회사무처 스스로 확인한 자료에도.

지금의 기록보존소 기능이면 충분하고 그 기능에서 인력이 조금 모자라면 보완하면 되는 거지 약 30명 정도의 인력을 70명으로 늘려 가지고 예산을 사십몇 억을 더 증가시키고 이렇게 차관급 자리를 만들고…… 국회에서 정부의 실국장급 자리 하나 늘리는 것도 얼마나 엄격하게 봅니까, 국민들의 예산이 쓰이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국회에서 이렇게 늘린다고 하는 것을 오늘 아침에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오늘 저녁에 법사위에서 논의해서 통과시킬 만큼 그렇게 급한 건가요?

그리고 국회에서의 중감법 내용을 보시면 다른 부분은 뭐 그런 대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두 가지 부분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데 그 고발 대상으로 원래는 고발할 수 없었던 대상에 대해 가지고 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사후에 고발을 해 가지고 처벌하겠다는 거거든요. 절차에 관한 법도 그 절차가 형사처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면 당연히 헌법

상의 형별불소급 원칙에 해당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해 가지고 만약에 고발해 가지고 기소했을 때 분명히 이것은 위헌 소지가 있는 사항이다 생각을 하고.

또 우리 국회의 구조상 잘 아시겠지만 본회의에서 어떤 고발을 논의해 가지고 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법이 어떻게 돼 있느냐면 국회의장이 고발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렇게 고발을 한 이후에 2개월 정도의 수사가 종료가 안 되면 그 수사기관이 국회에 와 가지고 본회의에서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논의를 해요. 그다음에 그 수사기간을 제대로 안 지키면 국회에서 수사기관의 관련자들을 징계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국회의장 산하에, 고발인의 지위에 있는 국회의장이 수사기관을 지휘해 가지고 수사 지휘도 하고 징계도 한다는 거예요.

법사위원님들, 이런 것은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이것을 그렇게 어떤 특정인을 겨냥해 가지고 쳐벌하시고 싶은 심정 때문에 이런 법까지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국회의장이 수사기관 불러다가 ‘2개월 안에 조사 마치지 않은 이유가 뭐냐’ 국회에서 보고받고 그 담당자를 징계하고 이런 법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논의하자 그랬는데 운영위에서 일사천리로 또 통과시킨 겁니다, 표결로.

○전현희 위원 국회에서 위증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곽규택 위원 지금 그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위증하면 안 되지요. 앞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나오는 분들 철저하게 해 가지고 다 고발할 겁니다. 하는데, 본회의장에서 수사기관 관련자한테 보고를 받고 지휘하고 징계한다 이런 것은 말도 안 되는 법이니까.....

○전현희 위원 절차법이라 위증이 안 된다는 법리 검토를 한 거예요.

○곽규택 위원 말도 안 되는 걸 너무 잘 아시는 전현희 위원님이 자꾸 지금 옆에서 딴지를 걸고 계세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법입니다.

○전현희 위원 법리 검토를 이미 마친 겁니다. 절차법은 해당이 안 된다는 법리 검토를 마친 거예요.

○곽규택 위원 우리 법사위에서 이런 것을 그냥 통과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제2소위에 회부시키셔 가지고 엄격한 심사를 해야 되고, 헌법 체계하고도 안 맞고요. 우리나라 국회가 수사기관의 수사에 고발인의 신분으로 관여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법체계하고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이건 전형적으로 다른 법체계하고 안 맞기 때문에 2소위에서 심사를 더 해야 되는 법입니다. 이걸 이렇게 통과시키시면 안 됩니다. 이해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을 한번 보세요, 위원님들이.

이상입니다.

○박규택 위원 위원장님, 토론 종결을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동욱 위원 반론을 좀 말씀해 주세요. 토론을 왜 종결합니까?

○나경원 위원 토론 좀 하게 해 주세요.

아니, 이렇게 입틀막을 합니까? 아니, 이렇게 일사천리로 입틀막을 합니까?

○신동욱 위원 아니, 저희를 좀 설득해 주세요.

○위원장 추미애 제가 지난번에 12·3 내란 국정조사위원으로 활동을 해 보니까 초기에

증인들이 나와서 많은 위증을 했습니다.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

○나경원 위원 이렇게 입틀막을 합니까?

○조배숙 위원 우리가 왜 국회의원 됐습니까?

○신동욱 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추미애 조용히 하세요!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의사 방해를 하십니까, 아실 만한 위원이.

○곽규택 위원 놀래라. 방망이는 왜 두드리세요, 갑자기.

○나경원 위원 그러니까 발언권을 좀 주세요.

○위원장 추미애 조용히 좀 하시라고.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어요!

지난번 12·3 내란 국정조사……

○박지원 위원 야단 맞을 줄 알았어.

○나경원 위원 누가 누구를 야단침니까.

○위원장 추미애 재차 경고합니다. 조용히 하세요. 위원장이 발언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곽규택 위원 박지원 위원님이 떠드셨어요.

○신동욱 위원 박지원 위원님 말씀하신 거예요.

○위원장 추미애 12·3 내란 국정조사특위 활동 시한이 종료되고 난 후에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분이 계엄 문건을 보고 읽고 10여 분간 확인을 한 연후에도 ‘꾸깃꾸깃 접어서 양복 주머니에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라는 거짓 증언을 여러 차례 반복했는데, 국민 모두를 속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국정조사특위 활동시한은 종료했기 때문에 고발 조치조차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국사범, 헌법을 파괴한 내란 공범에 대해서도 그러할지인데 늦었지만 이렇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마련되어 국회에서 하는 위원회의 조사 활동이 진실을 추구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됐다 하는 점에서 참으로 다행이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곽규택 위원 말도 안 되는 법입니다. 말도 안 되는 법이에요.

○나경원 위원 토론 좀 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추미애 아니, 국회사무처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신동욱 위원 말도 안 되는 말씀은 하지 마세요. 법체계를 다 무너뜨리고 무슨 진실을 규명해요. 그렇게 해서 진실이 어떻게 규명이 됩니까?

○위원장 추미애 조용히 좀 하세요!

○곽규택 위원 의견 물어 봤잖아요, 지금!

○신동욱 위원 왜 조용해요, 저희는? 물어 봤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위원장 추미애 제가 답변을 물은 겁니다.

○나경원 위원 저희가 학생입니까?

○위원장 추미애 학생보다 못 하네요.

○국회사무처사무처장 박태형 증감법과 관련돼서 사무처가 참여를 하지 않아서, 위원님들이 논의하시고 결정한 사항이라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나경원 위원 위원장님, 토론권 좀 주십시오.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토론 종결 동의가 들어왔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나경원 위원 아니, 여당이 이렇게 몇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어차피 통과시킬 법…… 아니, 말 좀 하게 해 줘요, 말 좀.

○위원장 추미애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나경원 위원 이런 입틀막이 어디 있어요? 말 좀 하게 해 줘요. 아니, 말 좀 하게 해 줘요! 이런 식으로 국회 독재가 이루어집니까?

○조배숙 위원 아니, 발언권을 주세요.

○나경원 위원 발언권 주세요, 발언권!

(장내 소란)

○위원장 추미애 박군택 위원님께서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지원 위원님 등 찬성하는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회법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4인 중 찬성 10인, 반대 4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 종결 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7항 국회기록원법안, 제78항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79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81항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들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아니, 도서관장 야당 뜻인데 힘 빼려고 기록원 만들고 말이야.

○위원장 추미애 먼저 의사일정 제77항……

나경원 위원, 조용히 하세요. 하루 종일 떠드십니까?

○나경원 위원 ‘떠들다’가 뭐니까?

○위원장 추미애 의사진행 방해를 하십니까? 몇 번입니까, 하루에? 수십 회를 하십니까?

○나경원 위원 그러니까 발언권을 주세요!

○신동욱 위원 위원장, 말조심하세요.

(장내 소란)

○**위원장 추미애** 의사일정 제77항 국회기록원법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위원 총 14인 중 찬성 10인, 반대 4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8항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위원 총 14인 중 찬성 10인, 반대 4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9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위원 총 14인 중 찬성 10인, 반대 4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81항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위원 총 14인 중 찬성 10인, 반대 4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제80항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4인 중 찬성 10인, 반대 4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태형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추미애 위원 외 1인 서면동의)

(19시21분)

○위원장 추미애 다음, 추미애 위원…… 위원장인 제가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개입 의혹 관련 긴급현안 청문회 증인 추가 출석요구의 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먼저 심사할 것을 요구하는 동의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서면동의서에 추미애 위원 외 한 분의 위원님의 찬성이 있으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의사일정 변경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한 국회법 제77조에 따르면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대해서는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개입 의혹 관련 긴급현안 청문회 증인 추가 출석요구의 건을 의사일정 제82항으로 추가하여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에 대하여 국회법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변경에 찬성하는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4인 중 찬성 10인, 반대 4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2.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개입 의혹 관련 긴급현안 청문회 증인 추가 출석요구의 건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의사일정 제82항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개입 의혹 관련 긴급현안 청문회 증인 추가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9월 30일 실시되는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개입 의혹 관련 긴급현안 청문회의 증인으로 고흥석·이영진을 추가로 출석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곽규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곽규택 위원 지금 증인으로 두 명의, 아마 법관인 것 같은데 추가하셨어요. 증인으로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그리고 대법원 형사총괄연구관…… 현직 법관인데 또 대법관들하고 같이 출석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명의 법관에 대해서 왜 출석이 필요한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봐 가지고는 이 증인들이 과연 이 사안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 놓고 표결을 하겠다는 건데,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청문회를 해 가지고 현직 법관을 불러서 뭘 물어 보겠다고 그러면 내용 설명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김용민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용민 위원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청문회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형사2부에 배당된 사건을 갑자기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전합 회부된 때로부터 9일 만에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그리고 판결이 선고되는 그 과정에서 특이하게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계속 자기는 대선 출마의 의사가 없다는 식의 발언을 하다가 이 무렵에 갑자기 대선 출마를 할 것처럼 움직임을 시작했고 실제 5월 1일 날 전원합의체가 선고되는 그날 바로 총리를 사임하면서 공식적으로 대선 출마 입장을 밝히는 그런 일을 벌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덕수가 이날 대법원 선고 결과를 몰랐다라고 하면 할 수 없는 이상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이미 알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정황들이 보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원합의체는 매우 이상했다,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추가된 증인은 전원합의체의 회부 과정과 전원합의체에서 어떻게 논의가 됐고 그리고 전원합의체에서 얼마나 빠르게 이례적으로 재판이 진행됐는지 그리고 판결문은 왜 그렇게 빨리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기록은 실제로 봤는지 안 봤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알고 있는 핵심 책임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흥석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과 이영진 대법원 형사총괄연구관은 이 청문회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증인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경원 위원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나경원 위원님.

○나경원 위원 발언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래간만에 발언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꾸 토론 종결하지 말고 발언권 충분히 주시고, 어차피 지금 여당 속도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기회를 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결국 우리가 절차에 맞춰서 또 법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날치기 통과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민주당이 증인을 추가하셨는데요.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관의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게 된 것이 뭡니까? 5월 1일에 대법원 판결 나오니까 5월 2일에 서영교 위원이 제일 먼저 4인 회동을 법사위에서 제기하고 5월 14일에 제가 아까 보여 드린 그 경고문이 붙어 있는 믿거나 말거나 녹취록을 매우 신빙성이 높은 증거로 제시하면서, 4인 회동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굴려온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4인 회동에 대한 것을 시작해서 나온 조희대 대법원장의 문제 있는 판결이라 그러면 그 4인 회동설을 제기한 ‘열린공감TV’, 당연히 증인으로 신청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쏙 뺏습니까? 저는 이것 빼는 걸 보고 ‘그 4인 회동설 자체가 조작이구나’라는 것을 자인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증인을 신청하시는 걸 보고 민주당은 이것을 자인한 것이다.

그래서 저희 당이 오늘 제출한 것이 다음에 논의될 안건입니다. 한마디로 서영교·부승찬 등의 조작녹취 거짓선동에 의한 이재명 대통령 재판뒤집기·사법파괴 진상규명 긴급청문회인데요. 지금 민주당이 하는 대법원장까지 끌고 나오는 이 청문회는 저희는 매우 사법 파괴적인,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청문회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것 하려면 저희 것도 같이 청문회 채택해 주실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에 4인 회동 최초로 제기한 ‘열린공감TV’도 추가로 신청하시고 그 ‘열린공감TV’ 녹취록이 허위라는 것을 제기했던 박대용인가 하는 사람이 있던데 같이 한번 제기를 해 보시지요. 그래서 한번 논의해 보는 게 어떤지 제가 제안합니다.

결국 민주당은 4인 회동 자체가 허위라는 것을 자인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삼권분립에 반하는 청문회는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성윤 위원 토론 종결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추미애 증인 추가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의장을 만났습니다. 국회의장은 결자해지해야 된다. 아마 법원행정처장은 국회의장을 만나서 청문회를 면줘 달라 그런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회의장은 결자해지해야 된다. 그 말씀은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이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이런 말씀이겠지요. 국민 누구나 모두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이 그 말을 시치미를 뚫고 세종대왕에 자기 자신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대엽 행정처장은 곧바로 국회 법사위로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법사 위원들이 계시는 가운데 저에 대해서 ‘그 청문회를 재고해 달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한 ‘그것은 재판 중인 사건에 상관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법제사법위원회는 국회법 제37조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소관 사무로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사무에 관한 사항을 감독할 수가 있고 법원·군사법원에 대해서는 그 사법행정

에 관한 사항을 감독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김용민 위원이 제기한 바와 같이 느닷없이 대법원 형사 2부에 배정이 됐던 것을 배당을 바꿔서 전원합의체로 회부했고 9일 만에 선고했다는 이 이례적인 일은 재판부의 전속 재판권, 해당 주심 대법관의 심리권을 침해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신속·급행 재판을 했다는 것은 배당 사무에 관한 대법원 예규와 관례를 어긴 것으로서 굉장히 해괴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회 법사위는 국회법 제37조에 따라서 상임위원회의 소관 업무로서 이런 비뚤어진 일탈한 사법행정과 재판사무에 관해서 당연히 감독해야 되고 지적을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국회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된 청문회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한층 더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이것을 밝혀 줄 수 있는 증인을 추가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2항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개입 의혹 관련 긴급현안 청문회 증인 추가 출석요구의 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4인 중 찬성 10인, 반대 4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인 명단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나경원 위원 외 6인 서면동의)

(19시34분)

○**위원장 추미애** 다음, 나경원 위원께서 서영교·부승찬 등의 조작녹취 거짓선동에 의한 이재명 대통령 재판뒤집기·사법파괴 진상규명 긴급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먼저 심사할 것을 요구하는 동의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서면동의서에 나경원 위원님 외 여섯 분의 위원님의 찬성이 있으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의사일정 변경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한 국회법 제77조에 따르면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대해서는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영교·부승찬 등의 조작녹취 거짓선동에 의한 이재명 대통령 재판뒤집기·사법

파괴 진상규명 긴급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중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사일정 제83항, 제84항으로 각각 추가하여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에 대하여 국회법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변경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4인 중 찬성 10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나경원 위원** 이게 채택한 거 아니야? 지난번에 의사일정 변경 없이 그냥 채택하던 데? 찬성한 게 채택한 거잖아.

찬성한 게 채택한 거지요, 행정실장? 지난번 속기록 봐 봐요. 이게 찬성한 게 채택한 거예요. 이게 채택된 거예요. 지난번에 의사일정 변경한다는 얘기 없이 청문회 이것 채택한 거야.

○**박균택 위원** 상정에 대해서 동의를 한 겁니다.

○**나경원 위원** 그때 두 번 하지 않았어. 속기록 한번 찾아봐요. 두 번 안 했어. ‘채택합니까?’ 그랬었는데……

○**김기표 위원** 상정에 대해서, 의안 상정을 해서 토론……

○**이성윤 위원** 잘 들어 보세요.

○**나경원 위원** 아니, 그때 기억이, 그때도 갑자기 내미셨잖아요.

○**신동욱 위원** 속기록 찾아보시면 되지요.

○**나경원 위원** 찾아보자고요, 한번. 나 기억이 두 번 표결 안 한 것 같은데? 갑자기 가져와서 그냥 하지 않았나?

○**김용민 위원** 토론해야지요, 안건이 이제 상정됐으니.

○**나경원 위원** 그냥 한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속기록 좀 가져와 봐요.

○**신동욱 위원** 채택된 거예요, 그래서?

○**조배숙 위원** 아니, 이제 안건 상정한다는 거지.

○**나경원 위원** 그때 두 번 표결 안 한 것 같아서, 내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속기록 좀 확인해 봐요. 이것 원래 한 번 표결하면 끝나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은데 그때 그게 잘못됐거나 이게 잘못했거나, 속기록 가져와 봐요.

○**위원장 추미애** 의제 성립을 먼저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의제 성립 다음에……

○**나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 속기록하고 비교해 보자고요. 그 당시 속기록 좀 가져와 보세요.

- 김용민 위원 요행을 바라지 마세요.
- 나경원 위원 아니, 그래도 확인해 봅시다.
- 곽규택 위원 요행이 아니라 그때 표결을 갖다가 확인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요.
- 나경원 위원 그 당시 내가 표결 한 번 한 것 같아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다들 당황하는 표정이잖아요.
- 신동욱 위원 지금 속기록 찾아보지요.
- 곽규택 위원 그때 표결이 잘못됐으면 9월 30일 날 청문회 하는 것도 하면 안 되는 거고.
- 나경원 위원 청문회가 잘못된 거고 이번 표결이 잘못됐으면 이것 다시 한번 하면 되니까 확인만 해 보자는 거예요. 제가 다른 게 아니라 확인 좀 해 봐요.
- 박지원 위원 상정됐으니까 토론해 가지고 표결합시다.
- 나경원 위원 아니, 확인을 좀 해 봐요, 그때 속기록.
-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 토론 의견이 있습니다.
- 나경원 위원 아니, 확인 좀 해 보자고요, 일단.
- 위원장 추미애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 나경원 위원 확인을 해 보세요. 그때 속기록 좀 꺼내 보세요.
- 곽규택 위원 토론이 하고 싶습니다.
- 나경원 위원 박 위원님이 어쩐 일로 토론을 하시겠다고 다……
- 위원장 추미애 우선 다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서면동의가 제출됐기 때문에 국회법 제71조에 따라서 의사일정 변경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다라는 것을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먼저 표결을 했던 것이라고요. 또 그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서……

앞에는 의제고, 그러니까 사전에 없었던 것이 의제로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그 의제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김기표 위원 저는 의사일정 변경에 동의해 준 겁니다.

○위원장 추미애 그다음에는 의사일정에 관한 겁니다. 앞에 거는 의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의사일정 변경에 관한 겁니다.

○나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의 속기록 좀 한번 찾아보세요.

○위원장 추미애 알아서 찾아보십시오.

○나경원 위원 정회하고 두 개 중에…… 그 문제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돼서.

나도 지금 헛갈려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절차는 정확하게 해야 되잖아요.

○김기표 위원 찬성한 것은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것에 찬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빨리 절차 진행하시지요. 그게 정확한 의사에 의한 표결이지요.

○김용민 위원 따로 찾아보시라고 하고 이 절차는 빨리 진행해요.

○곽규택 위원 토론하신다잖아요. 토론 기회 좀 주세요.

84. 서영교·부승찬 등의 조작녹취 거짓선동에 의한 이재명 대통령 재판뒤집기·사법파괴 진상규명 긴급청문회 증인 출석요구의 건

(19시41분)

○위원장 추미애 의사일정 제83항과 제84항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3항은 서영교·부승찬 등의 조작녹취 거짓선동에 의한 이재명 대통령 재판뒤집기·사법파괴 진상규명 긴급청문회를 10월 1일에 개최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문회 실시계획서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균택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박균택 위원 지금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공격 대상으로 삼는 국회의원 두 분은 국민의 뜻을 대신하는 지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총리의 만남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한덕수 총리와 논의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은 만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것은 만났지만 논의는 하지 않았다는 뜻이냐라고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저도 그 의문을 제기했고 일선의 부장판사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 기간 동안에는 만나지 않았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 시점 지정이 잘못됐을 뿐 다른 일시에 만났다는 의혹이 또 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뒤로 말이 없습니다.

의혹을 해명해야 할 사람은 국회의원 두 분이 아니고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국힘 위원님들은 정당한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공격 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고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에 참여해서 진상을 밝히는 활동에 적극성을 보이시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안건은 즉시 부결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조배숙 위원님.

○조배숙 위원 우리들은 지금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발언은 하나하나 다 속기록에 기록이 되고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고 또 발언을 할 때까지는 엄밀한 조사와 또 어떤 공신력을 가져야 됩니다.

의혹 제기하는 것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혹 제기가, 저도 이런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녹취록을 틀었습니다. 틀었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열린공감TV' 본인들도 이게 확실한 거 아니다, 그리고 또 거기다가 자그마한 글씨로 그런 부분을 써놨다. 그리고 또 나중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영교 위원이 5월 달에 문제 제기를 했는데 최근 오류일 전에 그 근거가 뭐냐고 본인한테 물어봤다. 그것은 5월 달에 제기했는데 그 사이에 어떤 확인 작업도 안 했고 그런 것이 아니냐. 저희들은 그런 걸 문제 삼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에게 이렇게 면책특권이 주어지는 것은 과거의 권위주의 시절에 뭔가 잘못된 것을 지적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인 보복이나 이런 것을 막고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위해서 준 아주 중요한 우리 국회의원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무조건 그냥 의혹이 있으면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제기하고 이게 됩니까? 결국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했다고 해서 이것을 대선 개입이라고 하면서 대법원장을 사퇴해라, 탄핵하겠다 이렇게 압박하면서……

이것이 법률적으로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것이고 있을 수가 없는 주장인데 이것을 강하게 주장하다 보니까 허위사실에 기대서 이런 분위기를 야기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여론을 호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이런 부분을 해명하고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나 이런 게 없습니다. 굉장히 유감이고요.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 외에도 계속 ‘그래도 그 두 사람 사이에 뭔가 이상한 거래가 있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걸 좀 밝혀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정치적인 주장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국회에서 의석이 다수라고 해 가지고 어떻게 삼권분립을 훼손하면서 대법원장이 나와서 청문회를 합니까? 저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헌정사에 그런 일은 없었고 있어서도 안 될 일입니다.

저는 우리 국회가 과연 민주주의 국회 맞나 싶습니다. 국회의 다수 의석을 점했으면, 다수결이라고 하는 것은 소수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그리고 합리적으로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저희들이 느끼는 것이지만 어차피 힘 있는 여당이니까 표결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7명 되는 우리 야당 위원들 의사진행발언조차도 안 주고 토론회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민주주의 맞습니까? 그러고서 토론 종결하자고 앵무새처럼 말하고. 저는 굉장히 자괴감을 느낍니다.

어차피 다수당이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훌러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야당 위원으로서 정당하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막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민주주의 맞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정말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워오셨는데 어떻게 국회에서 이렇게 운영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두 분에 대한 의혹 제기가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저희들이 청문회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전현희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전현희 위원 사상 초유의 현직 대법원장이 사법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유력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의 대선후보 자격을 박탈하려고 한 겁니다. 그것이 친히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던 내란수괴 윤석열이 탄핵이 되고 사실상 정권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던 국힘을 대법원의 사법 쿠데타로 그것을 뒤집으려고 한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이 드는 겁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대법원의 이런 조치가 정말로 사상 초유이고 그동안의 대법원의 관행에도 완전히 위배하는 그런 행태였던 겁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바로 이 사안은 대법원 소부에 원칙적으로 회부가 됐습니다.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대법원장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직권으로 회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전합에서 회부돼서 바로 재판기일을 잡았고 7만여 페이지에 해당되는 재판 기록조차 제대로 읽지 않고 바로 선고기일을 잡았습니다. 단 이를 만에, 그리고 시간으로 따지면 만 하루 만에 7만여 페이지에 해당되는 기록을 읽을 시간조차 없이 그야말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바로 선고기일을 잡은 것입니다. 그러고는 바로 유죄 취

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대법원의 사법 쿠데타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법원은 지귀연 재판부가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재판을, 이례적으로 석방을 하고 또 재판을 지연하고 있는 것을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도 국민들이 매우 궁금해합니다.

이런 대법원장에 의한 사상 초유의 사법 쿠데타에 대해서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배경은 무엇인지, 왜 대법원장 스스로가 사법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사법부의 독립을 무너뜨렸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그 진상을 밝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책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서영교 위원이 지적했습니다. 서영교 위원이 지적하는 것의 본질을 봐야 됩니다. 이것은 대법원장에 의한 사법 쿠데타의 진상을 밝히자 이것을 말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 달을 가리키고 있는데 손가락을 문제 삼는 것이 지금 국힘의 태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안에 관해서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했던 행태들을 보면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이 그야말로 내로남불이고 적반하장이다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진이 당시에 김명수 대법원장을 사실상 출근길에 난입해서 출근을 저지하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법원에 쳐들어가서 이렇게 대법원장의 출근길을 저지하면서 사퇴하라라고 부르짖었던 그 현장입니다.

주호영 당시 원내대표는 당시 대법원장에 대해서 사퇴하라 이런 주장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김기현·권성동 의원은 이 집회에 참석하고 대법원에 난입을 해서 대법원장을 면담하고 사퇴하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정말로 국민의힘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경원 위원 이때 당시에 대법원 앞에 와서 뭐 하는 겁니까? 대법원장 탄핵하라고 주장을 하고 사실상 대법원을 무시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고 삼권분립 침해하는 게 지금 국민의힘 아닙니까?

김기현·권성동 지금 하는 거,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 사퇴하라고 대법원 앞에 가서 대법원장 면담하고 난입하고 이러면서 물러나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한 얘기를 보십시오. 김은혜·이준석 의원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장 사퇴하라고 이렇게 피케팅 시위까지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렇게 김명수 대법원장 물러나라, 사퇴하라……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당시에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것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 그래서 침대 재판이다, 그래서 대법원장을 사퇴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논리라면 지금 재판을 지연하는 지귀연 재판장 사퇴해라 주장하는 것이 국민의힘이 해야 할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옳은 소리 하고 있는 서영교 위원에 대해서 청문회 하자는

이 주장, 정말 얼토당토 않고 그야말로 내로남불입니다. 저는 나로남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청문회는 반드시 부결돼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윤 위원 토론 종결해 주십시오.

○신동욱 위원 토론하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토론하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위원장님, 토론 기회 주세요.

○위원장 추미애 이성윤 위원님으로부터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나경원 위원 아니, 민주당을 둘 줬으면 우리도 둘은 줘야지요.

○위원장 추미애 해당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회법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4인 중 찬성 10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 종결 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3항 서영교·부승찬 등의 조작녹취 거짓선동에 의한 이재명 대통령 재판뒤집기·사법파괴 진상규명 긴급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이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4인 중 찬성 4인, 반대 10인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4항 서영교·부승찬 등의 조작녹취 거짓선동에 의한 이재명 대통령

재판뒤집기·사법파괴 진상규명 긴급청문회 증인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증인 등의 구체적인 명단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 예, 저희 순서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신동욱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신동욱 위원**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민주당이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하지요,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나. 본질로 자꾸 돌아가자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질은 사법부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본질은 우리가 왕정시대에 하지 못했던 사법부라는 것을 만들어서 1인 독재를 막자고 만든 것이 사법부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문명국가들이 가장 가치 있게 헌법에 규정해 놓은 것이 사법부 독립입니다. 그래서 우리 헌정사에서 여러 차례 일종의 사법파동이 있었지만 사법부의 수장을 함부로 다루지 않는 것은 우리 사회의 상식이고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법부를 지키자고 하는 것인데, 조금 전에 먼저 김명수 대법원장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좀 보세요.

녹취 한번…… 녹취도 이 정도는 돼야지 녹취인 것이지 서영교 위원이 튼 것은 그런 것을 가지고 사법부 수장을 청문회 하자고 하는 것이…… 들어 보세요.

(녹음자료 재생)

보세요. 여러분들, 김명수 대법원장이 저렇게 대법원장 스스로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지요. 이런 말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전 국민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녹취가 터진 거예요. 저는 이것에 대한 판단은 각기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대법원장에 대한 거취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신뢰성 있는 녹취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게 맞다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저는 그때 이 당에 있지 않았습니다만 그 당시의 국민의힘이 대법원장을 청문회에 오라がら 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퇴하라는 구호는 많이 했습니다만 청문회를 불러 가지고 대법원장을 망신 주자, 이런 주장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적어도 저 정도의 녹취는 가지고, 대법원장이 뭘 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청문회든 사퇴 요구든 하는 것이고.

탄핵이 뭡니까? 자꾸 지금 방송 나오셔서 ‘탄핵’, ‘탄핵’ 하는데……

○**이성윤 위원**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신동욱 위원** 조용히 하세요, 이성윤 위원님.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확하게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것이 있어야 탄핵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소설을 쓰고 상상의 나래를 펼쳐 가지고 본질은 그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장 물러가야 된다,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온

갖 상상을 다 해 가지고 대법원장 물러 나가야 된다. 이게 지금 도대체 우리가…… 사법부를 그동안 지켜 온 우리 선배들한테 창피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지금 민주당의 많은 위원들은 법률가들이십니다. 저는 적어도 사법부의 판사가 아니셔도 검사로 재직하셨더라도 적어도 법률가로 평생을 봉직을 하셨으면 사법부 독립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이라든지 존중이라든지 조금이라도 이런 것이 있으면……

머릿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못 하겠습니까? 이재명을 어떻게 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재명 판결 빨리 한다고 그랬을 때 역시 무죄선고하려고 그러나 보다, 잘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파기환송하고 나니까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했다는 이런 상상의 나래를 막 펴시고. 좋습니다. 상상하는 것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국회가 대법원장을 부르려면 상상이 아니라 뭔가 구체적인 물증을 가지고 불러야지요. 제가 지금 제시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자기 부하 재판관에게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한 저런 사건들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우려해야지 어떻게 무턱대고 서영교 위원을 두둔합니까? 여러분들 서영교 위원을 이렇게 잘했다고 해 가지고 나중에 이 후폭풍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정치적으로 어려워도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이런 큰 철학을 흔들 때는 적어도 기본적으로 뭔가는 가지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 추미애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 위원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여론이 오늘 과반에 육박하고 있어요.

○신동욱 위원 과반에 육박하면 대법원장 사퇴해야 됩니까?

○박은정 위원 세상에 어느 역사상 대법원장의 사퇴 여론이 이렇게 높을 수가 있습니까? 국민들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지금 극도에 이르러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법원의 지난 5월 1일 판결이 국민주권을 침해한 사법쿠데타였다는 정황이 너무나 많이 뚜렷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사법부는 국민 앞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셔야 되는데 해명도 하지 않고 제대로 된 이 불신을 해소할 생각도 안 하고 계세요. 국회는 국민을 대리해서 그것에 대해서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한덕수 그리고 그외의 기타 윤석열 등등과 같이…… 전화 통화했습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한덕수하고 만나서 무슨 논의를 이 건과 관련해서 안 했다면 다른 논의는 했는지 조희대 대법원장 스스로 사법불신에 대해서 해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퇴 여론이 이렇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직무유기입니다.

사법부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라면 이런 사법불신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존경하는 국민의힘 위원님들 얘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 사퇴 여론에 대해서 국회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이 사법쿠데타에 대해서?

국민이, 쿠데타로 인해서 국민주권이 침해됐는데 국회가 아무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에 대한 의혹을 정당하게 제기하신 동료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이런 식의 공격 아닌 공격을 하시는 국민의힘 위원님들께 너무나 유감입니다. 그래서 이런 긴급현안 청문회 말고 9월 30일 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에 적극적으로 임하셔서……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고하면 그때 밝히시면 될 것 아니에요? 그때 제대로 준비하셔

가지고 오셔서 밝히시라 그렇게 생각하고.

이 청문회는 저는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위원에 대한 이런 말도 안 되는 공격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셔야 된다. 물론 정치공세를 하시는 건 좋지만 그러면 국민의힘 위원들은 어떤 의혹도 제기 안 하십니까, 국회의원 되셔 가지고? 공익신고 대상자세요. 공익신고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해야 되는 거예요. 의혹도 제기 못하면…… 국회의원들이 말도 못 합니까, 수사기관도 아닌데?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 통화내역 내놓으세요. 한덕수하고 안 만났다면 한덕수하고 통화 안 했는지, 윤석열하고 통화 안 했는지, 김건희하고 통화 안 했는지 기타 등등 통화내역 내놓으시고 무고함을 스스로 밝히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을 9월 30일 날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사법부의 불신을 스스로 해소하시라. 사법부의 독립은 스스로 지키셔야 합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청문회 계획서를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하시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나경원 위원 저 발언권 주십시오.

○위원장 추미애 김용민 위원님.

○나경원 위원 아니, 저도 주십시오.

○곽규택 위원 여야를 번갈아 가면서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김용민 위원 여야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집중하십시오.

○나경원 위원 아니, 추미애 위원장님 저 꼭 주셔야 돼요.

○위원장 추미애 지금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먼저 국민의힘 소속 신동욱 위원님께 드렸고 지금 비교섭단체 한 분 드렸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김용민 위원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나경원 위원 아니, 마지막은 안 됩니다. 전현희 위원이 한 것에 대해서 제가 반드시 발언할 기회를 주십시오. 전현희 위원이 허위사실을 말했기 때문에 얘기해야 됩니다.

○김용민 위원 제가 먼저 발언하겠습니다. 좀 집중해 주십시오.

한번 볼까요? 지금 우리가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하려는 게 본질이 뭐니까? 본질이 중요합니다. 지금 본질을 자꾸 왜곡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사건이 흐려지는데 본질은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이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것, 국민주권을 침해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사법쿠데타를 저질렀다는 것이에요.

대통령선거 직전에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 그리고 이미 민주당의 후보가 됐던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2심에서, 항소심에서 무죄받았던 것 갑자기 전원합의체로 끌고 와서 9일 만에 기록도 안 읽고 판결했고,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5월 11일, 12일이 대통령후보 등록일입니다. 아시지요? 이것 항소심에 파기환송해서 보냈더니 항소심에서 5월 14일, 15일 이때 재판 열겠다라고 막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민주당은 대선후보 등록일 이후에 대선후보를 잊게 돼서 후보를 못 내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획하고 실행했던 명백한 증거가 바로 그 판결들입니다. 매우 이례적인 판결, 매우 이례적인 재판 진행 이것 말고 더 명백한 증거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이것을 매우매우 좁게 좁혀서 조희대가 한덕수를 만났느

냐 안 만났느냐에만 집중하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본질은 조희대와 한덕수가 만났느냐가 아니라 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렇게 대선에 개입해서 이런 이상한 판결을 했느냐, 왜 함부로 국민주권을 침해했느냐 이것이 본질입니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가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그렇게 궁금하시면, 그게 마치 사안의 본질이라고 착각하고 계신다면 9월 30일 이때 청문회 있으니까 그때 물어보십시오.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데요. 만약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출석하고 판사들이 불출석 한다라고 하면 이 판사들은 앞으로 재판할 때 증인을 부르지 마십시오. 증인들에게 불출석했다라고 불이익 주면 안 됩니다. 국회도 국회법에 따라서 그리고 헌법에 따라서 증인을 부를 수가 있고 그 증인으로 채택된 대법원장과 판사들은 증인으로 나와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재판할 때 증인을 부르는 것은 헌법상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조직법 그리고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에 따른, 법률에 따른 권한을 가지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재판할 때 증인 안 부르고 싶으면 이 국회에도 나오지 마십시오. 모순된 행동 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금도는 넘지 맙시다. 아무리 정치를 한다고 해도 이게 뭐니까? 동료 위원 이름 집어넣고 청문회 하겠다라고 하는데, 진짜 중요한 게 뭐니까? 사실은 만약에 이렇게 동료 위원 이름 집어넣고 청문회 할 거면 저는 내란 청산 청문회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란 청산 청문회하면서 추경호, 나경원, 조배숙, 김기현, 이철규, 장동혁, 윤상현, 권성동, 주진우, 신동욱 이런 사람들 증인으로 불러서 이 청문회 하면, 이 청문회 먼저 동의하시면 제가 그때 가서 잠깐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청문회 주장하지 말고 내란 청산부터 협조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경원 위원 저도 발언권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보고 그때 탄핵을 주장했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아무리 기사를 찾아봐도 제가 기억이 없고 하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말하게 해 주십시오.

○김기표 위원 토론 종결해 주십시오.

○나경원 위원 또 토론 종결이에요? 또 입틀막입니까? 또 입틀막이에요? 이렇게 멋대로 하는 게 있습니까? 저는 그 당시에 사법농단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위원장 추미애 김기표 위원님으로부터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나경원 위원 아니, 추미애 위원장님, 내 심사에 관한 걸 하고서는 이렇게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맨날 거짓말하고……

○조배숙 위원 아니, 본인이 해명할 기회를 주셔야지요, 사실과 다르니까.

○위원장 추미애 박군택 위원님 등 찬성하는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회법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2인 중 찬성 10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 종결 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내 소란)

그러면 의사일정 제84항 서영교·부승찬 등의 조작녹취 거짓선동에 의한 이재명 대통령 재판뒤집기·사법파괴 진상규명 긴급청문회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배부해 드린 명단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립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2인 중 찬성 1인, 반대 10인, 기권 1인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의결한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60)

4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68)

4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74)

4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06)

4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15)

4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시14분)

○위원장 추미애 의사일정 제41항부터 제47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용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김용민입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학영·고동진·오세희 의원이 각각 대

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첫째, 관리비 부과 항목이 표준계약서에 포함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둘째, 상가건물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임대차계약 시 합의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과된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받은 임대인은 이를 제공하도록 하며 셋째, 관리비 내역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전용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임시조치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안의 내용대로 임시조치 중 상담 및 교육 위탁을 미이행한 사람에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유사한 임시조치인 의료기관 등 위탁을 미이행하는 사람에게도 동액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박은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불법 합성물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유포 및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범죄 등 디지털 성범죄 전반으로 배상명령을 확대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입은 피해자의 빠른 회복을 도우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노트북에 게재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김용민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토론할 순서입니다.

토론 시간은 각 5분으로 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정성호 법무부장관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님께서 출석해 주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경원 위원님.

○나경원 위원 정성호 장관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 안에서 국회법이 안 지켜져요. 정성호 장관님은 국회의원을 오래 하셔서 아시겠지만 면책특권이라고 해서 의원들이 하는 발언이 고의로 허위의 사실을 말하는 경우에는 면책특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아시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나경원 위원 서영교 위원님도 사실은 녹취록을 트셨는데 그 녹취록은 유튜브에 근거한 건데 그 유튜브에는 보면 믿거나 말거나 써 있고, 조금 전에 전현희 위원은 제가 2019년 10월에 대법원 앞에 가서, 그 당시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이, 조국 전 장관 말고 그와 관련된 영장이 마구 기각되고 있어서 그것을 규탄하고 있었고 그날은 탄핵의 '탄' 자도 안 꺼냈는데 그 위에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했다고 썼습니다.

저는 김명수 대법원장 2019년 2월 1일에 딱 한 번 뭐라고 말을 했냐?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가 이렇게 민주당에 의해서 무참하게 공격당하는데도 아무 말을 안 한다면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을 한 것이, 제가 지금 아무리 찾아도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 10월에는 사법농단을 주장했을 뿐인데 그 위에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이렇게 써서 마치 우리 당이 그 당시에 대법원장 탄핵안을 발의하거나 또는 탄핵을 강력히 주장하고 규탄한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이 도대체, 국회라는 이름하에서 면책특권 뒤에 숨어 갖고 지금 이런 것이 횡행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자괴감을 금할 수가 없고요.

정성호 장관님,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 겁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존경하는 위원님, 지금 법안1소위에서 의결된 법안에 관련돼서 제가 답변해야 될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나경원 위원 민주당 위원님들도 아까 문화부장관한테 관련 없는 것 질의하시길래……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 관련된 말씀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국회에서는 의원님들의 상당한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장하기 위해서 면책특권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경원 위원 제가 법무부장관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요.

제가 법원행정처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청문하겠다 하면서 대법원장을 청문회 대상으로 삼고 그리고 지금 재판하고 있는 지귀연 판사를 또 청문하겠다고 청문회에 불렀습니다. 청문회 제목은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사건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원래 민주당은 4인 회동 운운하면서 의혹 제기를 조작 증거에 의해서 제기하다가 이제 그 4인 회동은 쑥 빼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법원행정처장님, 이것 사법부의 독립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 관련해서 저희들로서는 지금 청문 대상으로 삼고 있는 부분은 결국에는 전원합의 판결, 재판 절차와 판결 내용에 대해서 이것을 청문 대상으로 한다는 취지로 보여지기 때문에 사법권 독립이라든지 또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국회가 조사할 수 없다라는 국정감사·조사법에 따라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지금 소부에 회부를 했다가 전합 사건으로 회부한 이런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많이 보셨겠지만 전합 판결 다수보충의견을 보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대법관들은 빠른 시기에 1심과 원심 판결, 공판기록을 기초로 사실관계와 쟁점 파악에 착수했고 또 상고이유서, 답변서, 의견서가 접수되는 대로 자체 없이 제출 문서를 읽어 보고 그 내용을 숙지했고, 구체적인 절차 진행도 절차 주재하는 대법원장이 일일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확인한 다음 후속 절차로 나아갔고, 다만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따라서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 사건을 심의해서……

○나경원 위원 아니, 대법원에서 잘못한 것은요, 그동안 법원에서 잘못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선거법 재판이 1심만 2년 2개월 걸렸지요? 2년 4개월 걸렸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나경원 위원 아니, 6·3·3 원칙이 있는데, 사실상 1년 안에 끝내야 될 선거법 재판을 송달 안 받아, 변호사 선임 안 해 이런 갖가지 이유로 지연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했을 때 안 해서 이런 사달이 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원의 독립성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지귀연 판사까지 불러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부분에 대한 사법부의 우려를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것은 결국 사법부 독립을 완전히 침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위원장 추미애 최혁진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최혁진 위원 제가 안건 관련해서 토론을 안 하려고 했는데 나경원 위원께서 또 허위 사실을 계속 유포하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나경원·주진우 위원 계속해서 AI로 변조된 걸 가지고 서영교 위원이……

○나경원 위원 AI라는 얘기 안 했어요.

○최혁진 위원 허위 AI 얘기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허위·조작된 뉴스를 가지고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발언했다는 모욕적인 발언을 계속하고 계신데요. 문제는 본인들입니다. 보수 언론까지 저에게 연락을 해서 취재하는 과정을 보니 제보자가 있고 제보자의 음성을 변조한 게 분명하다라고 하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국민의힘 당사자들에게까지 연락을 했다. 이것 이런 식으로 밀고 나가면 굉장히 위험하다. 법적 위반이 될 수 있다’.

더더군다나 상임위 전체회의 자리도 아니고 바깥에서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가짜뉴스를 대놓고 퍼뜨리셨어요. 반성도 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서영교 위원과 부승찬 의원을 모욕하는, 자기들이 무슨 무법지대에 사는 것도 아닌데 행동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보수 언론으로부터 취재를 해 보니 분명한 제보자가 있고 음성 변조だ라고 하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조작된 것이다라고 하는 목소리를 계속 내면서 이런 식으로 한다라면 저는 분명한 법적 위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로 인해서 해당 언론사에게 고소까지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법적 책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위원님들의 발언에 관련돼 가지고 법무부장관이 평가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국민의 대표자로서 외부의 외압으로부터 자유롭게 국민을 대표할 수 있도록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게 면책특권입니다.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다른 사회 제해 세력으로부터의 외압을 막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자유롭게 얘기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혁진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면책특권 뒤에 숨은 것은 본인들인데 엉뚱

한 동료 위원을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마치 가짜뉴스나 퍼트리는 사람인 것처럼 모욕을 주는 행위를 당장 멈춰 주시고 공개 사과하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님께도 잘못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의 대법원 상황은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초한 것이고 그로 인해서 국민들이, 대법원 자기 스스로가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대법원이 희화화되는 상황까지 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자해지라는 말까지 나오게 됐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보내오셨어요. 이것 정말 놀라운 얘기인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AI 로봇이라는 의혹이 있다. 청문회에서 제발 좀 밝혀 달라. 7만 페이지 가까운 문서를 이를 만에 살펴보고 판결까지 내렸다면 이건 필시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반드시 30일 청문회에서 이 내용을 밝혀 달라’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라면 국민들이 지금 대법원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자체적인 반성을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 위원들 여기와 가지고 무슨 민주당이 대법원을 압박하느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천대엽 행정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 상황에 대해서 대법원은 어떤 자구책을 만들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우원식 국회의장 만났을 때 아까 저도 오늘 충분히 이 과정을 봤습니다마는 청문회 이야기는 일체 서로 간에 꺼낸 적이 없다는 것은 먼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첫째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사법개혁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인 관심이 많으니까 우리 대법원도 사법부도 거기에 대해서 뭔가 공론화를 통해서 국민에 유익한 사법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자, 그러기 위해서 공론화 절차에 대해서 힘을 써 달라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드렸고 우리가 어떤 공론화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조언을 듣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법원장 회의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좀 소개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12·3 생겼을 때 제가 대법관님들 의견을 들어 가지고 바로 법사위에서도 그렇고 국회 본회의에서도 그렇고 이것이 위헌적인 조치다라는 것을 분명히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 이처럼 저희들도 나름대로 분명한 사법부 입장을 밝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저희 사법부도 정상적인 사법권의 행사가 정지, 박탈당한 그런 암울한 시기였는데 국민들의 비상한 호헌 의식 그리고 국회의 노력으로 저희들이 단기간 내에 사법권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으니까 우리 사법부로서도 이 내란 재판에 대해서는 행정처나 해당 법원에서 보다 신속하고 집중적인 심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인 지원 조치를 다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법원장들께서.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중앙법원 차원에서도 이번에 복귀한 법관 한 분을 25부에 다시 배치를 하고 또 어제 자로 저희들이 원래 다른 법원에 가기로 된 법관을 1명 더 중앙법원에 배치를 해 줬습니다. 그 외에도 이번에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법안이 시행되기로 되어 있는 재판 중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질 없이 국민들이 재판 중계를 통해서 해당 재판을 볼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 하자 이런 준비를 하고 있고 또한 마찬가지로 참여관이나 입회 속기사, 보안관리요원 등등 모든 인적·물적·예산적인 지원을 다 해 주자 이런 식으로 중앙법원과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경청하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혁진 위원** 다른 무엇보다 일단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대법원을 희화화할 정도로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9월 30일 청문회에 출석해서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세를 보여 주는 것이 저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원행정처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명심하시고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국힘 교섭단체에서도 한 분 하셨고 그다음에 비교섭단체 한 분 하셨고 민주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성윤 위원님.

○**이성윤 위원** 전주을 출신 이성윤입니다.

윤석열 12·3 내란 사건 그리고 김건희의 국정농단 사건, 정말 국민들의 관심도 많고 특히 12·3 내란 사건은 국민들이 내란 종식을 해 달라는 강력한 요구가 분출한 사건입니다.

법원행정처장님, 깡패 우두머리가 있고 행동대장이 있고 또 행동대원이 함께 수 명이, 수십 명이 기소되었다면 처장님께서는 어떻게 재판을 하시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동안 검찰에서 아마 같이 일괄 기소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일괄 기소하거나 또는 따로따로 기소해도 한 재판부에서 재판을 하겠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지난 박근혜 국정농단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22부에서 했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이성윤 위원** 그건 사실상 전담재판부였습니다. 일주일에 보통 세 번까지 재판을 했고 총 백오 차례 공판을 했습니다. 지귀연 재판부는 지금 몇 번 재판했는지 아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12월 결심 예정까지 총 99회가 예정돼 있고 그중에서 62회가 진행된 상태고 증인도 상당수 소화가 된 상태라서 저희들이 계산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 재판 때는 평균 2.2일 정도 시간 간격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2.4일 정도로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일단은 보입니다.

○**이성윤 위원** 큰 차이가 없다고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이성윤 위원** 그러면 고등법원에서 이 사건 집중심리재판부를 만들어서 항소심에 오면 하겠다 이건 또 뭐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말씀드릴까요?

○이성윤 위원 아니, 그러니까 들어 보십시오.

국정농단 범위가 너무나 넓고 지금 윤석열 내란 사건은 특검이 계속 수사를 하고 있고 또 김건희 사건도 구속을 많이 해서 기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장님 말씀은 마치 열심히 재판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혹시 어디 어디에 배당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이것도 말씀……

○이성윤 위원 아닙니다. 제가 볼게요. 지금 내란 사건의 경우에는 일반 검찰이 총 3건을 기소해 가지고 8명 재판 중에 있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이성윤 위원 이 재판부가 지귀연 재판부입니다. 또 특검법 통과 후에 내란특검이 총 5건을 기소해서 이상민, 한덕수 등 기소해 가지고 총 8건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총 10명이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이성윤 위원 그런데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6개 재판부가 지금 재판을 나눠서 하고 있어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렇습니다.

○이성윤 위원 김건희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총 7건인데 김건희 등, 전성배 그리고 이종호, 그러면 7건의 피고인은 8명이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이성윤 위원 그런데 6개 재판부에 나눠서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이성윤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9개 재판부가 총 15건의 국정농단 사건을 재판하고 있는 겁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보십시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내란특검은 윤석열 등 10명을 6개 재판부에 나눠서 재판하고 김건희특검은 김건희 등 8명을 6개 재판부에 나눠서 재판하고 있습니다. 총 9개 재판부가 15개 국정농단, 내란 사건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정상적인 상황입니까? 내란수괴, 내란 우두머리,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이게 다 조폭으로 말하자면 행동대장 그다음에 조폭 두목 그다음 부하로 있는 자가 조폭 행동대원 아닙니까? 이게 한 재판부에서 재판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위원님, 제가……

○이성윤 위원 들어 보십시오.

만일에 이 하나의 사건을 말이지요, 6개 재판부에 나눠 가지고 지귀연 재판부처럼 다 침대 축구, 느림보 재판해 버리면 국민들은 어디에 하소연하고 각자 결론을 따로따로 내버리면 국민들은 어디에다 어필하겠습니까. 국민들은 지귀연 재판부를 못 믿을 뿐만 아니고 조희대 대법원장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한 사건, 김건희 사건을 뿔뿔이 6개 재판부에 뿌리고 특검이 출범한 후에 내란 사건을 6개 재판부에 나눠 가지고 따로따로 재판하는지, 한덕수가 왜 윤석열과 함께 재판을 받지 아니하며 또 이상민이 왜 윤석열과 함께 재판을 받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봐도 맞지가 않습니다.

처장님, 법원이 정말 내란 사건 단죄 의지가 있고 김건희 단죄 의지가 있다면 당장이

라도 지금 한 재판부에 몰아서 수사를 해서 엄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법원에서 결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전담재판부 의견이, 그 요구가 분출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위원님, 이것 답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도 12·3 이후에 그 위헌적인 조치는 몇 번이나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검찰이나 특검이나 하나로 같이 일괄 기소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당연히 한 재판부에서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쪼개서 기소를 한 마당에 이 사건을 병합하다 보면 이 사건이 1년이 아니라 2년, 3년으로 한없이 늘어질 수가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성윤 위원** 검찰이, 특검이 쪼개서 기소했다고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쪼개서 했다는 게 아니라 원래대로라면, 조폭의 그런 범리대로라면 수사를 한꺼번에 해서 모든 관계자들을 기소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는……

○**이성윤 위원** 쪼갤 수밖에 없지요. 검찰이 수사하고 특검이 다시 출범했으니까 나눠서 기소할 수밖에 없지요. 그럴 때는 법원에서 하지 마라 해도 통합해서 재판해야 이 사건 성격에 맞게 재판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맞는 형량도 나오고 그럴 것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이성윤 위원** 그런데 왜 검찰이 쪼개서 기소했다고 하는 겁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런 취지는 아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새로 추가해서 기소되는 사건을 같은 재판부에서 자꾸 병합하다 보면 결국 그 전체 재판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 사건은 그러지 않아도……

○**이성윤 위원** 왜 전체 통합해서 재판하면 늦어집니까? 국민들은 이렇게 재판이 흩어져 있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이런 사실을 표로 보면 국민들이 놀랄 지경이에요. 국민들은 법원에서 수사하겠다고 그러니까 지귀연 재판부를 못 믿는다면 다른 재판부에서 남은 재판이라도 다 모아서 재판하는 줄 알고 있어요. 다 따로따로, 이상민 따로 한덕수 따로따로 재판하면 결론도 따로 나올 뿐만 아니라 다 침대 축구처럼 느림보 재판하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전히 저희대 대법원장을 못 믿는데 이건 더 못 믿는 상황이 왔습니다. 지금이라도 통합해서, 내란전담재판부 그리고 김건희 국정농단재판부가 나오기 전에 통합해서 재판하십시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내란 재판에 대한 신속한 심리 그리고 선고가 필요하다라는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경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재판이 결국에는 우두머리 재판을 하고 있는 25부의 재판이라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행정적인 조치를 지금 최대한 경주를 하고 있는데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말씀 주시면 저희들 그 부분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특검이 지금 병합 요구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런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장 추미애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재판을 신속하게 하는 데 방해됩니까, 병합 요구를 들어주면?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 사건 그 부분은……

○위원장 추미애 특검이 그렇게 병합 요구를 하는 것은 법정마다 또는 피고인별로 병합이 안 된 상태로 재판할 때는 한 증인이 여러 번, 여러 시간씩 신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이 천년만년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병합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법원행정처장님은 반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병합을 하면 재판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이렇게 실상과 반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답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험칙상 명백한 사실은 증명이 필요하지 않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7만 페이지를 이틀 만에 대법관이 기록을 다 볼 수 있다는 건 경험칙상 명백한 겁니까?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심과 원심 기록 등을 다 파악하고 숙지를 했고 쟁점을 다 파악했다는 것이 드러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판결문상에.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그 판결문상에 다른 대법관은 ‘기록 다 못 봤다’ 그런 표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험칙상 7만 페이지를 읽는다는 것은 명백하지 않고 국민들께서 납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회 법사위가 청문회를 통해서 AI인지 아닌지, 대법관이 한 인격체인지 인간인지 AI인지 검증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추미애 예.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고심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법률심이지 않겠습니까? 법률적인 문제 그리고 상고 이유로써 문제되고 있는 법리적인 쟁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한해서 보는 것이고, 다만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대법관들이 다수의 연구관들을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그 사건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 관한 부분, 즉 법률 문제와 관계없는 그리고 법적인 부분과 관계되는 쟁점 사실관계와 관계없는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다 보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렇게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보통의 경우에는 대법관님들이 기록 관계를 더 철저히 보고 하는 걸로 경험적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에도 적어도 쟁점에 관계되는 그런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철저히 봤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다수 의견 보충 의견에 설시한 것으로는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그것이 현재 법률심인 상고심의 구조에 비추어 볼 때는 문제 될 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성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전체, 지금 중앙법원에 계류되어 올라와 있는 내란 사건 전체를 왜 한꺼번에 합쳐서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할 경우에 재판이 한도 끝도 없이 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위원장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위원장 추미애 아니, 너무 합니다.

일단 특검이 병합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재판부가 적극적이어야 되는데 미온적인 겁니다. 그러면 특검은 괜히 그러겠습니까? 신속한 재판을 할 필요가 있어서 한 종인이 여러 재판부에 여러 날에 걸쳐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굉장히 괴롭고 힘들다라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재판이 각각 따로따로 놀고 있다, 내란수괴 쪽에서 그 허점을 또 노리고 있다, 그걸 지적하는 건데 지금 반대로 얘기하시는 걸 지적한 것이고요.

그리고 대법원이 경험칙에 반하는 사실인정을 했을 때는 많이 과거를 합니다. 대법원에서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도 당연히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걸 눈 감고 할 필요가 없다, 법률적으로 문제 되는 것만, 우리는 법률심이니까 그것만 편셋으로 뽑아냈다, 거기서 정확하다, 이런 말씀이나 마찬가지로 들리는 겁니다.

행정처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법률가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조배숙 위원 저희들도 발언하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위원장님, 그만하세요! 이게 상식이 있는 진행입니까?

○나경원 위원 위원장님도 하시려면 밑에 내려와서 위원으로 하세요. 시간제한 있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조용히 하세요!

○나경원 위원 시간제한이 있는 겁니다!

○신동욱 위원 뭘 조용히 해요! 위원장이 이렇게 하는데 뭘 조용히 해요!

○곽규택 위원 뭘 조용히 해요! 5분 시간 넣고 해야지, 토론하려면!

○김기표 위원 위원장님 얘기하시는데 좀 들으시지요!

○위원장 추미애 그리고 국회법……

○최혁진 위원 발언 방해하지 마세요!

○나경원 위원 아니, 조용히 하라니요! 또 사퇴시키려고요? 또 발언권 막으려고요?

○조배숙 위원 위원장님, 발언하겠습니다.

○곽규택 위원 5분 시간 넣고 하세요, 5분!

○나경원 위원 5분 정하고 하시는 거예요.

○신동욱 위원 다른 위원들 발언 다 듣고 위원장이 하시는 게 그게 초선인 저도 아는 겁니다. 어떻게 민주당 위원들 발언할 때마다 끼어 가지고 그렇게 사족을 붙이세요. 잘못하시는 겁니다, 이거!

○박은정 위원 위원장도 질문할 수 있습니다.

○최혁진 위원 위원장님 권한이 있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동안 현안에 대해서 한 말씀도 안 했잖아요. 좀 들어보세요.

○신동욱 위원 시간도 없이 이렇게 발언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위원회도 이렇게

회의는 하지 않습니다!

○**박은정 위원**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이 질문할 수 있어요.

○**이성윤 위원** 조용히 좀 하세요! 위원장님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회의 진행하잖아요!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을 못 해요!

○**박은정 위원** 회의 방해하지 마세요.

○**신동욱 위원** 여야 발언을 균형 있게 듣고 나서 그리고 마지막에 ‘저도 발언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게 상식이지 어떻게 위원장이 이렇게…… 이게 무슨 진행입니까? 그리고 뭘 조용을 해요, 조용하기는.

○**박은정 위원** 위원장도 질문권이 있어요!

○**나경원 위원** 그리고 위원장도 질의하려면 내려와서 하셔야 됩니다. 조용히 하라니!
발언권은 주지도 않으면서 조용히 하라니!

○**곽규택 위원** 5분 넣고 하세요, 5분 넣고.

○**신동욱 위원**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다른 위원회를 보세요.

○**박균택 위원** 오늘 처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동욱 위원** 뭘 처음 말씀을 해요.

○**나경원 위원** 뭘 처음 말씀하세요. 하루종일 말씀하셨지.

○**박균택 위원** 그전에는 진행이었지요.

○**서영교 위원** 뭐가 두려워서 그래요!

○**신동욱 위원** 뭘 두려워요, 두렵기는. 지겨워서 그러지.

○**나경원 위원** 두렵기는!

○**곽규택 위원** 무슨 엉뚱한 말을 또 하고 계셔.

○**장경태 위원** 현안에 대해서 처음 얘기하니까 들어봅시다.

○**서영교 위원** 뭐가 두려워서 그래!

○**나경원 위원** 면책특권 뒤에서 맨날 거짓말들 좀 그만해요.

○**신동욱 위원** 진행을 똑바로 좀 하세요.

○**서영교 위원** 대법원장이 대선에 개입한 거 아니에요!

○**위원장 추미애** 발언권 드리지 않았습니다.

○**조배숙 위원** 뭘 개입해, 하기는!

○**나경원 위원** 사진에 아무렇게나 탄핵을 주장했다고 쓰지를 않나……

○**서영교 위원** 대법원장이 대선에 개입하고 이재명 대통령후보를 날리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법원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신동욱 위원** 위원들한테 발언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시간 하고 하세요. 어떻게 한도 끝도 없이 발언합니까, 위원장이라고.

○**조배숙 위원** 발언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민주당 대통령후보를 날리려고 했던 거잖아요! 대법원이 그러고도 잘한 겁니까?

○**박균택 위원** 토론 종결 요청합니다.

○**나경원 위원** 국민들이 잘 알고 판단하라는 얘기였다고 법원에서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박균택 위원** 토론 종결 요청합니다.

○**위원장 추미애** 위원장이 발언을 마치지 않았습니다. 발언을 지금 방해받고 있는 겁니다.

○**조배숙 위원**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발언을.

○**곽규택 위원** 시간을 넣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같이 시간을 넣고 하셔야지 토론을 무제한으로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나경원 위원** 위원석에 내려와서 하세요.

○**서영교 위원** 위원장을 왜 내려와서 하라 마라 지적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위원장 추미애** 행정처장님, 국회법 제37조에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규정이 있어요. 법제사법위원회는……

○**나경원 위원** 그거 몰라요? 서영교 위원님 4선 헛했구나. 위원장이 원래 제대로 질문 하려면 내려와서 하는 거예요.

○**서영교 위원** 5선이 헛했지, 뭘 헛해!

내가 법적조치 딱 해 줄게.

○**신동욱 위원** 이런 진행이 어디 있어요?

○**나경원 위원** 국회법 찾아보세요.

○**위원장 추미애** 서영교 위원님, 조용히 해 주세요. 이쪽은 다 조용히 해 주세요.

○**서영교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추미애** 여기는 말을 안 들으시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교실에도 떠드는 학생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진도는 나가야지요.

법제사법위원회의 소관 중에는 마항의 헌법재판소 사무에 관한 사항이 명기돼 있고요. 바항에는 법원·군사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이 명기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사무나 법원·군사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것은 우리 국회가 감독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서. 그렇다면 재판 내용이 아니라 배당과 같은 사무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나와서 바로 그런 인사에 대한 또는 배당에 대한 관여를 하신 대법원장님은 나오셔서 소상하게 밝히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게 국회의장이 말씀하신 결자해지고.

아까 저한테 오셨을 때 제가 무신불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수상하다는 겁니다. 대선 직전에 왜 개입을 했느냐 하는 거지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신뢰를 회복하지 않고는 그 어떤 재판도 신뢰를 가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장 천대업** 위원장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신 말씀 드리기 전에 아까 앞에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답변을 하나 못 한 게 있어 가지고요. 특검이 병합 신청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병합의 필요성이 있으면 신속 심리를 위해서 병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는 위원장님의 일반론적인 말씀에는 저는 동의합니다.

○**위원장 추미애** 일반론이 아니고 현재 특검에서 병합 신청을 했는데 거절당했어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업**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그립니다.

다만 위원장님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와 같이 재판에서 어떤 사건을 병합할지 안 할지에 관한 부분이 사실은 중요한 재판 작용 중의 하나입니다. 저도 그런 것 때문에 일선에서 고민을 많이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문 관련해서는 제가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첫째로는 저도 오늘 법사위에서 논의되는 그런 걸 갖다가 방송으로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현재 진행 중인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의 입장에 따르면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판결에 대해서, 그 재판 절차와 재판 내용에 대해서 결국에는 들여다보겠다는 이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진행 중인 재판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상 사법권 독립, 즉 재판 작용에 입법권이든 행정권이든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헌법 원칙에 반한다는 부분하고, 더구나 국정감사·조사법이라고 하는 거기에 따르면 역시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는 조사·감사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즉 이 부분은 위원장님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모든 법률의 더 상위에 있는 것이 우리 헌법의 취지이자 헌법의 규정 아니겠습니까? 우리 헌법에서 재판권 독립, 사법권 독립을 보장하고 있는 이유는 이와 같이 재판 하나하나에 대해서 국회나 행정부에 대해서 책임 추궁이 따르는 이런 상황이 조성이 된다고 하면 어느 법관이 정말로 독자적으로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한다는 안도감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 하나하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원 전합 판결 다수 보충의견에 이렇게 상세하게, 왜 소부 배당했다가 전원합의로 넘긴 이 부분에 대해서 경위를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법률상 대법원 상고되는 사건은 기본적으로 전원합의 사건이 원칙입니다. 편의상 사건의 신속 처리를 위해서는 소부에 넘겨서 소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은 다수 보충의견에 따르면 처음 접수되었을 때부터, 즉 접수된 시점 3월 28일 접수됐을 때부터 바로 모든 대법관들이 기록을 보기 시작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다만 전합이라 하더라도 주심은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주심 정하는 것은 무작위 전산 배당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됩니다. 거기서 특정 대법관님이 주심으로 결정이 되었고 주심이 결정되면 자동적으로 또 그 해당 소부가 마치 배당된 것처럼 지정되어 있을 뿐이지 이 사건은 처음에 진행하고 예정했던 것처럼 곧바로 전합으로 다시 회부를 해서 그렇게 진행한 걸로 다수 보충의견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이례적인 것은 아니고 처음부터……

○장경태 위원 그럴 거면 모든 재판을 다 전원합의체 해야지요, 그 논리라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리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독일 주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런 판결을……

○위원장 추미애 행정처장님, 발언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듣지 않겠습니다.

○장경태 위원 행정처장님, 진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실 겁니까? 그 논리라면 모든 사건 다 중요한데 전원합의체로 넘겨야지요!

○곽규택 위원 9월 30일 날 청문회 하자면서 대답할 시간은 왜 안 줘요? 청문회가 필

요 없겠네, 그러면 대답할 시간 안 주는데.

○위원장 추미애 결국은 행정처장님 말씀에 의하면 대법관님들은 AI였다라는 국민이 검증해 달라는 걸 우리는 검증할 책무가 남아 있네요.

○곽규택 위원 이렇게 할 거면 9월 30일 날 청문회를 왜 합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지. 뻔하네. 대답 못 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김기표 위원 토론 종결해 주십시오.

○장경태 위원 앞뒤가 안 맞잖아요. 소위에서 하다가 신중한 재판을 위해서 전원합의로 넘겼는데 전원합의체 판결 그걸 또 신속하게 해요? 12명 의견이 그렇게 다 똑같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걸 어떤 국민이 믿겠어요.

○박은정 위원 저번에 했던 얘기랑 틀리잖아요!

○김용민 위원 찬성합니다. 토론 종결 동의합니다.

○위원장 추미애 김기표 위원님으로부터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해당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용민 위원님 등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회법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종결입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4인 중 찬성 10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 종결 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국회법 제58조 5항, 제66조제3항 및 제79조의2제3항에 따라 축조심사 및 비용추계서 생략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할 법안들에 대해 축조심사 및 비용추계서 제출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부터 제43항까지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4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반영하여 의사일정 제47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유법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942)

4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박준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872)

50. 일제 식민지배 찬양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88)

5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89)

52.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59)

5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31)

5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16)

5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차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43)

5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29)

5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61)

5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11)

59.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34)

60.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89)

61.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13)

6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27)

63.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85)

6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82)

6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41)

6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45)

6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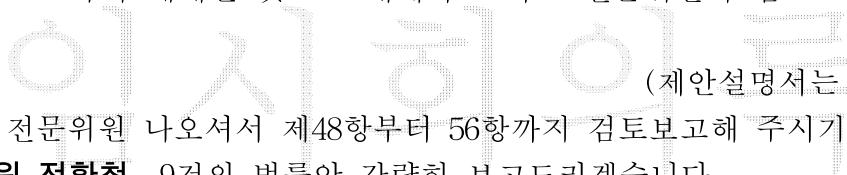
2207639)

68.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08)
6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15)
70. 법령 제명 약칭법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60)
7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05)
7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25)
7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31)
7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23)
75.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77)
76.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59)

(20시52분)

○위원장 추미애 의사일정 제48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76항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29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게재된 것으로 대체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정환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제48항부터 56항까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9건의 법률안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8항 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공수처법 개정안은 고위공직자수사처의 기소 범위를 수사대상인 고위공직자 전체로 확대하려는 법안입니다마는 현행 공수처법이 기소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한 것은 수사 권력 간 견제와 균형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는 점을 심사에서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49항 박준태 의원 대표발의 공수처법 폐지법률안은 공수처를 전면 폐지하려는 법안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공수처 폐지 후 고위공직자 부패범죄 수사를 어느 기관이 담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50항 허성무 의원 대표발의 일제 식민지배 찬양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안 제정안은 독립유공자 또는 전쟁범죄 피해자 등에 대해 모욕과 명예훼손 행위를 처벌하려는 제정안입니다.

제정안의 경우 그 시행이 있을 경우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어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에 통과될 법안이라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1항 유상범 의원 대표발의 출입국관리법안은 비자 발급 규모 사전공표제 등을 통해서 산업별 인력 부족 규모와 외국인 유입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입법취지가 인정됩니다만 현재도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규모 등을 이미 공표·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53항으로 가서 김위상 의원 대표발의 형법 개정안은 사유 주거지 무단 주차죄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무단주차는 개인 책임도 있지만 대도시의 주차환경 등 사회 인프라 부족 문제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5항 차지호 의원 대표발의 형소법 일부개정안은 구속사유에 ‘피고인이 피해자 또는 중요 참고인 등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때’라는 요건을 추가하고 있습니다마는 ‘위해를 가할 우려’라는 요건이 불명확하여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6항 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형소법 개정안은 건강상 이유로 보석을 허가한 경우에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조회·조사한 후에 건강상태의 호전이 증명되었을 경우에는 보석 취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마는 정기적 조회·조사가 법원의 행정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측면이 있어서 법원의 의견을 고려해서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7항부터 제61항까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섭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7항 박희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의 사물관할을 합의부 관할에서 단독판사 관할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사건의 전형성 또는 중대성에 있어 기존의 보이스피싱 사건과 큰 차이가 없고 형사공판절차에서 합의부 관할 사건보다 단독관할 사건의 처리기간이 단기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긍정적인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58항 강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관의 임용 결격 사유 중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의 요건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함에 따라서 이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해당 부분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정당의 당원과 관련하여서는 국가공무원법 및 현행법상의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 준수를 위한 규정과 임용 결격 사유에 대한 유사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59항 이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이 출산한 경우 자녀 1명에 대하여 1년의 기간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인 5년에 산입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성평등 실현 및 기회의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60항 박균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변호사 시험 중 전문적 법률 분야에 대한 선택과목의 평가방식을 변호사 시험 총득점에 산입하는 방식에서 일정 기준 이상만을 충족하면 합격하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전문성 및 다양성 확보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1항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

무이행소송제도를 도입하려는 내용으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실효적인 권리구제에 대한 요청과 행정청의 제1차적 판단권 침해로 인한 권력분립 원칙 훼손 우려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2항부터 제67항까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혜진 6건의 법률안에 대해 검토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2항 및 제67항 임호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의 요건과 내용을 변경하고 사건 처리 절차에서 관계 기관의 권한을 조정하며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출판·방송 제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범죄를 일반 범죄와 구별하고 있는 입법 목적, 현법상 과잉금지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김현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주총회 소집 통지기한을 2주 전에서 3주 전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5항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폭력범죄자가 여성 전용으로 운영되는 여성 관련 기관 등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내용으로 성폭력범죄자의 취업 제한 범위에 관해서는 보호법의 및 재범 우려 등 형사정책적 측면과 현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정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8항부터 제76항까지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은정 제68항부터 제76항까지 9건의 법률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 중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68항 이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형사사건 피해자의 공탁물 출급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탁관이 해당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관할 검찰청에 형사공탁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던 피해자가 공탁금을 기습출급하여 피고인의 양형의 사유로 고려되지 못한 채 판결이 선고되는 등 공탁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함에 개정 취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공탁관의 공탁물 출급청구 사실의 통지에 관한 사항을 공탁법 제5조의2에 규정하고 있는바 현행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른 형사공탁은 형사사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으로 좁게 정의하고 있어 형

사사건과 관련된 모든 공탁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형사사건과 관련된 모든 공탁에서 공탁관의 통지절차가 작동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69항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일방이 고의로 다른 친권자 일방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경우 등에는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가정폭력에 의한 살인사건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상속결격인 친권자가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는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재산권을 대리 행사할 수 있는 불합리한 상황을 방지하고 자녀의 재산권을 충실히 보호함에 개정 취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러한 친권자에게 친권의 내용 중 보호·교양에 관한 친권을 유지시키는 것에 대해서 우려 사항이 없는지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72항 정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관리단 구성원에 점유자 전원을 포함하도록 하고 관리인과 관리위원회의 구성을 구분소유자와 점유자 동수로 구성하는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로서 전유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의 의견을 집합건물의 관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개정안과 같이 규정할 경우 점유자의 권리가 제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관리단의 구성원에 점유자 전원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협행법 체계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협행법상 점유자 의결권 행사 가능 대상과 개정안의 점유자 임시 관리단집회 소집 가능 대상을 일치시킬 필요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제74항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증인을 구인할 수 있고 이러한 구인에는 형사소송법의 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며 재판·소추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협행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불출석 증인에 대한 구인은 인신을 구속하는 강제절차인바 법률에 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두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보다 부합할 수 있고 협행법상의 자료제출 요구의 범위를 확대하여 원활한 협행재판 심리가 가능하도록 함에 개정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협행재판소가 원활한 협행재판 심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자료제출 요청의 범위 확대의 필요성 측면과 협행 다른 법률과의 관계, 확정되지 않은 범죄사실의 공개로 인한 기본권 제한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토론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손인혁 협행재판소사무처장, 조원철 법제처장, 오동운 고위공직자

법죄수사처장께서 출석 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먼저 손 드신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 위원** 정성호 장관님, 법무부가 지금 총리실 산하의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태스크포스에 검사 등 인력을 파견한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여기 검사 10명, 수사관 11명을 파견할 거라고 기사가 났는데 파견됐나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아직 논의 중인 것 같은데, 파악이……

○**박은정 위원** 파견하실 건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저희는 요청에 의한 거니까……

○**박은정 위원** 아니……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박은정 위원** 총리실에서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총리실에서, 국무조정실에서 요청하면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박은정 위원** 오늘 정부조직법이 법사위에서 통과됐는데 검찰청 폐지와 그다음에 공소청, 수사청법이 앞으로 국회에서 입안될 건데요. 그런데 총리실 산하의 태스크포스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 아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의 입법을 준비하는 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 위원** 여기서 정부입법으로 하신다고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 위원** 그런데 여기에 검사를 10명이나 파견하셔 가지고……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희들이 파견하는 게 아니라 파견 요청을 받은 상태입니다.

○**박은정 위원** 그러니까 장관께서 파견하시는 거잖아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저희들 요청 오면 파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박은정 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것을 정부입법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 위원** 공소청법, 중수청법을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박은정 위원** 국회에 법이 있습니다. 발의되어 있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것은 어떻게, 물론 국회 발의된 법을……

○**박은정 위원** 그리고……

○**법무부장관 정성호** 논의 과정에서, 물론 참여해 가지고서 정부 의견을 내 놓을 건지 아니면 정부입법으로 할 건지는……

○**박은정 위원** 정해지지는 않았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런 원칙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 위원** 여기에서, 태스크포스에서 정부입법으로 하시는 건 정해지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박은정 위원** 지금 특검에 파견돼 나가 있는 검사를 몇 명인지 아세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전체적으로 특검에 지금 11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 위원** 110명 파견 나가 있는데 그 검사들 파견에 대해서도 지금 국민의힘 측하고 계속 문제 제기하고 있거든요. 일선의 검사들을 파견 보내서 일선 검찰청이 마비가 됐니 어쩌니 이렇게 하고 있고,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파견검사 없앤다는 게 검찰개혁의 일환, 그중의 하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총리실에 검사를 10명이나 파견한 사례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개혁의 대상하고 상의해서 개혁하는 건 아니에요. 개혁의 대상하고 개혁을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잖아요. 노만석 대검 차장, 정부조직법 개정안 오늘 법사위 통과하니까 검찰개혁의 오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노만석 차장 어떻게 안 됩니까, 장관님?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고 있는데 본인이 뭔데 검찰개혁의 오점이 될 수 있다, 위헌이 된다 이따위의 얘기를 하면서, 그런 대검 차장하고 무슨 검찰개혁을 얘기하는지, 그 검사들을 TF에 파견시켜 가지고 개혁을 얼마나 안 할 것인지를 그 개혁의 대상하고 상의할 수는 없는 겁니다. 파견 검사와 파견 수사관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다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검사들을……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희는 국무조정실이 요청했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박은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파견을 장관님이 보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검사들이 가서 뭘 할 건지, 이 개혁에 관련해서 이 사람들은 걸림돌이 될 거거든요, 이 검사들은. 이 검사들을 TF에 보내서 제가 너무 걱정스럽고.

법제처장님.

화면 좀 옮겨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면)

정부입법으로 이걸 하신다면 이 법은 언제 통과할지 모릅니다. 법제처의 입법 과정 소요 기간이 국회 제출까지 최소 149일에서 최대 235일까지 걸립니다. 그러면 내년이나 돼요, 지금 저것 제대로 법을 규정, 법의 절차대로 정부입법을 하신다면. 그러면 공소청법, 중수청법은 내년, 지금 며칠입니까, 235일 걸리면 내년 언제쯤이 될까요, 장관님? 정부……

○**법무부장관 정성호** 이게 1년 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은정 위원** 아니, 1년 뒤에 시행하더라도요 공소청법, 중수청법을 국회에서 제대로 빨리 통과시켜서 조직이나 예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빨리 준비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입법으로 저거를 하시면 이 법이 그때 가서 내년에 언제 통과될지 알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인데, 아까 정해지지 않으셨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범정부 TF에 검사 파견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해 주시고 이 법은 국회에서 제대로, 법이 지금 발의가 되어 있으니 이 법에 대해서 의견을 내시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말씀드리면 과거에도 정부조직에 관련된 입법은 대개 정부가 주도해 왔습니다. 국회가 정부조직에 관련된 법을 주도한 적은 드물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정부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속한 조직의 필요성이 있을 때 국회와, 특히 다수당과 합의, 특히 여당과 합의해 가지고 처리했던 경우는 있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뒀기 때문에 검찰에서 개혁을 반대한다고 얘기하는데 저나 저희 법무부의 입장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공정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은정 위원** 그러면 대검 차장을 좀 어떻게 하십시오. 대검 차장이 저런 얘기 안 하게 하십시오.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희도 대검 차장이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입장에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박은정 위원** 저게 반대하는 입장 아닙니까? 위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분명하게 본인도 과거 검찰권의 오남용에 대해서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고요.

○**박은정 위원** 반성을 했는데 오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법사위 통과했는데 저런 얘기를 합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지 한번 저희가 하여튼간 보고 나서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대검 차장에 대해서 조치하시는 게 장관의 직무이십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 문제는 대검 차장에 관련된 중심적인 내용과 그 속뜻이 어떤지 파악해 보고……

○**박은정 위원** 속뜻이 아니라 위헌에 대해서 저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데 무슨 속뜻이 필요하겠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는 그냥 개인적인 소견을 얘기하는 정도에 불과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은정 위원** 개인적인 소견을 대검 차장이 저렇게 언론에 대고 얘기합니까? 개인적인 의견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희는 그게 검찰의 전체 입장들, 검찰의 집단적 의견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조배숙 위원** 발언권 주십시오.

○**위원장 추미애** 조배숙 위원님하고 서영교 위원님 하시지요.

조배숙 위원님.

○**조배숙 위원** 정성호 장관님, 오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통과가 되고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겠네요.

그런데 공수처를 좀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께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를 하니까 어떤 법안인지 이런 게 나와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또 그중에서 수사하는 권한은 기소권이 없고 일부만 있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기소권을 확대하는 개정안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검찰을 해체하면서 수사·기소 분리 방향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왜 수사·기소를 분리하냐면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권력기관이 돼 가지고 이런 잘못된 일이 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분리하는 마당인데 왜 공수처는 이렇게 수사·기소권을 같이 가지고 있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법안은 어쨌든 의원 입법으로 나온 거고 저희 정부가 낸 법안은 아닙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기소를 전 사건으로 확대하는 그런 측면의 문제는 어쨌든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결정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배숙 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일부는 지금 있는 기소권은 안 없앨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같이 가지고 있어서 저런 문제가 생겨 가지고 검찰 개혁한다는 말이 나왔는데, 그런 생각이라면 공수처도 어느 순간에는 수사·기소권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공수처도 개혁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지 않겠어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런데 공수처하고 검찰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비교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조배숙 위원 아니요, 저는 이것은 방향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데 공수처가 그렇지 않은 예외적인 기관이라서……

○법무부장관 정성호 완전히 독립된 기관입니다.

○조배숙 위원 아니, 독립된 기관이기는 하지만 속성상 수사·기소권을 가지고 있으면 또 거기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지요.

그다음에 장관님도 의원을 몇 선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회의 진행하는 것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왜냐면 과거에는 법안 심사하고 이럴 때 대개 여야 합의에 의해서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표결을 했어요. 그래도 발언권은 줬어요, 발언을 했고. 그런데 발언권도 안 주고 그다음에 의사진행발언권도 안 줘요. 이게 과연 민주주의 입니까? 이런 국회의 변한 모습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국무위원인 장관으로서 고도의 자율성이 보장된 국회의 의사 과정에 대해서 발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배숙 위원 저는 말씀은 그렇게 조심스럽게 하시지만 속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또 법이 자꾸 통과가 되는데, 보니까 우리가 법대에서 배웠던 그리고 실제로 실무상 했던 법의 기본원칙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소급입법 금지랄지.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주 다수의 힘으로 확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존중되지 않고 무너지면 과연 사법질서가 제대로 서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대법원장 청문회인데요. 대선 개입했다고 지금 아주 정치 보복의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도, 물론 정치 공세로서 ‘사퇴하라. 탄핵하겠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지요, 정치 공세니까. 하지만 청문회를 하겠다고 기일을 잡아 가지고 법사위에서 이걸 결정을 하고…… 저는 이게 현정 사상 아래서 되는가. 독립을 하면서 사법부를 존중해 줘야지 사법부 수장이 나와 가지고, 그것도 재판 관련된 일로 이렇게 된다는 게 저는 이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개를 끄덕 하시는 걸 보니까 좀 동의하시는……

○법무부장관 정성호 아닙니다. 어쨌든 청문회가, 대법원장이라고 해서 청문의 대상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다루는 게 아니라……

○조배숙 위원 그런데 지금 보세요. 판결을 문제 삼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대선 개입이라고 하는데 대선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그 부분을 명쾌하게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대법원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이게 본인들한테 불리하다고 해서 이렇게 대법원장을 청문회로 부르는 것은 정치 보복이고 화풀이로밖에 생각이 안 돼요. 이건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런데 국민들은 지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 가지고 그 과정이 너무나 특이할 정도로, 전례가 없을 정도로 이례적이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있어서 다른 문제점이 있지 않나에 상당한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절차에 의해서 판단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래도 청문회로 대법원장 나오라고 해 가지고, 그건 아니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서영교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서영교 위원 서울 중랑구갑의 서영교 국회의원입니다.

법원행정처장께 묻습니다.

국회법 제121조 뭐니까, 알지요? 오늘 공부 다 하셨을 것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말씀하십시오.

○서영교 위원 국회법 121조 뭐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말씀해 보시지요.

○서영교 위원 본회의나 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대법원장, 현 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감사원장 또는 대리로 출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회의나 위원회가 특정한 사안에 질문하기 위하여 대법원장 출석하게 되어 있잖아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영교 위원 국회법 121조에 되어 있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서영교 위원 대법원장이 나오는 게 이례적이에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법률이 헌법의 규정을 반영, 준수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서영교 위원 국회법 121조, 대법원장……

다 들으세요, 여러분.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다 부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별한 질의를 위해서서. 1, 그래서 이건 특별한 게 아니다. 그동안 대법원장이 특권처럼 나오지 않았다.

국정감사에는 당연히 대법원장이 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대법원장이라고 특별한 취급을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은 맞습니다마는……

○서영교 위원 그렇습니다. 특혜를 받을 수는 없어요.

두 번째, 띄워 봐 주세요, 날짜를.

(영상자료를 보면)

4월 22일 날 소부에 회부됩니다, 2부에. 국민 여러분,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4월 22일 날 이재명 대표 사건이 소부에 배당됩니다. 거기에는 오경미 대법관이 있습니다. 오경미 대법관은 파기환송을 반대한 사람입니다.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반대 의견 쓰신 분입니다.

○서영교 위원 그런데 그날로 한 시간인지 두 시간 만에 전원합의체로 회부합니다. 그런 일이 역사상 있었어요, 없었어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원 사건은 처음부터 전합 사건으로 배치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서영교 위원 소부에 배당됐는데 저렇게 해서 한 시간 두 시간 만에 전원합의체로 끌어올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소부에 갔다가 전합으로 회부되는 사건은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서영교 위원 그런데 한 시간 만에 그렇게 회부된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이 사건은 이례적으로……

○서영교 위원 자꾸 말 바꾸지 마시고 있어요, 없어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합 사건이라 하더라도 주심은 배당이 돼야 되기 때문에 무작위 전산에 의해서 주심이 결정되었고, 그렇지만……

○서영교 위원 주심이 박영재 주심, 거기에는 또 오경미 대법관이 있어요. 그런데 오경미 대법관은 파기환송을 반대한 사람이에요. 그것이 소부에 4월 22일 배당됐는데 한 시간인지 두 시간 만에 전원합의체로 하고 그리고 4월 22일부터 만 하루가 지나서 표결을 볼여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이런 사례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수 보충의견을 보면 4월 22일이 아니라……

○서영교 위원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3월 28일 사건이 접수되었을 때부터 전체 대법관들이 전합으로 처리하기로 합의를 하고 그때부터 진행……

○서영교 위원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저런 적을? 저런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이례적으로 빨랐다는 것을 이례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

는.....

○서영교 위원 없지요?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4월 24일에 표결을 해 버립니다. 그리고 5월 1일에 파기환송하는데요. 잘 보세요, 4월 30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5월 1일에 파기환송하는데 4월 30일에 한덕수가 엠바고를 걸고 출마를 예고합니다. 파기환송을 어떻게 알고, 한덕수는 그걸 어떻게 알고 4월 30일에. 그래서 여러분, 다 수사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파기환송 3시에 하자마자 4시에 한덕수가 권한대행을 사직합니다. 이것은 짜고치는 사법 쿠데타라고 제가 5월 2일부터 제기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저 뒤에 제가 좀 더 달아 놨는데요. 5월 15일에 이재명 사건을 넘깁니다. 이재명은 5월 10일 날 후보 등록을 합니다. 5월 10일인가 11일에 후보 등록을 합니다. 그런데 5월 15일에 고등법원에 보내요.

거기서 이재명이 유죄 나면 더불어민주당은 후보를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일이 생기게 만든 조희대, 그래도 사법 쿠데타가 아니에요? 사법부의 존중을 위해서 정의롭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마지막, 나경원 위원은 면책특권이 있는 법사위도 아니고 다른 자리에서 ‘서영교 위원이 AI 가짜뉴스를 이용해서 한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라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엄연한 가짜뉴스라서 바로 법적조치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오늘 저는 조선일보 등에 대해서 고소장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허위 가짜뉴스를 통해서 조희대 사법부의 사법 쿠데타, 지귀연 재판부를 연장하려고 하는 그 사법 쿠데타에 대해서 국회 법사위에서 제가 지적하고 윤석열과 조희대 간에 무슨 관계가 있었는지, 윤석열과 한덕수 간에 무슨 관계가 있었는지 꼭 밝혀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정의롭게 국민의 최후의 보루로 남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훌륭한 법관들을 조희대와 지귀연이 전부 다 그 신뢰성을 추락시켰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밖에서 ‘서영교가 AI 가짜뉴스를 이용해서 발언했다’라고 하는 것은 딱 걸렸습니다. 팩트 체크도 하지 않고 발언한 그 사람들 전부 다 오늘 지금 여기 팩트 체크에 들어왔는데요. 제가 전부 다 법적조치 한다는 것만 알고 계시고.

법원행정처장님, 정의로우셔야 합니다. 자꾸 막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사법부를 세우기 위해서 정의로우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하기 전에 법무부장관님께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가운데도 말씀을 하셨지만 노만석 대검 차장이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건 오점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점’.

오점이 아니고 개혁인 거잖아요? 그러면 개혁은 누가 초래한 겁니까? 70년 내내 쌓이고 쌓인 검찰 적폐를 내란을 겪으면서 윤석열의 검찰 쿠데타, 드디어 영구 독재, 영구 집권을 위한 군대를 동원한 쿠데타를 통해서, 내란 극복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검찰개혁의 절대적 필요성, 검찰개혁을 하지 않고는 어떤 개혁도 있을 수가 없구나, 민생이 바로 살수가 없구나 그런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반성문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다 누구 들으라고 오점이라고 하는 겁니까? 검찰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개혁하고 고치는 것이지요,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이지요. 검찰을 지우는 게 아니라 본디 제자리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선진 여러 나라의 형사사법 체계처럼 수사는 경찰이 검찰은 공소관으로 제자리에 돌려놓자는 건데 헌법에 규정된 검찰 지우는 것, 헌법에 어디 검찰이 모든 걸 독점하라고 돼 있습니까? 헌법재판소가 그것은 입법권에 달려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수사권, 기소권, 기소권의 폭을 어떻게 나누는 것인지 조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자유, 입법권의 재량에 달려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걸 오점이라고 망언을 하고 있는데 그건 단순히 개인적 의견에 그치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직에 대한 반란을 유도하는 것이지요. 엄정하게 기강을 잡아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어쨌든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검찰에서 수사·기소의 분리의 큰 원칙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공소청의 설치, 중수청의 설치와 관련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가지고 온전한 검찰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노만석 차장의 해당 발언은 저도 부적절하다고 느끼고 있고요. 어떠한 조치가 적절한지는 연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관봉 띠지 사건에 대해서 청문회를 해 보았더니 과학수사를 경찰이 발전시켜 온 반면에 검찰은 강압수사에 빠져 있어서 수사에 대단히 무능하다라는 폐단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수사는 수사 전문가를 양성하고 경찰에 맡기는 것이 맞겠구나를 절감할 수가 있었고요.

검찰은 수사의 A, B, C도 지키지를 않았습니다. 압수물 보관·처리조차 실무자, 실무 검사들도 몰랐고 감독자인 지검장도 몰랐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순간까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 백해룡 경정 한 사람의 식견보다 못하다는 것을 국민 앞에 여실히 보여 주는, 확인하는 장소가 돼 버렸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검찰은 더 이상 수사를 하면 안 됩니다. 왜? 모든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골치 아프게 과학수사 매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과학수사 장비 예산 안 받아서 아니에요. 대검 과학수사부가 설치된 지 10여 년이 지났는데 과학수사의 기초조차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경정 한 사람이 알고 있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어요, 검사장이. 금시초문이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다는 겁니다.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보완수사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당부의 말씀이었으니까 따로 의견 개진은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8항부터 제76항까지 이상 29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용민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관장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보좌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 및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29분 산회)

증인 명단

증인(2인)

성명	직업	사유
고홍석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대선개입 의혹 확인
이영진	대법원 형사총괄연구관	대선개입 의혹 확인

○출석 위원(16인)

곽규택 김기표 김용민 나경원 박군택 박은정 박지원 서영교 신동욱 이성윤
장경태 전현희 조배숙 주진우 최혁진 추미애

○첨가 위원(1인)

박준태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전문위원 박병섭
전문위원 박혜진
전문위원 이은정

○국회측 참석자

국회사무처

사무차장 박태형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법무부

장관 정성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오동운

법제처

처장 조원철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희영

환경부

장관 김성환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국가유산청

청장 허민

산림청

청장 김인호

기상청

청장 이미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진숙

○법원측 참석자

법원행정처

처장 천대엽

○헌법재판소측 참석자

헌법재판소사무처

사무처장 손인혁

법원 사회 의록